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210-0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방향

안성준 · 임은정 · 임민택 · 이규일 · 이민아
박선욱 · 문하늬 · 서춘수 · 김의동 · 김태훈
박서현 · 강병곤 · 김나현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방향

한국장애인개발원



ISBN 979-11-6357-482-8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1210-0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방향

안성준 · 임은정 · 임민택 · 이규일 · 이민아
박선욱 · 문하늬 · 서춘수 · 김의동 · 김태훈
박서현 · 강병곤 · 김나현

본 연구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직무대리 최 응 선

연구진

연구책임 : 안성준(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팀장)

공동연구원 : 임은정(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과장)

임민택(호서대학교 교수)

이규일(삼육대학교 교수)

이민아(군산대학교 교수)

박선욱(경남대학교 교수)

문하늬(한국복지대학교 강사)

서춘수(SD건축사사무소 소장)

김의동(종합건축사사무소 매시즈 소장)

연구보조원 : 김태훈(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과장)

박서현(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대리)

강병곤(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대리)

김나현(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대리)

자문위원

김현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광재(한국복지대학교 교수)

배용호(한국환경건축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재원(서정대학교 외래교수)

이진원(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윤영삼(건국대학교 연구교수)

➤ 목 차

연구요약	x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1) 국내연구 및 제도	9
2) 해외연구 및 제도	10
II.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법제도 및 실태조사 현황	13
1. 박물관·미술관의 개념 및 현황	13
1)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	13
2) 박물관과 미술관 현황	14
2.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제도 현황	15
1)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규	15
2)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정책	15
3.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17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17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현황	17
III.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조사표 개발	19
1. 장애인편의시설 기본 조사항목	19
1)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한 항목 구성	19
2)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표 분류체계	19



2. 박물관·미술관 표준조사표	22
1) 표준조사표의 구성	22
2) 표준조사표 세부 항목	22
3. 모바일 조사표	24
1) 모바일을 활용한 직접조사방법의 도입	24
2) 모바일 조사표 개발	24
IV.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결과	27
1. 조사개요	27
1) 조사의 근거 및 목적	27
2) 조사대상시설	27
3) 조사방법 및 과정	28
2. 조사결과 분석 개요 및 자료의 한계	31
1) 분석범위	31
2) 자료의 한계	33
3. 조사결과	33
1) 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33
2) 전체 조사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46
3) 2015년 이후 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64
4) 조사대상시설의 면적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73
4. 개선 방향	77
V.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안 및 추정사업비 산정	80
1. 조사개요	80
1) 조사대상 및 일정	80
2) 조사대상시설 현황 및 개선 방향	81
2. 유형별 개선안	113
3. 추정사업비 산정	114
1) 편의시설 항목별 공사비	115
2) 시설별 편의시설 비용 산출	121
4. 소결	140
VI. 결론 및 정책제안	142
1. 연구의 종합	142
2. 정책제안 및 활용방안	144

부록 1.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조사표 147

부록 2. 박물관 및 미술관 심층조사표 181

참고문헌 184

▶ 표목차

〈표 I-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별 설치현황	5
〈표 I-2〉 연구의 범위	6
〈표 I-3〉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연구 동향	9
〈표 II-1〉 박물관·미술관 설치 현황	14
〈표 II-2〉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 3 개정 내용	15
〈표 II-3〉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16
〈표 II-4〉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BF인증 의무화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16
〈표 II-5〉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전시장)	17
〈표 II-6〉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BF인증 현황	17
〈표 III-1〉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권장 대상시설	19
〈표 III-2〉 전시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표 분류체계	20
〈표 III-3〉 박물관·미술관 표준조사표 분류체계	22
〈표 IV-1〉 현장조사 추진현황	27
〈표 IV-2〉 권역별 조사대상시설의 수와 조사원 수	28
〈표 IV-3〉 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32
〈표 IV-4〉 분석 내용 및 기준	32
〈표 IV-5〉 법적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34
〈표 IV-6〉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의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35
〈표 IV-7〉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36
〈표 IV-8〉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38
〈표 IV-9〉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39
〈표 IV-10〉 복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1
〈표 IV-11〉 수직 이동수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2
〈표 IV-12〉 위생시설 일반사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4
〈표 IV-13〉 대변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4
〈표 IV-14〉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5
〈표 IV-15〉 입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6
〈표 IV-16〉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현행법 기준)	46
〈표 IV-17〉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법 기준 차등적용)	47
〈표 IV-18〉 주출입구 접근로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7



〈표 IV-19〉 외부 관람로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9
〈표 IV-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49
〈표 IV-2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0
〈표 IV-22〉 주출입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1
〈표 IV-23〉 일반출입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2
〈표 IV-24〉 보안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2
〈표 IV-25〉 복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3
〈표 IV-26〉 내부 관람로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4
〈표 IV-27〉 계단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5
〈표 IV-28〉 승강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6
〈표 IV-29〉 수직 이동수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6
〈표 IV-30〉 리프트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7
〈표 IV-31〉 조사대상시설의 위생시설 일반사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8
〈표 IV-32〉 대변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59
〈표 IV-33〉 소변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60
〈표 IV-34〉 세면대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60
〈표 IV-35〉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61
〈표 IV-36〉 조사대상시설의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61
〈표 IV-37〉 기타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63
〈표 IV-38〉 비치용품의 설치율	64
〈표 IV-39〉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2015년 이후)	65
〈표 IV-40〉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65
〈표 IV-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66
〈표 IV-42〉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67
〈표 IV-43〉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68
〈표 IV-44〉 복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69
〈표 IV-45〉 수직 이동수단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69
〈표 IV-46〉 위생시설의 일반사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71
〈표 IV-47〉 대변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72
〈표 IV-48〉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72
〈표 IV-4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73
〈표 IV-50〉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500제곱 미만	74
〈표 IV-51〉 비치용품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500제곱 미만	74
〈표 IV-5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500제곱 이상 2000제곱 미만	75
〈표 IV-53〉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2000제곱 이상	76
〈표 V-1〉 권역별 조사 대상기관 현황	80

〈표 V-2〉 A 박물관 건축물 현황	81
〈표 V-3〉 A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81
〈표 V-4〉 B 박물관 건축물 현황	83
〈표 V-5〉 B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83
〈표 V-6〉 C 박물관 건축물 현황	86
〈표 V-7〉 C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86
〈표 V-8〉 D 박물관 건축물 현황	90
〈표 V-9〉 D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90
〈표 V-10〉 E 박물관 건축물 현황	94
〈표 V-11〉 E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94
〈표 V-12〉 F 박물관 건축물 현황	97
〈표 V-13〉 F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97
〈표 V-14〉 G 박물관 건축물 현황	100
〈표 V-15〉 G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100
〈표 V-16〉 H 박물관 건축물 현황	103
〈표 V-17〉 H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103
〈표 V-18〉 I 박물관 건축물 현황	106
〈표 V-19〉 I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106
〈표 V-20〉 J 박물관 건축물 현황	110
〈표 V-21〉 J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110
〈표 V-22〉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추정공사비	140
〈표 V-23〉 편의시설 항목별 소요비용	140
〈표 VI-1〉 전수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 활용 방안	144

▶ 그림목차

[그림 I-1] 장애 인구 및 고령 장애인 비율	2
[그림 I-2]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목적	4
[그림 I-3] 조사수행 체계	8
[그림 II-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	13
[그림 III-1] 조사결과 수집체계	24
[그림 III-2]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모바일 조사표	25
[그림 III-3] 조사표 내 사진 자료 입력항목 사례 및 입력결과 예시	26
[그림 IV-1] 교육자료 예시-매개시설의 조사항목 및 질의응답	29
[그림 IV-2] 교육일정 및 내용	30
[그림 IV-3]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교육 영상 공유	30
[그림 IV-4] 법적 의무대상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34
[그림 IV-5] 접근로 점자블록의 설치	35
[그림 IV-6] 접근로 점자블록 미설치	35
[그림 IV-7] 바닥 안내표시 변경 후	37
[그림 IV-8] 입식 안내표지 변경 후	37
[그림 IV-9] 기준에 맞지 않는 바닥마감 및 안내표시	37
[그림 IV-10] 기준에 맞지 않는입식 안내표지	37
[그림 IV-11] 주출입구 높이 차이 없음	38
[그림 IV-12]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38
[그림 IV-13] 경사로 기울기 및 손잡이 설치	38
[그림 IV-14] 경사로 안내표시	38
[그림 IV-15] 주출입문 점형블록(비표준형)	40
[그림 IV-16] 주출입문 점형블록(비표준형)	40
[그림 IV-17] 주출입문 점형블록(표준형)	41
[그림 IV-18] 주출입문 점형블록(표준형)	41
[그림 IV-19] 내부 관람실의 출입문	41
[그림 IV-20] 접근로 유무	48
[그림 IV-21] 점자블록 유무	48
[그림 IV-22] 보안게이트 사례	53
[그림 IV-23] 스피드게이트 사례	53



[그림 IV-24] 스킵플로어 바닥	54
[그림 IV-25] 바닥 전사로 인한 복도단차	54
[그림 IV-26] 계단 난간	55
[그림 IV-27] 계단 손잡이	55
[그림 IV-28] 측면활동공간을 확보한 장애인 화장실	59
[그림 IV-29] 장애인 화장실 설치 오류	59
[그림 IV-30]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62
[그림 IV-3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62

연구요약

1. 서론

- 장애인편의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는 장애인뿐 아니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대표적인 문화향유공간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이에 중앙정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 3」을 신설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함.
- 현재 국내 박물관·미술관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 근거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함으로써 향후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이를 근거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절차

- 본 연구는 이론연구와 관련 전문가 자문, 예비조사 등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립하여 표준조사표를 개발하고 전수조사 방식과 표본조사 방식으로 구분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함.
- 전수조사는 권역별로 선발된 54명의 조사원과 참여 연구진 6명이 참여하여 2022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조사방식으로 수행함.
- 표본조사는 10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전문가 2인이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약 15일 간 도면분석, 현장실측 및 사진 자료 수집, 비용 추계 등을 포함한 심층조사 방식으로 진행함.

3. 연구결과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 1)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종류별 설치현황
 - 2) 전체 조사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 3) 2015년도 이후 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 4) 조사대상시설의 면적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으로 구분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사하는 바를 도출함.



- 2022년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완료 후 최종분석대상 수는 497개소이며, 법적 의무대상시설은 391개소로 나타남.
- 법적 의무대상시설 391개소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70.0퍼센트, 적정설치율**은 57.4퍼센트로 각각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율은 15퍼센트, 적정설치율은 21.2퍼센트 낮은 결과임.

*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 또는 미흡이지만 설치되어 있는 비율

** 적정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

***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는 문화·집회시설로써 전시장 유형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제시함

- 전수조사 대상시설 497개소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을 적용한 설치율은 67.6퍼센트, 적정설치율은 56.9퍼센트로 각각 나타났으며, 법적 의무대상시설과 마찬가지로 법 개정에 따른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설치율은 71.6퍼센트, 적정설치율은 57.2퍼센트로 각각 나타남.
- 본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항목별 개선방향을 단기 및 장기 개선 방향으로 이원화하여 제시함
 - 첫째, 공간 면적 확보.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분리설치, 바닥면적 등 확보.
 - 둘째, 공간 위치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접근을 위한 방안 등.
 - 셋째, 제품의 적합성. 승강기 가로조작반 높이, 손잡이 굽기,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등.
 - 넷째, 유도 및 안내. 장애인들의 이용 및 접근을 위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 다섯째, 기타시설 및 비치용품.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등.
 -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음.
- 심층조사는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 종류별로 설치현황을 도면분석과 현장조사 방법으로 수행하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항목별 공사비를 제시함.

4. 정책제안

위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의 방안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 절차 도입을 제안함.
- 둘째, 중·장기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법 기준에 부합한 편의시

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 셋째, 손잡이 설치 위치, 점자표지판 위치, 수납공간의 높이, 휠체어 발판 공간 높이 등과 같이 현장에서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시설 관계자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므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됨.

주제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 확대
 -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수는 9,018,412명으로 17.5퍼센트, 유소년 인구수는 5,934,472명으로 11.5퍼센트를 차지하면서 이들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4.1퍼센트에 달함.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 예상 시점인 2026년에는 36.7퍼센트, 그리고 2060년에는 56.6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2019년 말 기준 장애인도 2,618,918명¹⁾으로 2016년부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주요 기능은 과거 미술품 및 유물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이었으나 점차 생활문화, 체험,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음. 특히, 21세기 이후 박물관·미술관은 '우리의 것'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국가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민의 대표적인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 잡음. 그러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술 전시회 관람 경험의 항목에서 '없음'이 1위(97.5퍼센트)로 나타났으며, 그 요인 중 하나로 장애인편의시설 부족이 지적되면서 물리적 환경 문제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함.
 - 이에, 장애인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 접근성 저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확대 필요. 구성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니버설 환경으로의 변화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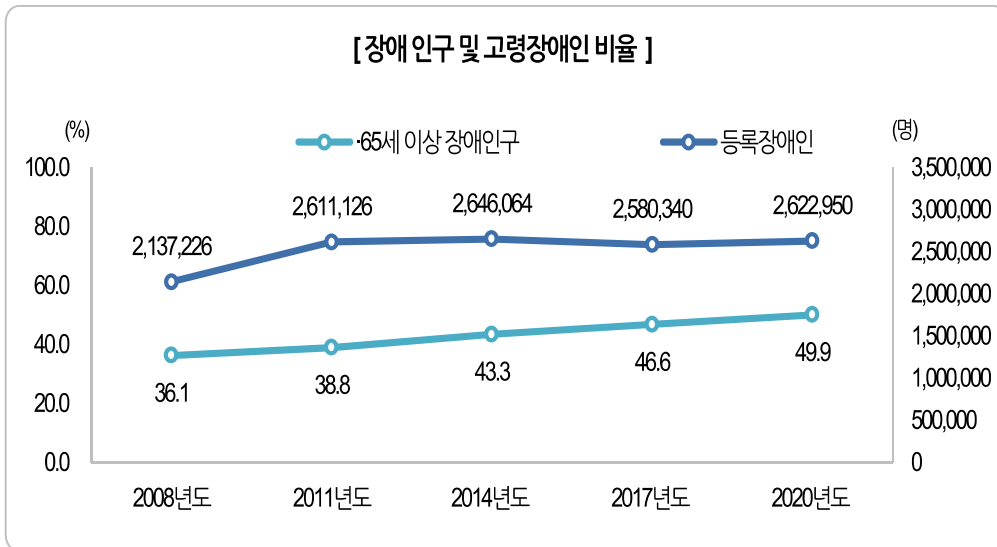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근거 법령 및 제도의 마련
 - 최근 중앙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장애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설치 및 확대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음.
 - 2022년 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의 법 개정에는 제9조의 3항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이 신설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

1)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0). 「2020 장애통계연보」



장기 계획(2019~2023)’을 발표하고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환경 조성계획을 밝힘. 구체적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 취득을 촉진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침 수립 등이 있음.

- 또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2015년에 이미 공공시설에 대해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BF 인증이 도입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BF 인증대상 시설이 됨.



[그림 I-1] 장애 인구 및 고령 장애인 비율

참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04.21.)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현황 파악 미비
 - 2015년 이전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전체 517개소 중 95.4퍼센트(493개소)에 달해, 상당수의 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도입 이전에 지어짐. 따라서 기존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접근성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 출발하여야 하지만, 현재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과 설치방안 제시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의 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항목, 정리방법 등 체계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간적·이용 특성에서 조사와 발굴,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 이르는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정책 자료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장애인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 및 확대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 관리와 활용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국단위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초조사 및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애인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자료 구축과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목적으로 지님.
- **융합적 시각을 수렴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특성 도출**
 - 장애인등편의법 및 BF 인증제도의 측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방안을 모색함.
 -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정립 및 조사항목과 조사절차 등 조사 기준을 반영한 표준조사표 개발.
 -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을 수렴하여 변화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응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함.
- **신뢰도 있는 편의시설 통계 데이터 확보**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연구원 그룹 조성 및 실내와 건축 전공자들로 구성된 조사원 그룹을 활용한 현장조사 실시함으로써 신뢰도 있는 장애인편의시설 데이터 확보를 도모함.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편의시설 데이터 수집 방안을 모색함. 조사대상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정’, ‘미흡’, ‘미설치’로 판단하던 기존의 조사방식과 더불어, 세부항목별로 수치 기입 및 사진 자료 등의 조사 결과 수집 방법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를 후속 조치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모바일을 활용한 조사표 작성 및 실시간 질의응답 채널 운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실효성 있는 편의시설 설치 방안 도출**

- 장애인등편의법 및 BF인증 제도를 고려한 조사항목 개발로 법령의 상용화 추진.
-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결과 활용방안 및 시설개선 기준 제시로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관리 체계화.
- 편의시설 통계자료 및 심층조사 결과를 활용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안 제시.



[그림 I-2]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간적 범위

-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물로써 500제곱미터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의무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현재 박물관 395개소, 미술관 73개소가 해당함).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접근성 강화라는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17개소를 전수조사 함. 다만, 건축물 개보수 및 미운영 등으로 조사 불가인 상황은 협의하여 결정함.
- 조사범위는 장애인들의 전시 및 관람 공간 중 상설전시관으로 한정하며 시설별로 1개동을 조사하며, 관계자 공간은 조사에서 제외함.

〈표 I-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지역별 설치현황

(2021. 12. 기준)

지역	박물관			미술관			총계
	공립	국립	소계	공립	국립	소계	
강원	46	3	49	4	-	4	53
경기	49	5	54	11	1	12	66
경남	46	3	49	5	-	5	54
경북	40	3	43	5	-	5	48
광주	3	2	5	4	-	4	9
대구	7	1	8	2	-	2	10
대전	4	-	4	2	-	2	6
부산	11	2	13	2	-	2	15
서울	19	15	34	7	2	9	43
세종	2	1	3	-	-	0	3
울산	9	-	9	-	-	0	9
인천	16	-	16	2	-	2	18
전남	41	2	43	11	-	11	54
전북	25	4	29	7	-	7	36
제주	16	1	17	7	-	7	24
충남	27	7	34	2	-	2	36



지역	박물관			미술관			총계
	공립	국립	소계	공립	국립	소계	
충북	25	2	27	5	1	6	33
총합계	386	51	437	76	4	80	517

○ 시간적 범위

-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항목은 장애인등편의법 최초 시행 시점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함.
- 조사결과는 동법에 근거하여 현행기준을 적용한 분석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해 의무설치 시점이 다른 경우 대상시설별 평가 기준연도를 차등화 하여 적용하는 분석 등 장애인편의시설의 정책 추진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분함.

○ 내용적 범위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편의시설 종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의무시설과 권장시설로 구분됨. 따라서 전문가 자문과 시설주(관장)의 의견, 그리고 과업목적을 고려하여 조사기준을 마련함.
-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5종류로 구분되며, 각 종류별로 세부항목은 총 20가지로 분류됨.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의무시설 10가지, 권장시설 4가지로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함.
- 조사항목은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위의 5종류가 있으며, 비물리적인 환경의 측면에서 비치용품, 인적서비스 등의 제공여부를 포함함.
-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편의시설 종류별, 즉,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분하여 검토함.

〈표 I-2〉 연구의 범위

구분	세부 내용
공간적 범위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시설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설정 법적 규정에 따른 500제곱미터 이상의 기준이 아닌 연구목적에 따라 바닥면적 구분 없이 517개소(박물관 437개소, 미술관 80개소)를 전수조사 함
시간적 범위	- 2022년 6월까지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내용 기준 -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의무설치 시점 및 설치규정이 다른 경우 대상시설별 평가 기준연도별 차등적용 및 현행 기준별 적용
내용적 범위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 의무시설과 권장시설 - 전문가 자문과 관리자 설문조사 의견, 그리고 과업 목적을 고려한 조사항목 - 권역별 각 2개소,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심층조사를 수행하고 편의시설 항목별로 개선비용 도출 - 조사항목은 물리적 환경과 비치용품, 인적서비스 등의 제공 여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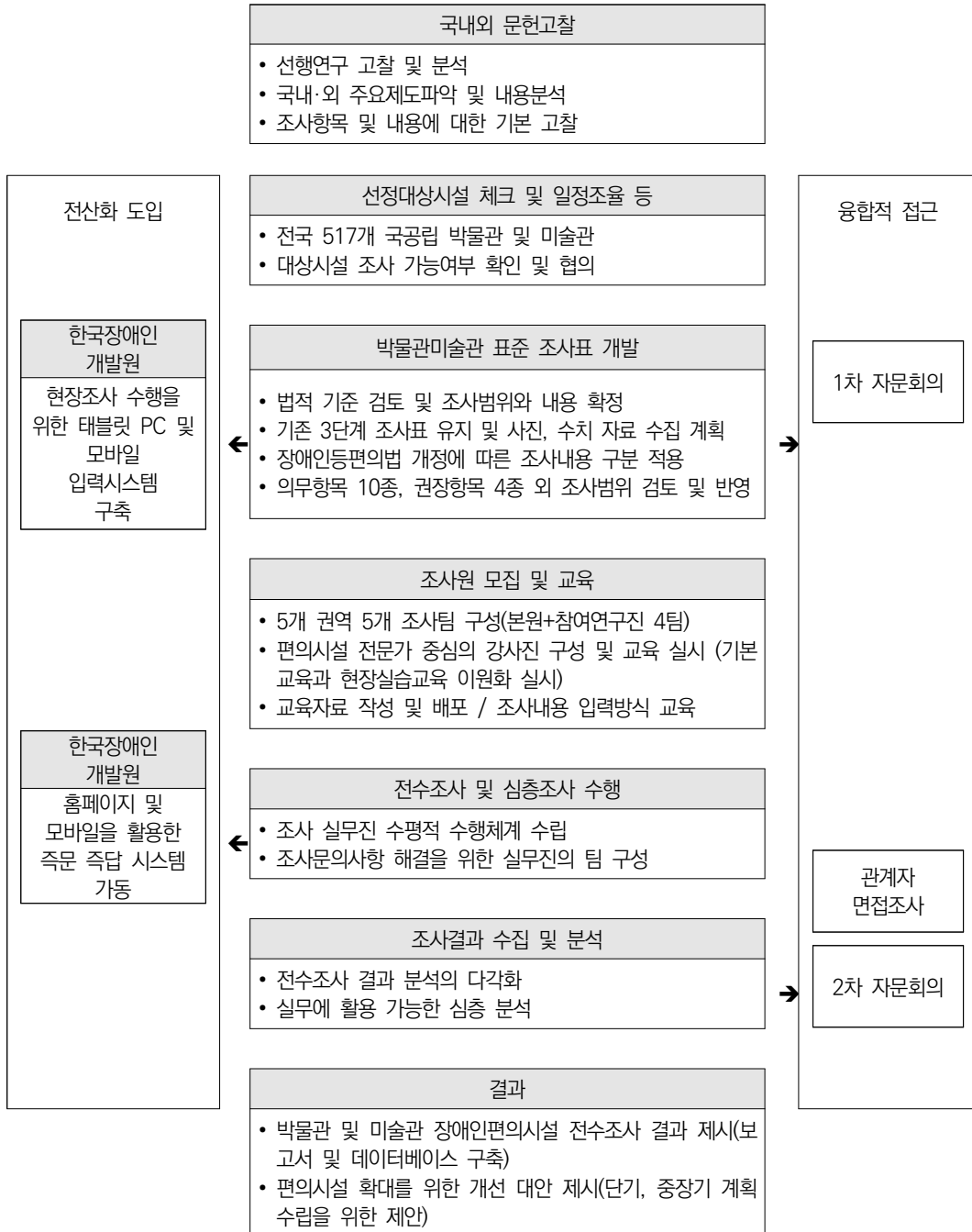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문헌연구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기준 및 법규 고찰.
 - 장애인편의시설 및 BF인증 등 기초자료 수집·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간적 특성 고찰.
 - 이론적 고찰 내용을 반영한 조사항목 검토 및 조사표 개발.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표 개발
 - 박물관 및 미술관 편의제공 현황을 파악을 위하여 조사표를 개발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함.
 - 전문가 자문,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한 조사항목 검토 및 반영.
-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 모바일 조사표 개발 및 시스템 구축.
 - 조사원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 현장방문 및 사진촬영, 실측조사.
-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표본조사
 - 표본조사는 사전에 도면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물리적 치수를 실측하며,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실측도면을 작성하는 등 심층조사방식으로 추진함



3. 연구의 흐름

연구수행을 위한 조사 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I-3] 조사수행 체계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국내연구 및 제도

① 장애인 접근성 관련 연구

- 김현경(2017, 2020)은 공공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접근성 향상 방안을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둠.
- 문화체육관광부(2012)와 고영준·안성락(2013), 권빛나(2017)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문화 시설의 관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론을 정립하고 사례연구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이들 연구는 장애인 및 문화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박물관·미술관 개별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님.

②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관련 연구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8)은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수조사 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통계적 수치로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설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국장애인개발원(2011)은 공연장과 박물관, 미술관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시설 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함.

〈표 I-3〉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연구 동향

분류	저자/기관	연도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결과
장애인 접근성	김현경	2017	- 공공 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포용적 가치를 담은 '활동'에 대한 문헌 연구와 정책 사례연구 수행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포용적 가치'의 적용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김현경	2020	- 2019년 기준 관람객 5만 이상의 국내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장애인, 복지관 관계자, 실무자 초점 집단면접 실시	- 박물관 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전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 문화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분류	저자/기관	연도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관련법, 국내 문화체육시설 5개소, 유럽연합, 노르웨이, 스페인, 벨기에, 미국,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 문화체육시설 5개소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조사 및 분석 - 해외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사례 조사 -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 물리적·정보·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제고 및 문화체육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방안 및 지침 등을 제시함
	고영준	2013	-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방향을 6가지로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문화시설을 이용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홈페이지로 구분하여 계획에 필요한 요소를 제시함.
	안성락·고영준	2013	-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4개소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실시	-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4개소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권빛나	2017	- 유니버설디자인요소 도출을 위한 문헌연구 - 장애인당사자 인터뷰 연구 - 국내·외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예술시설 사례연구	- 유니버설디자인과 공공문화예술시설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리를 4원칙으로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함. 이때,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한 항목을 활용함. - 연구의 결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장애인 편의 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 공연장 28개소 및 박물관 18개소, 미술관 6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사례연구	- 공연장과 전시장을 중심으로 각 시설 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방법을 매뉴얼로 제시함.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시공간으로 유형을 분류되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됨	-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시공간으로 통계적 수치로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제시함.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 해외연구 및 제도

- 해외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장애인편의시설(고령자 등)과 유사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음.

○ 일본

- (관련법과 제도) 건축물의 배리어프리관련법인 하트빌딩법과 교통관련 배리어프리법인 교통배리어프리법을 종합 및 통합한 '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배리어프리법)'(약칭, 배리어프리법)이 2006년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법에 제정된 기초적인 배리어프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되어 건축기준법상의 법령으로 제정됨.²⁾

○ 독일

- (관련법과 제도) 독일은 1974년 무장애 관련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인 시설을 다루는 「포괄적인 장애인 평등에 관한 법률(Behinderten Gleichstellungs Gesetz, 이하 BGG)」을 제정하여 무장애시설의 설치와 추진을 강화함. 이와 함께 독일표준협회(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규격으로 보도와 주차장 설계지표인 DIN18024 Blatt 1, 공공시설의 설계지표인 DIN 18024 Blatt 2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장애인평등법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주택과 공공시설 등의 기준 DIN 18040으로 새로이 통합·규격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주택은 장기요양보험 및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짐.

○ 미국

- (관련법과 제도) 미국의 무장애 관련법규로는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과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 Rehabilitation Act, 1973)」가 있음. 세부 접근 가능한 계획은 'Guidance on the 2010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을 발표하고, 2012년 3월부터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함.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의 권한을 제공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기준을 작성할 것, 그리고 연방정부가 그 기준을 실시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인권법이며, ADA의 설계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연방접근성 표준(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s, UFAS)은 재활법 504에 의해 제시됨.

○ 스위스

- (관련법과 제도) 보행장애인을 위한 건축적 표준(SNV 521 500)을 1974년에 정정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1988년 장애인을 고려한 건축설계 지침인 'SN 521 500'이 스위스 국가표준(Schweizer Norm)으로 제정됨. 고령자 주택, 양로원, 휠체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이 기준의 지침사항들을 준수해야하며 이 규정

2) 미호시 아키히로 외(2017). 공생의 유니버설디자인, 미세움, p.25



은 1993년 1차 개정되었으며, 2002년 장애인평등법으로의 통합을 목표로 2004년 1월부터 대중교통시설, 주거, 근로시설, 특수시설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편의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이후, 건축물과 교통을 분리하여 표준지침을 마련함. 2009년부터 현재까지 SIA 500 표준 “장벽 없는 건축물(Hindernisfreie Bauten)”을 마련하여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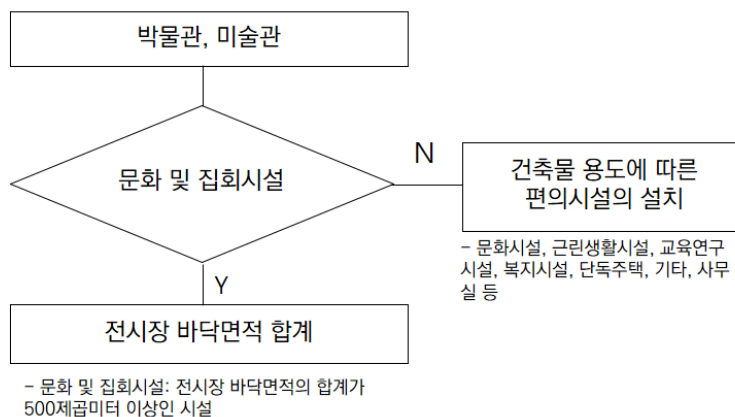
-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관련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위 선행연구들은 장애인 접근성 연구 구분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접근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선행연구들은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나,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박물관·미술관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됨.

II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법제도 및 실태조사 현황

1. 박물관·미술관의 개념 및 현황

1)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

- 박물관과 미술관의 법적 정의
 - 박물관미술관법 제2조에서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함.
 -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함.
- 「장애인등편의법」의 박물관·미술관의 개념
 - 장애인등편의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건축물 유형에 근거하여 박물관·미술관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함.
 - 즉, 장애인등편의법의 대상시설은 건축물 용도로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이 아님.
 - 또한,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후이면서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의무 대상시설에 해당함.



[그림 II-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



2) 박물관과 미술관 현황

- 박물관미술관법 제3조에서 박물관은 그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사립 박물관,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함.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전시장뿐 아니라 사적지와 같은 오픈 스페이스를 포괄함.
- 동법 제5조에서 적용 범위에 대하여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밝힘.
- 2021년도 12월 기준 박물관·미술관의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1〉 박물관·미술관 설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박물관	계	740	745	780	826	853	873	881	897	900
	- 1관 당 인구(명)	68,849	68,646	65,805	62,384	60,105	58,903	58,603	57,803	57,588
	국립	32	33	39	40	47	49	50	50	51
	공립	326	328	332	339	341	349	366	380	386
	사립	287	290	315	351	361	371	363	362	358
	대학	95	94	94	96	104	104	102	105	105
미술관	계	190	190	202	219	229	251	258	267	271
	- 1관 당 인구(명)	268,149	269,165	218,417	219,274	223,885	204,871	200,114	194,194	191,251
	국립	1	1	1	1	1	1	1	1	1
	공립	39	39	50	54	56	67	71	72	76
	사립	124	124	140	150	157	168	172	179	179
	대학	7	7	11	14	15	15	14	15	15

출처: e-나라지표, 문화체육관광부「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7. 22. 검색 기준

* 박물관 통계는 국립·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만 해당되며, 단 과학관 육성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과학관은 제외됨.

2.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제도 현황

1)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1991년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이 법 제1조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 관련하여 2022년 1월 장애인등의 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제9조의3이 신설되어 7월부터 시행됨.

〈표 II-2〉 박물관미술관법 제9조의 3 개정 내용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998년 4월 11일에 시행된「장애인등편의법」은 제1조(목적)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
- 「장애인등편의법」은 건축법의 용도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은 건축물 대장상의 문화·집회시설로서 구분함.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해당함.

2)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정책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물관·미술관은 전시·관람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II-3〉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박물관 미술관 진흥 대책: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노인 등의 시설 이용편의증진을 위해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촉진 •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이용 실태조사 •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공간조성·전시기법·서비스 등에 대한 지침 수립 • 모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확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재구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 제도

- 장애인등편의법의 2015년 개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BF 인증 취득을 의무하도록 함.
- 2021년 12월 개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인증 취득 의무화함.

〈표 II-4〉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BF인증 의무화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인증 취득 의무화(시행일 2015.7.2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인증 취득 의무화(시행일 2021.12.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BF인증 취득 의무화(시행일 2021.12.4)

출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와 시행령 제5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의 내용 재구성

3.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수행됨. 그러나 동법 시행 이후의 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사대상시설이 한정되고, 조사결과 또한 전시장 유형으로 통합하여 단순 수치 형태로 공개하고 있어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설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이 어려움.
 -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는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전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전시장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 등을 포괄하고 있음.

〈표 II-5〉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전시장)

년도	대상 건물수 (개소)	설치율 (%)	적정설치율 (%)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연도별 평균 설치율(%)
2008년	328	78.2	57.5	20.7	77.5/55.8
2013년	690	77.8	68.9	8.9	67.9/60.2
2018년	959	85.0	78.6	6.4	80.2/74.8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08). 200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지체장애인협회(2013). 2013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재구성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현황

- 2021년 12월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의 BF인증을 득한 시설은 본 인증 10개소, 예비인증 5개소로 파악됨.

〈표 II-6〉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BF인증 현황

연번	예비인증	본인증	인증등급	시설명
1	○	○	최우수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2	○	○	우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보존센터(청주관)
3	○	○	최우수	국립한글박물관



연번	예비인증	본인증	인증등급	시설명
4	○	○	우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5	○	○	우수	제8대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평화 기념관
6	○	○	우수	소래역사관
7	-	○	우수	칠백의총관리소(기념관)
8	-	○	일반	계양산성박물관
9	-	○	우수	국립 6·25전쟁 남북자기념관
10	-	○	우수	의림지 역사박물관
11	○	-	최우수	강화자연사박물관
12	○	-	우수	유류피해극복관
13	○	-	최우수	DDP 플라자 파크
14	○	-	우수	영종역사관
15	○	-	우수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III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조사표 개발

1. 장애인편의시설 기본 조사항목

1)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한 항목 구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박물관·미술관의 기본 조사항목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문화집회시설의 전시장 유형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 유형의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 <표 III-1>과 같음.

<표 III-1>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의무·권장 대상시설

편의시설	1.매개시설			2.내부시설			3.위생시설					4.안내시설			5.기타시설			6.비치용품			
	1.1 주출입구 접근로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3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2.1 출입구(문)	2.2 복도	2.3 계단 또는 승강기	3.1 화장실					3.6 샤워실·탈의실	4.1 유도 및 안내 시설	4.2 경보 및 피난 설비	5.1 객실·침실	5.2 관람석·열람석	5.3 접수대·작업대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5.5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 시설	
대상시설							3.2 대변기	3.3 소변기	3.4 세면대	3.5 욕실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2) 편의시설 종류별 조사표 분류체계

- 매개시설
 - 매개시설은 대지경계로부터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와 항목으로 구성되며, 장애인등이 박물관 및 미술관에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내부시설
 - 내부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문), 복도, 수직 이동을 위한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으로 구성되며, 장애인들이 건축물 내부에 진입하여 수평, 수직 이동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위생시설
 - 위생시설은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대변기칸 설치 유무,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항목으로 구성되며,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의 접근과 활동 공간 활용, 사용가능한 위생도기 등이 설치되었는지를 평가함.
- 안내시설
 - 안내시설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항목으로 구성되며, 장애인등을 위한 적절한 안내 및 안전을 위한 체계가 마련하였는지를 평가함.
- 기타시설
 - 기타시설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항목으로 구성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시설을 마련하였는지를 평가함.
- 비치용품
 - 비치용품은 휠체어와 점자전시안내책자의 비치 유무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며, 비시설적 측면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기본 조사 항목
 - 6개의 대분류, 17개의 소분류, 27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세부항목은 해당 여부(42개 항목), 설치현황(167개 항목), 세부질문(69개 항목)으로 구성됨.

〈표 III-2〉 전시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표 분류체계

대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 수		
		해당여부	설치현황	
1. 매개시설	1.1 주출입구 접근로	해당여부	1	11
		설치현황	10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해당여부	1	15
		설치현황	1	
		세부질문	13	
	1.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해당여부	8	26
설치현황		16		
세부질문		2		
2. 내부시설	2.1 출입구(문)	해당여부	2	22
		설치현황	18	
		세부질문	2	
	2.2 복도	해당여부	1	9
		설치현황	6	
		세부질문	2	

대분류	소분류	세부 항목 수		
		해당여부	설치현황	세부질문
	2.3 해당시설 층수 2.4 계단 또는 승강설비	해당여부	7	74
		설치현황	46	
		세부질문	21	
3. 위생시설	3.1 일반사항	해당여부	1	15
		설치현황	10	
		세부질문	4	
	3.2 대변기	해당여부	1	21
		설치현황	10	
		세부질문	10	
	3.3 소변기	해당여부	1	6
		설치현황	5	
	3.4 세면대	해당여부	1	6
		설치현황	3	
		세부질문	2	
	4. 안내시설	1.1.5 점자블록	해당여부	1
설치현황			3	
4.1 유도 및 안내설비		해당여부	5	16
		설치현황	7	
		세부질문	4	
4.2 경보 및 피난설비		해당여부	2	15
		설치현황	9	
		세부질문	4	
5. 기타시설	5.3 접수대 · 작업대	해당여부	2	7
		설치현황	4	
		세부질문	1	
	5.4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해당여부	4	19
		설치현황	11	
		세부질문	4	
	5.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해당여부	4	10
설치현황		6		
6. 비치용품	6.1 비치용품 설치여부	설치현황	2	2
합계		해당여부	42	278
		설치현황	167	
		세부질문	69	



2. 박물관·미술관 표준조사표

1) 표준조사표의 구성

- 표준조사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 사용된 조사표를 기본으로 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함.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치율에 대한 질문은 ‘적정’, ‘미흡’, ‘미설치’의 3단계로 구분함.

2) 표준조사표 세부 항목

- 조사항목
 - 6개의 대분류, 20개의 소분류, 29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세부항목은 해당여부(45개 항목), 설치현황(180개 항목), 세부질문(71개 항목)의 세 단계로 구성하고 있으며, 설치현황 항목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에 관여하는 항목이며, 세부질문은 설치현황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됨.
 - 본 연구에서는 자문 회의와 사전조사 수행내용을 근거로 박물관·미술관 특성을 반영한 외부 관람동선 6개 항목, 스피드게이트 2개 항목, 내부 관람동선 6개 항목, 비치용품 3개 항목을 추가로 조사함.

〈표 III-3〉 박물관·미술관 표준조사표 분류체계

대분류 (5)	소분류 (20)	세부 항목 수		
1. 매개시설	1.1 주출입구 접근로	해당여부	1	11
		설치현황	10	
	B1.1 외부 관람동선(추가)	해당여부	1	6
		설치현황	5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해당여부	1	15
		설치현황	1	
		세부질문	13	
	1.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해당여부	8	26
		설치현황	16	
		세부질문	2	
2. 내부시설	2.1 출입구(문)	해당여부	2	22
		설치현황	18	
		세부질문	2	
	2.2 복도	해당여부	1	9
		설치현황	6	
		세부질문	2	
	2.2.0 스피드게이트(추가)	해당여부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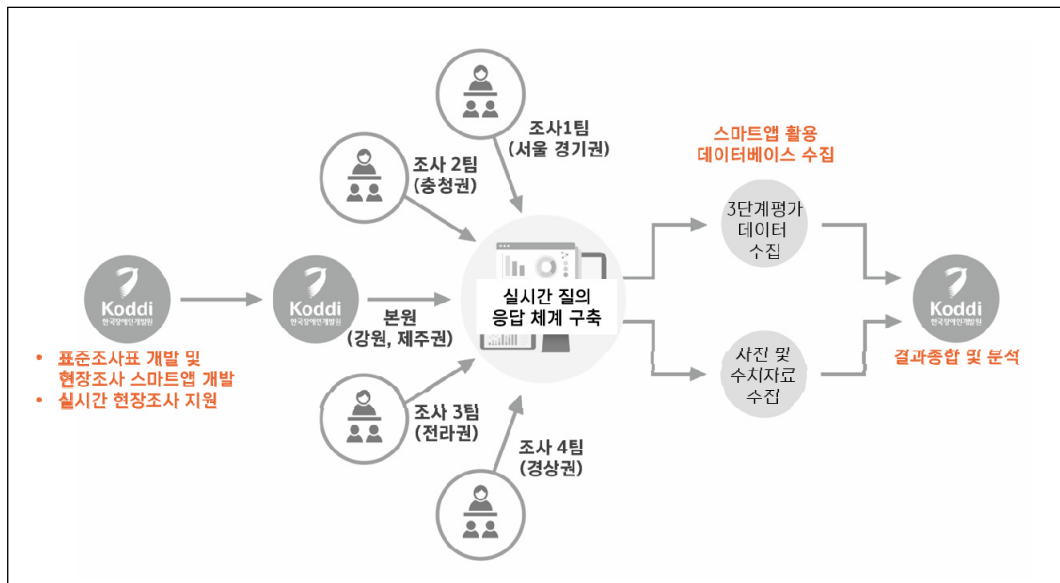
대분류 (5)	소분류 (20)	세부 항목 수		
		설치현황	해당여부	세부질문
	A 2.2.1 내부 관람동선(추가)	설치현황	1	6
		해당여부	1	
		설치현황	3	
		세부질문	2	
	2.3 해당시설 층수 2.4 계단 또는 승강설비	해당여부	7	75
		설치현황	47	
세부질문		21		
3. 위생시설	3.1 일반사항	해당여부	1	15
		설치현황	10	
		세부질문	4	
	3.2 대변기	해당여부	1	21
		설치현황	10	
		세부질문	10	
	3.3 소변기	해당여부	1	6
		설치현황	5	
	3.4 세면대	해당여부	1	6
		설치현황	3	
		세부질문	2	
	4. 안내시설	1.1.5 점자블록	해당여부	1
설치현황			3	
4.1 유도 및 안내설비		해당여부	5	16
		설치현황	7	
		세부질문	4	
4.2 경보 및 피난설비		해당여부	2	15
		설치현황	9	
		세부질문	4	
5. 기타시설		5.3 접수대 · 작업대	해당여부	2
	설치현황		4	
	세부질문		1	
	5.4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	해당여부	4	19
		설치현황	11	
		세부질문	4	
5.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해당여부	4	10	
	설치현황	6		
6.비치용품	6.1 비치용품 비치 유무(추가)	설치현황	5	5
합계		해당여부	45	296
		설치현황	180	
		세부질문	71	



3. 모바일 조사표

1) 모바일을 활용한 직접조사방법의 도입

-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고, 조사표 작성 및 입력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경감하고자 조사의 전산화를 추진함. 현행 3단 평가방법의 조사표를 단순 기입 방식과 객관식을 혼합한 모바일 조사표로 개발함으로써 조사원의 주관적 평가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기존 종이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방법은 설문 조사지의 인쇄부터 배포, 결과 입력, 분석을 위한 코딩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 이에 반해 모바일 조사방법은 조사 소요시간 단축을 비롯하여 조사자와 입력자가 일치하여 입력 시간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효율적 조사 수행에 도움이 됨.



[그림 III-1] 조사결과 수집체계

2) 모바일 조사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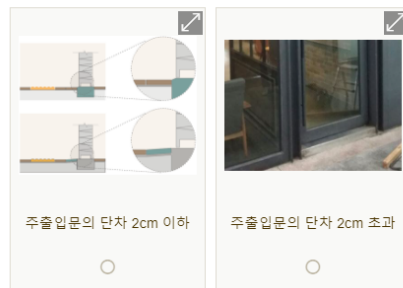
-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활용한 조사시스템 구축
 -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표준조사표의 세부항목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직관적으로 조사항목에 대한 답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1 출입구(문)

2.1.1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은 전·후면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등이 적정한가?

※ 지형 구조상 불가피하게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인정함.

Q* ▶2.1.1.1 주출입문에는 단차가 있는가?



[그림 III-2]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모바일 조사표

- 편의시설 종류별로 입력시스템 구축

- 매개시설 <https://moaform.com/q/RQgVVP>
- 위생시설 <https://moaform.com/q/7GSoaE>
- 내부시설 <https://moaform.com/q/qinm42>
- 안내시설 <https://moaform.com/q/ELpozo>
- 기타시설, 비치용품 <https://moaform.com/q/5M1Ibp>

○ 사진 자료 수집 항목 추가

-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사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고 시설별로 6장을 수집함(외부전경, 주출입구,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외부 및 내부전경, 승강기 외부 및 내부전경).



P2 B2

Q* 외부전경 사진촬영

※촬영구도: 외부 접근로와 전체 건물이 나오도록 촬영

이 곳을 클릭하세요



[그림 Ⅲ-3] 조사표 내 사진 자료 입력항목 사례 및 입력결과 예시

IV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결과

1. 조사개요

1) 조사의 근거 및 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에 의거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함.

2) 조사대상시설

- 조사대상시설의 선정
 - 조사대상시설은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 조사대상시설의 수는 517개소임.
 - 1차적으로 조사 시에 휴관시설 2개소,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시설 18개소를 제외하고 대상시설 중 96.1퍼센트(497개소)를 완료함. 다만, 조사 제외 시설 중 8개소는 심층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함.
 - 또한, 단독주택을 전용하여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장애인의 이용이 접근로부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함.

〈표 IV-1〉 현장조사 추진현황

유형	최초 조사대상 시설 수	조사대상 시설 수(A)	입력 완료 시설 수(B)	조사 완료 비율 (B/A×100)	비고
전체	517	517	497	96.1%	- 입력 완료 시설 수(B)는 시설 이전, 리모델링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시설 제외



3) 조사방법 및 과정

○ 조사원 선발

- 조사원은 조사 가능일 수와 조사대상시설의 수를 고려하여 서울·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제주권으로 구분하여 5개 팀으로 구성.
- 조사팀은 권역별로 선정한 공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조사추진 현황 및 어려움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들로 구성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4개 권역에서 공동연구원 소속기관에서 선발된 조사원은 총 54명으로 그 현황은 <표 IV-2>와 같으며, 조사 수행 시작부터 완료까지 변동 없이 유지됨.
- 강원·제주권은 조사원의 현장 접근 및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기관에서 직접 조사함.

<표 IV-2> 권역별 조사대상시설의 수와 조사원 수

구분	조사대상시설의 수	조사원 수(조사팀 수)	비고
수도권	127개소	18명(9팀)	
충청권	78개소	8명(4팀)	
경상권	136개소	12명(6팀)	
전라권	99개소	16명(8팀)	

○ 조사 기간

- 전수조사는 2022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됨.

○ 조사원 교육

- 교육자료 작성 및 배포
 - 편의시설 종류 및 개요, 편의시설 사례 해설.
 - 조사 수행 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 등.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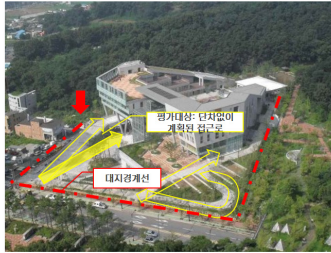
1. 매개시설

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 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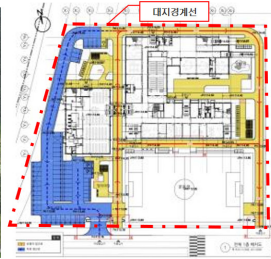
1.1 주출입구 접근로

1.1.1 해당시설에 건축물 주출입구로의 접근로가 있는가?

사례



대지경계선과 다양한 경로의 접근로 사례



보차분리를 통한 접근로 계획 사례

Q&A 질문과 답변

Q: 접근로는 무엇인가요?

A: 접근로는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출입구로의 이동 경로를 말합니다. 뒤의 그림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접근로에 해당합니다.

Q: 접근로는 어디를 평가하나요?

A: 접근로는 대지 내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평가는 모든 길을 확인하고 평가 기준에 가장 적합하여 장애인등의 이동이 용이한 경로로 수행합니다.

Q: 대지 내 건축물이 여러 등인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A: 대지 내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중을 위한 전시실이 있는 건축물로의 이동경로를 평가합니다. 이때, 전시실이 설치된 건축물이 여러 등인 경우 **상설전시관이 설치된 하나의 건축물을 선정하여 평가** 합니다. 스스로 선택이 어려운 경우 시설 담당자에게 주건축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1. 매개시설

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 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1.1 주출입구 접근로

1.1.3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 1.1.3.1 접근로의 유효폭은 120cm 이상 확보하였는가?



Q&A 질문과 답변

Q: 접근로의 유효폭은 무엇인가요?

A: 유효폭은 이동에 필요한 실제 치수를 말합니다. 접근로에서 유효폭은 가로수, 벤치 등이 설치를 제외한 폭을 말합니다.



접근로 폭은 사례

26

[그림 IV-1] 교육자료 예시-매개시설의 조사항목 및 질의응답



- 편의시설 조사를 위한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실시(권역별 1회)
 - 교육내용: 조사표 항목별 이해, 모바일 조사표 작성방법, 현장실습.



[그림 IV-2] 교육일정 및 내용

- 현장교육 장소는 참여 연구진의 소속기관 활용하여 친숙한 환경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또한, 조사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자료 2편의 배포로 교육과 현장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장애인편의시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교육동영상 채널 1,2 http://youtu.be/hBuwJ_7oq-4



[그림 IV-3]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교육 영상 공유

○ 조사원 구성과 역할

- 조사원

- 참여연구원 직접조사 및 참여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4개 권역) 조사팀 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 조사원은 2인 1조 구성으로 조사의 정확성 확보.
- 조사원의 역할은 기관 섭외, 방문일정 조율, 현장조사, 결과입력 등이 있음.

○ 현장조사 계획 및 추진내용

- 협조공문 발송: 관계부처 발송(8.1.) → 광역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 조사대상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517개소)
 - 협조 어려움 발생 시 연구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기관 섭외 지원.
- 관계자(시설주, 운영관리자, 관장 등) 사전 설문조사지 배포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협조공문 내 설문조사 첨부 및 배포 하여 총 54개 기관 답변 회수.

○ 전수조사 수행

- 조사원은 사전에 기관과 방문일정을 조율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함.
- 조사원 질의응답 채널개설로 실시간 지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단체 및 1:1채팅방 개설(2022. 8. 9.(화)~종료 시) 및 운영.

2. 조사결과 분석 개요 및 자료의 한계

1) 분석범위

- 국·공립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편의시설 의무대상 시설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 법령 시점을 고려하여 4가지로 분석하였음.
- 분석 1.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분석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은 제외하고 분석 기준일을 차등 적용함.
 -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바닥면적, 법 개정 시점, 건축행위(신축, 증·개축) 등에 의하여 결정됨. 즉,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된 박물관 및 미술관,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등의 건축행위 여부에 의해 결정됨



〈표 IV-3〉 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구 분	A. 정비대상시설	B. 신규, 주요부분 변경시설	
대 상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상시설 중 정비대상시설 (법 시행 후 2년 이내) - 읍면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시설 (98.4.11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상시설 중 주요 부분 변경시설(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시)

- 분석 2. 전수조사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분석.
 - 조사대상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을 현행법 기준에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시설에 대해 현행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
 - 또한, 전수조사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연도별 법 기준을 차등 적용한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법적 기준 적합성을 밝힘.
- 분석 3. 2015년도 이후 조사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분석.
 - BF 인증이 도입된 이후 신축된 건축물을 분석함. 이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해 의무설치 시점이 다른 세부편의시설의 경우에는 연도별 평가적용 항목을 별도로 구성함.
- 분석 4. 면적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분석.
 - 법 기준 제외시설인 500제곱미터 미만, 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인 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규모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표 IV-4〉 분석 내용 및 기준

구 분	분석 내용	대상시설	현행 기준 적용 여부	기준 차등 적용 여부
1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의무대상시설	-	○
2	전수조사대상 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전체대상시설	○	-
		전체대상시설	-	○
3	2015년도 이후 조사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의무대상시설	-	○
4	면적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전체대상시설	-	○

2) 자료의 한계

○ 건축물 정보 수집의 한계

- 국·공립의 국유재산은 건축물대장 열람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사는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물 정보를 기초로 수행함.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정보와 본 연구의 건축물 정보는 오차가 존재함.
- 대표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활용한 개관년도는 건축물 허가 시점과 상이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증·개축 여부, 용도변경 등의 사항도 파악하기 어려움. 건축물 면적도 연면적과 전시공간의 면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음.
- 다만, 본 연구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써 장애인편의시설의 현행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정보를 활용한 연구의 수행도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함.

3. 조사결과

1) 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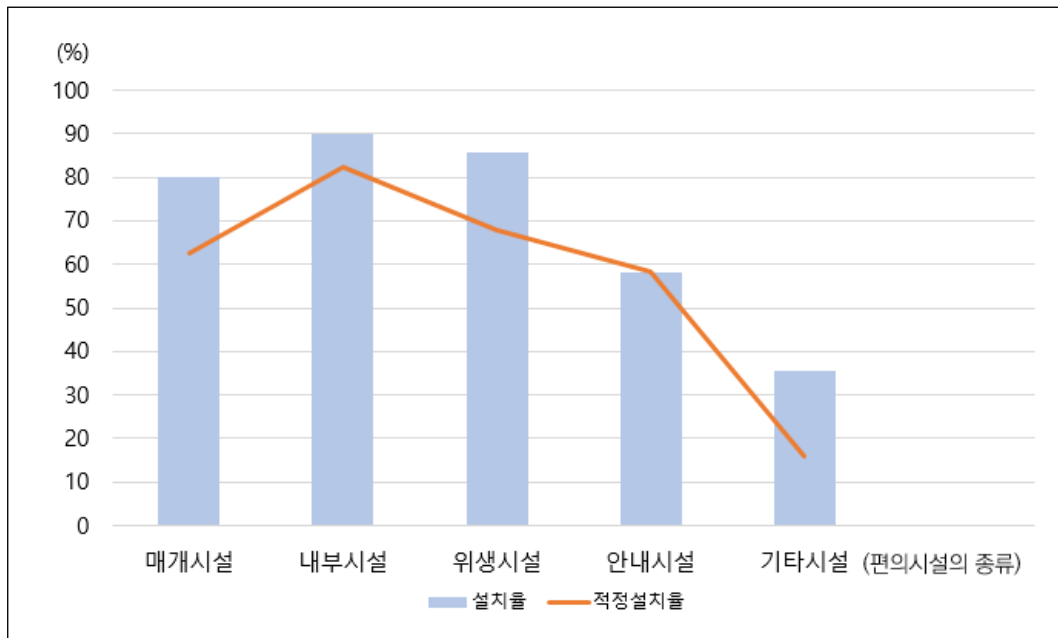
- 편의시설 의무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우선적으로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 이후의 건축물을 추출하고, 추출된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대상시설을 선정함.
- 1998년 4월 11일 이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수는 402개소이며, 현장조사가 완료된 시설의 수는 391개소 임.
- 안내시설은 시각장애인설비 및 청각장애인설비의 연속적 설치현황 여부와 관계되며, 기타시설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현황과 관계되며, 분석을 위한 대상시설은 해당 항목의 법 개정 시점인 2018년 8월 11일 이후의 시설로 한정함.
- 법적 의무대상 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각각 70.0퍼센트와 57.4퍼센트로 조사되어 그 차이는 12.6퍼센트로 나타나 적정설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IV-5〉 법적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구분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적정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8,481	8,481	6,688	80.2%	5,042	62.7%	17.5%
내부시설	14,333	14,333	12,760	90.1%	11,179	82.2%	7.9%
위생시설	7,857	7,857	6,704	85.8%	5,009	67.9%	17.9%
안내시설	48	48	28	58.3%	28	58.3%	0.0%
기타시설	144	144	51	35.4%	23	16.0%	19.4%
합계	30,863	30,863	26,231	70.0%	21,281	57.4%	12.5%

* 설치기준 항목수란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항목을 모두 합한 것으로 이하 표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함.



[그림 IV-4] 법적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2) 매개시설

① 주출입구 접근로

- 조사대상시설 391개소 중 주출입구 접근로가 있는 시설은 85.4퍼센트(334개소)이며, 세부항목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표 VI-6>과 같음.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한 시설은 63.5퍼센트(212개소)로 나타났으며, 설치위치와 시공방법의 적정설치율은 40퍼센트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표 IV-6>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121	바닥마감 미끄럼 정도	334	334	331	99.1%	325	97.3%	1.8%
1122	바닥틈과 평탄한 정도	334	334	315	94.3%	278	83.2%	11.1%
1123	뿔개틈새 적정성	334	334	330	98.8%	236	70.7%	28.1%
1131	통과 유효폭 확보	334	334	332	99.4%	323	96.7%	2.7%
1132	적정 기울기 확보	334	334	249	74.6%	196	58.7%	15.9%
1141	보차분리	334	334	292	87.4%	256	76.6%	10.8%
1142	유효높이	334	334	323	96.7%	323	96.7%	0.0%
1161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334	334	212	63.5%	177	53.0%	10.5%
1162	점자블록 설치위치	334	334	212	63.5%	121	36.2%	27.2%
1163	점자블록 시공방법	334	334	212	63.5%	122	36.5%	26.9%
합계		3,340	3,340	2,808	84.1%	2,357	70.6%	13.5%



[그림 IV-5] 접근로 점자블록의 설치



[그림 IV-6] 접근로 점자블록 미설치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별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마련하고 주차면 수의 2~4퍼센트 정도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391개소 중 78.5퍼센트(307개소)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조사 대상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용부지에 타 시설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문제는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접근로 조성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차장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데 있음.
- 세부항목별로 주차면의 크기, 바닥표시 및 입식 안내표지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는 34.5퍼센트, 52.1퍼센트, 52.4퍼센트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이는 장애인등편의법 2018년 2월 9일 개정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는 것 외에 주차구획선에도 장애인 전용 표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또한, 입식 안내표지의 경우 연락처 등의 기재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이의 개선이 필요함.

〈표 IV-7〉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211 장애인주차 설치여부	391	391	307	78.5%	-	-	-
1224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307	307	236	76.9%	236	76.9%	0.0%
1225 주차면 크기	307	307	289	94.1%	183	59.6%	34.5%
1226 바닥마감 미끄럼 정도	307	307	307	100.0%	262	85.3%	14.7%
1227 바닥 기울기	307	307	307	100.0%	278	90.6%	9.4%
12311 바닥표시 적정여부	307	307	295	96.1%	135	44.0%	52.1%
12312 입식표지 적정여부	307	307	304	99.0%	143	46.6%	52.4%
합계	2,233	2,233	2,019	92.1%	1,277	67.2%	24.9%



[그림 IV-7] 바닥 안내표시 변경 후



[그림 IV-8] 입식 안내표지 변경 후



[그림 IV-9] 기준에 맞지 않는 바닥마감 및 안내표시



[그림 IV-10] 기준에 맞지 않는 입식 안내표지

③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 주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없어 무단차로 진입이 가능한 시설은 391개소 중 38.1퍼센트 (149개소)로 나타나며, 단차 제거는 계단,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근로를 구성함.
-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는 59.3퍼센트(232개소)가 설치하고 있으며, 경사로 기울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는 40.5퍼센트로 나타나 실제로 장애인등의 이동 가능한 경사로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사로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손잡이 등이 설치하여야 하며,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주출입구까지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그림 IV-11] 주출입구 높이 차이 없음



[그림 IV-12]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그림 IV-13] 경사로 기울기 및 손잡이 설치



[그림 IV-14] 경사로 안내표시

-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계단의 세부항목은 점형블록의 설치 형태, 설치위치, 시공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는 각각 11.2퍼센트, 19.4퍼센트, 10.7퍼센트로 나타남

〈표 IV-8〉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항목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321	경사로 기울기	232	232	193	83.2%	99	42.7%	40.5%
1322	경사로 유효폭	232	232	231	99.6%	215	92.7%	6.9%
1323	휴식장 설치여부	232	232	150	64.7%	132	56.9%	7.8%
1324	바닥마감	232	232	226	97.4%	206	88.8%	8.6%
1325	휴식장 활동공간 확보	232	232	208	89.7%	167	72.0%	17.7%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326	손잡이 연속설치	232	232	136	58.6%	97	41.8%	16.8%
1327	손잡이 높이	232	232	137	59.1%	90	38.8%	20.3%
1328	손잡이 굵기	232	232	136	58.6%	92	39.7%	19.0%
1329	손잡이 연장설치	232	232	73	31.5%	32	13.8%	17.7%
13210	손잡이 점자표지판	232	232	62	26.7%	50	21.6%	5.2%
1341	점형블록 형태	196	196	103	52.6%	81	41.3%	11.2%
1342	점형블록 설치위치	196	196	103	52.6%	65	33.2%	19.4%
1343	점형블록 시공방법	196	196	103	52.6%	82	41.8%	10.7%
합계		2,908	2,908	1,861	63.6%	1,408	48.1%	15.5%

(2) 내부시설

①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

- 주출입구의 세부 평가항목은 무단차, 문의 형태, 유효거리 확보, 점형블록의 설치 여부가 포함됨. 주출입구의 높이차이가 무단차 또는 2센티미터 이하의 시설은 99퍼센트(387개소)로 나타나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형블록은 77.1퍼센트(297개소)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출입문의 세부항목은 출입문 단차여부, 통과 유효폭, 유효거리, 손잡이 설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가 포함됨.
- 박물관·미술관의 내부 공간은 일반출입문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됨. 일반적으로 실내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형태 및 여닫기 기능이 등이 중요하나, 전시공간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어 개구부의 성격을 지니면서 문의 기능적 특성(출입문의 형태, 손잡이 형태, 출입문의 유효거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설치율이 두드러지게 낮은 항목은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이며 15.9퍼센트(39개소)만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IV-9〉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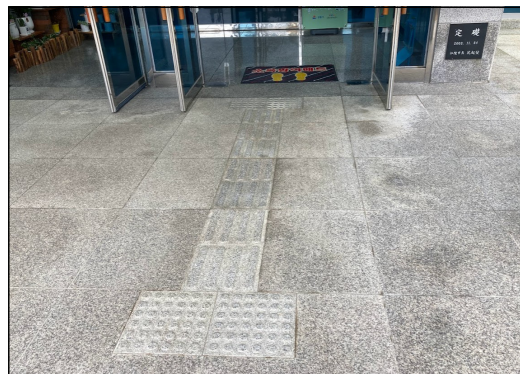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111	주출입문 높이차이	391	391	391	100.0%	387	99.0%	1.0%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112	주출입문 유효폭 확보	391	391	383	98.0%	360	92.1%	5.9%
2113	주출입문 유효거리	391	391	351	89.8%	351	89.8%	0.0%
2114	주출입문 손잡이	391	391	390	99.7%	356	91.0%	8.7%
2115	주출입문 손잡이 형태	391	391	391	100.0%	391	100.0%	0.0%
2116	주출입문 활동공간	391	391	391	100.0%	391	100.0%	0.0%
2117	주출입문 형태	391	391	391	100.0%	391	100.0%	0.0%
2131	점형블록 형태	385	385	297	77.1%	202	52.5%	24.7%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85	385	297	77.1%	219	56.9%	20.3%
2133	점형블록 시공방법	385	385	297	77.1%	291	75.6%	1.6%
소계		3,850	3,850	3,574	92.8%	3,236	84.1%	8.8%
2141	일반출입문 높이차이	385	385	331	86.0%	317	82.3%	3.6%
2142	출입문 유효폭 확보	385	385	324	84.2%	285	74.0%	10.1%
2143	출입문 유효거리	385	385	321	83.4%	309	80.3%	3.1%
2144	출입문 손잡이 설치	272	272	272	100.0%	240	88.2%	11.8%
2145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246	246	39	15.9%	34	13.8%	2.0%
2146	출입문 활동공간 확보	15	15	15	100.0%	13	86.7%	13.3%
2147	출입문 손잡이	264	264	264	100.0%	248	93.9%	6.1%
2148	출입문 형태	278	278	278	100.0%	278	100.0%	0.0%
소계		2,230	2,230	1,844	83.7%	1,724	77.4%	6.3%
합계		6,122	6,122	5,423	87.8%	5,063	81.5%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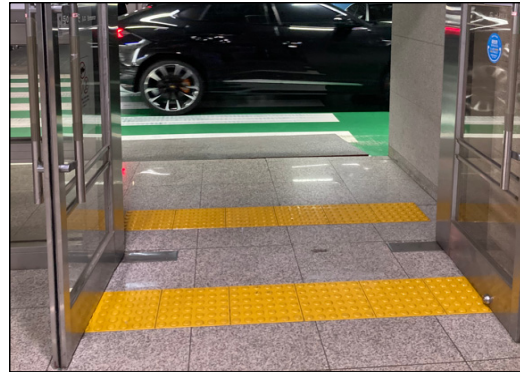
[그림 IV-15] 주출입문 점형블록(비표준형)



[그림 IV-16] 주출입문 점형블록(비표준형)



[그림 IV-17] 주출입문 점형블록(표준형)



[그림 IV-18] 주출입문 점형블록(표준형)



[그림 IV-19] 내부 관람실의 출입문

② 복도

- 복도의 세부항목은 유효폭 1.2미터 확보, 단차 2센티미터 이하, 상부 유효높이 2.1미터 확보 등이 있음.
- 각 세부항목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는 평균 2.1퍼센트로 나타나 대부분의 복도가 장애인등의 이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IV-10〉 복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211	복도 유효폭	391	391	389	99.5%	379	96.9%	2.6%
2212	복도 단차	391	391	383	98.0%	368	94.1%	3.8%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 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213 복도 상부 유효높이	391	391	352	90.0%	352	90.0%	0.0%
합계	1,173	1,173	1,124	95.8%	1,099	93.7%	2.1%

③ 수직 이동수단(계단 또는 승강설비)

- 조사대상시설 중 단층건물이거나 전시장이 단일 층에 위치한 대상시설은 30.9퍼센트(121개소)로 조사됨. 수직 이동을 위하여 계단을 설치한 대상시설은 73.7퍼센트(288개소)이며, 승강기를 설치한 시설은 66퍼센트(258개소)로 조사됨.
- 계단은 세부항목으로 유효폭, 첩면, 손잡이 설치 등이 있으며, 손잡이 굵기 및 손잡이 높이, 손잡이 연속설치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는 각각 48.3퍼센트, 29.5퍼센트, 43.4퍼센트로 나타나 적정설치율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승강기 세부항목은 출입문 유효폭, 내부 유효바닥면적, 가로 및 세로 조작판 설치 높이, 점형블록, 조도 등이 있음. 그 결과 표준형 점형블록의 적정설치율은 65.1퍼센트로 낮게 나타남.
- 또한, 승강기 이용을 위한 조도는 적정설치율이 51.9퍼센트로 낮게 나타났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타 시설에 비해 실내조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표 IV-11〉 수직 이동수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계 단	2421 계단 유효폭	288	288	100.0%	261	90.6%	9.4%	
	2422 계단 첩면 설치여부	288	288	288	100.0%	274	95.1%	4.9%
	2423 첩면 처리방법	288	288	288	100.0%	230	79.9%	20.1%
	2424 손잡이 굵기	288	288	252	87.5%	113	39.2%	48.3%
	2425 손잡이 높이	288	288	251	87.2%	166	57.6%	29.5%
	2426 손잡이 연장설치	288	288	160	55.6%	68	23.6%	31.9%
	2428 손잡이 점자표기	288	288	117	40.6%	106	36.8%	3.8%
	2429 손잡이 연속설치	288	288	238	82.6%	113	39.2%	43.4%
	2427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288	288	180	62.5%	126	43.8%	18.8%
	24210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88	288	183	63.5%	122	42.4%	21.2%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4211	점형블록 시공방법	288	288	182	63.2%	127	44.1%	19.1%	
승강기	2441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258	258	258	100.0%	240	93.0%	7.0%
	2442	장애인용승강기 통과 유효폭	258	258	258	100.0%	252	97.7%	2.3%
	2444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258	258	258	100.0%	228	88.4%	11.6%
	2445	승강기 가로형 조작판 설치	258	258	248	96.1%	248	96.1%	0.0%
	2446	승강기 가로형 조작판 높이	258	258	251	97.3%	121	46.9%	50.4%
	2447	승강기 조작설비 버튼식	258	258	258	100.0%	258	100.0%	0.0%
	2448	승강기 조작설비 점자표시	258	258	257	99.6%	257	99.6%	0.0%
	2449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58	258	248	96.1%	168	65.1%	31.0%
	244101	점형블록 설치위치	258	258	248	96.1%	214	82.9%	13.2%
	244102	점형블록 시공방법	258	258	249	96.5%	248	96.1%	0.4%
	24411	승강기 외부 도착여부	258	258	237	91.9%	237	91.9%	0.0%
	24412	내부 운행상황 표시 설치	258	258	242	93.8%	236	91.5%	2.3%
	24413	내부 손잡이 굽기 간격	258	258	258	100.0%	223	86.4%	13.6%
	24414	승강장 바닥틈	258	258	258	100.0%	247	95.7%	4.3%
	24415	조도	258	258	258	100.0%	134	51.9%	48.1%
합계		7,038	7,038	6,213	88.9%	5,017	72.1%	16.7%	

(3) 위생시설

① 일반사항

- 위생시설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일반화장실로 구분하여 조사함. 세부항목으로 장애인용대변기를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였는지,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및 점형블록 등이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하게 설치하였는지 등이 있음. 391개소 중 위생시설은 388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장애인용 대변기 남녀설치는 365개소로 조사됨.
- 장애인용대변기를 설치한 화장실은 상설전시장과 동일 건축물 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대지 내 장애인용대변기가 설치된 곳이 있는 경우 설치한 것으로 봄.
- 위생시설의 세부항목은 장애인용대변기가 남녀구분 설치, 통로 유효폭 확보, 점자표지판 설치, 점형블록 등이 있음.
- 화장실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시설은 66.2퍼센트(25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한 시설은 44.3퍼센트(172개소)로 조사됨.



〈표 IV-12〉 위생시설 일반사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111 장애인용대변기 남녀설치	388	388	365	94.1%	277	71.4%	22.7%
3112 사용여부 설비	388	388	286	73.7%	251	64.7%	9.0%
3113 통로폭 확보	388	388	375	96.6%	250	64.4%	32.2%
3114 화장실 바닥 단차	388	388	379	97.7%	359	92.5%	5.2%
3115 바닥 마감	388	388	377	97.2%	328	84.5%	12.6%
3116 영유아용거치대	388	388	158	40.7%	116	29.9%	10.8%
3117 남녀구별 점자표지	388	388	228	58.8%	157	40.5%	18.3%
3119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388	388	381	98.2%	205	52.8%	45.4%
3131 점형블록 표준형	388	388	257	66.2%	172	44.3%	21.9%
3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388	388	257	66.2%	234	60.3%	5.9%
3133 점형블록 시공방법	388	388	257	66.2%	256	66.0%	0.3%
합계	4,268	4,268	3,320	77.8%	2,605	61.0%	16.8%

② 대변기

- 대변기 세부항목은 휠체어 이용 가능 화장실의 설치, 출입문 형태, 통과 유효폭, 바닥면 크기확보, 손잡이 및 비상용 벨 등이 있음.
-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92퍼센트(357개소)에 설치됨.

〈표 IV-13〉 대변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221 출입문 형태	357	357	357	100.0%	289	81.0%	19.0%
3222 통과 유효폭	357	357	357	100.0%	292	81.8%	18.2%
3225 바닥면 크기확보	357	357	357	100.0%	210	58.8%	41.2%
3226 휠체어 회전 활동공간	24	24	14	58.3%	14	58.3%	0.0%
3231 대변기 형태 좌대 높이	357	357	357	100.0%	354	99.1%	0.9%
3232 수평 손잡이 높이	357	357	347	97.2%	255	71.4%	25.8%
3233 수직 손잡이	357	357	346	96.9%	216	60.5%	36.4%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234	회전식 손잡이	357	357	345	96.6%	307	86.0%	10.6%
3235	세정장치 형태	357	357	357	100.0%	139	38.9%	61.1%
3236	비상용벨 높이	357	357	185	51.8%	156	43.7%	8.1%
3237	비상용벨 작동 여부	357	357	105	29.4%	83	23.2%	6.2%
합계		3,594	3,594	3,127	84.6%	2,330	63.9%	20.7%

(4) 경보 및 피난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세부항목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장치의 설치 유무로 구분하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2018. 8. 10.)으로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게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함.
- 시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24개소 중 54.2퍼센트(13개소),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62.5퍼센트(15개소)가 설치함.

〈표 IV-14〉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4211	시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24	24	13	54.2%	13	54.2%	0.0%
4212	청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24	24	15	62.5%	15	62.5%	0.0%
합계		48	48	28	58.3%	28	58.3%	0.0%

(5) 기타시설

- 기타시설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항목을 평가함.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18. 1. 30.)으로 의무화되었으며, 내부에는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함.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대상시설의 54.2퍼센트(13개소)가 설치하였으며, 내부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시설은 41.7퍼센트(10개소), 세면대를 설치한 시설은 29.2퍼센트(7개소)로 나타남.



〈표 IV-1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적정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5531	기저귀교환대 활동공간 확보	24	24	10	41.7%	7	29.2%	12.5%
5532	기저귀교환대 높이	24	24	10	41.7%	4	16.7%	25.0%
5533	기저귀교환대 깊이	24	24	10	41.7%	4	16.7%	25.0%
5541	세면대 활동공간 확보	24	24	7	29.2%	5	20.8%	8.3%
5542	세면대 높이	24	24	7	29.2%	2	8.3%	20.8%
5543	세면대 깊이	24	24	7	29.2%	1	4.2%	25.0%
합계		144	144	51	35.5%	23	16.0%	19.5%

2) 전체 조사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 전체 조사대상시설 497개소를 현행법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497개소의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67.6퍼센트이며, 이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67.6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56.9퍼센트로 나타남.

〈표 IV-16〉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현행법 기준)

구분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적정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1,476	11,476	9,052	80.6%	7,047	63.2%	17.4%
내부시설	19,048	19,048	17,713	90.6%	15,314	86.5%	4.2%
위생시설	14,144	14,144	10,089	72.9%	7,897	60.4%	12.5%
안내시설	48	48	28	58.3%	28	58.3%	0.0%
기타시설	144	144	51	35.4%	23	16.0%	19.4%
합계	44,860	44,860	36,933	67.6%	30,309	56.9%	10.7%

- 위의 전체 조사대상시설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시점에 따른 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설치율 71.6퍼센트, 적정설치율 57.2퍼센트로 나타나 현행법 기준 결과와 설치율은 4퍼

센트, 적정설치율은 0.3퍼센트의 차이를 나타냄.

〈표 IV-17〉 박물관·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법 기준 적용시기 차등적용)

구분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적정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9,293	9,293	8,434	91.3%	5,850	66.3%	25.1%
내부시설	14,877	14,877	13,275	91.8%	11,450	82.2%	9.6%
위생시설	8,607	8,607	7,061	81.3%	5,219	63.3%	18.5%
안내시설	48	48	28	58.3%	28	58.3%	0.0%
기타시설	144	144	51	35.4%	23	16.0%	19.4%
합계	32,969	32,969	28,849	71.6%	22,570	57.2%	14.4%

(2) 매개시설

① 주출입구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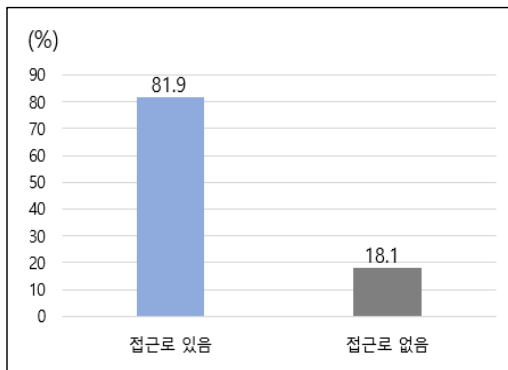
- 조사대상시설 497개소 중 대지경계에서 건축물 주출입구로의 접근로가 있는 시설은 81.9퍼센트(407개소)이며, 접근로에 점자블록을 설치한 시설의 수는 60.7퍼센트(247개소)로 나타남.
- 접근로는 바닥마감과 단차가 있는 곳에 경사로 설치, 표준형 점자블록의 올바른 설치 등을 평가함. 이 중 경사로의 기울기 8분의 1이하로 적정하게 설치한 시설의 비율은 57.5퍼센트로 나타나 약 40퍼센트의 시설은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8〉 주출입구 접근로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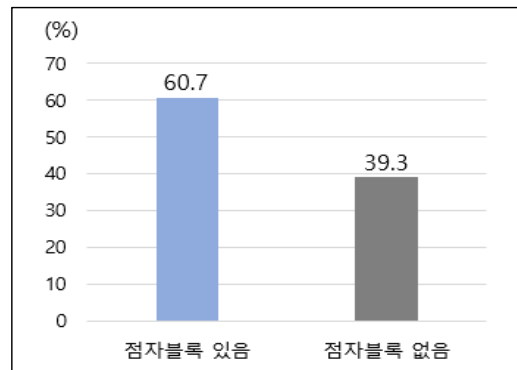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접근로	1121	바닥마감 미끄럼 정도	407	407	405	99.5%	393	96.6%	2.9%
	1122	바닥 틈새 평탄한 정도	407	407	382	93.9%	332	81.6%	12.3%
	1123	덮개 틈새 적정성	407	407	400	98.3%	288	70.8%	27.5%
	1131	통과 유효폭 확보	407	407	405	99.5%	395	97.1%	2.5%
	1132	적정 기울기 확보	407	407	296	72.7%	234	57.5%	15.2%
	1141	보차분리	407	407	351	86.2%	309	75.9%	10.3%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142 유효높이	407	407	390	95.8%	390	95.8%	0.0%	
점자블록	1161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247	247	100.0%	204	82.6%	17.4%	
	1162 점자블록 설치위치	247	247	233	94.3%	138	55.9%	38.5%
	1163 점자블록 시공방법	247	247	243	98.4%	209	84.6%	13.8%
합계	3,590	3,590	3,352	93.9%	2,892	79.8%	14.1%	



[그림 IV-20] 접근로 유무



[그림 IV-21] 점자블록 유무

② 외부 관람로

- 외부 관람로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시설은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함. 외부 관람로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23개소로 나타남.
- 외부 관람로의 세부항목은 바닥 재질과 마감, 유효폭, 그리고 기울기가 있으며, 바닥 마감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각각 71.5퍼센트와 55.3퍼센트, 틈새 간격은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95.1퍼센트와 61.0퍼센트로 나타남. 또한 바닥의 기울기 18분의 1 이하를 확보한 시설도 50.4퍼센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외부 관람로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음.

〈표 IV-19〉 외부 관람로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b1121	바닥 재질	123	123	119	96.7%	107	87.0%	9.8%
b1122	바닥 마감	123	123	88	71.5%	68	55.3%	16.3%
b1123	바닥 단차 및 틈새	123	123	117	95.1%	75	61.0%	34.1%
b1124	접근로 유효폭	123	123	121	98.4%	115	93.5%	4.9%
b1125	적정 기울기 확보	123	123	79	64.2%	62	50.4%	13.8%
합계		615	615	524	85.2%	427	69.4%	15.8%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497개소 중 75.9퍼센트(377개소)의 시설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항목별로 주차면의 크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보행통로 유효폭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각각 33.4퍼센트, 52.8퍼센트, 26.3퍼센트로 나타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바닥표시 및 입식 안내표시를 설치하여 주차구역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내표시를 적정하게 설치한 시설은 42.4퍼센트로 절반 이하로 나타남.

〈표 IV-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224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377	377	377	100.0%	289	76.7%	23.3%
1225	주차면 크기	377	377	353	93.6%	227	60.2%	33.4%
1226	바닥 마감 미끄럼 정도	377	377	357	94.7%	317	84.1%	10.6%
1227	적정 기울기 확보	377	377	373	98.9%	336	89.1%	9.8%
1231	안내표시 적정 여부	377	377	359	95.2%	160	42.4%	52.8%
12321	보행통로 유효폭 확보	377	377	284	75.3%	185	49.1%	26.3%
12322	보행통로 차도 분리	377	377	97	25.7%	97	25.7%	0.0%
12323	보행통로 기울기	377	377	341	90.5%	314	83.3%	7.2%
1233	보차분리	377	377	241	63.9%	168	44.6%	19.4%
합계		3,393	3,393	2,782	82.0%	2,093	61.7%	20.3%



④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 주출입구 높이 차이가 없는 시설은 497개소 중 33.4퍼센트(166개소)로 나타남.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해 계단을 설치한 276개소 중 점형블록을 설치한 시설은 49.3퍼센트(136개소)이며, 경사로는 77.7퍼센트(237개소)가 설치하고 있으며, 리프트는 1개소에 설치됨.

〈표 IV-2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경사로	1321	경사로 기울기	305	305	237	77.7%	114	37.4%	40.3%
	1322	경사로 유효폭	305	305	303	99.3%	273	89.5%	9.8%
	1323	휴식침 설치유무	305	305	198	64.9%	173	56.7%	8.2%
	1324	바닥마감	305	305	297	97.4%	271	88.9%	8.5%
	1325	휴식침 활동공간 확보	305	305	268	87.9%	22	7.2%	80.7%
	1326	손잡이 연속설치	305	305	174	57.0%	127	41.6%	15.4%
	1327	손잡이 높이	305	305	176	57.7%	124	40.7%	17.0%
	1328	손잡이 굽기	305	305	175	57.4%	121	39.7%	17.7%
	1329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305	305	81	26.6%	41	13.4%	13.1%
	13210	손잡이 점자표지판	305	305	77	25.2%	68	22.3%	3.0%
계단	1341	표준형 점형블록	276	276	136	49.3%	107	38.8%	10.5%
	1342	점형블록 설치위치	276	276	136	49.3%	89	32.2%	17.0%
	1343	점형블록 시공방법	276	276	136	49.3%	105	38.0%	11.2%
리프트	1351	리프트 활동공간 확보	1	1	1	100.0%	1	100.0%	0.0%
	13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1	1	1	100.0%	1	100.0%	0.0%
	1353	리프트 설치기준	1	1	1	100.0%	1	100.0%	0.0%
합계			3,537	3,537	2,430	77.8%	1,863	63.8%	14.1%

(3) 내부시설

① 주출입문

- 주출입구는 무단차 또는 2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차이가 있는 시설이 97.2퍼센트(483개소)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설이 장애인들의 이용 가능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됨. 다만, 주출입구는 점형블록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70.8퍼센트(352개소)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이 필요함.

〈표 IV-22〉 주출입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111	주출입문 높이차이	497	497	483	97.2%	483	97.2%	0.0%
2112	주출입문 유효폭 확보	497	497	486	97.8%	459	92.4%	5.4%
2113	주출입문 유효거리	497	497	442	88.9%	442	88.9%	0.0%
2114	주출입문 손잡이 높이	497	497	496	99.8%	435	87.5%	12.3%
2115	주출입문 손잡이 형태	497	497	496	99.8%	493	99.2%	0.6%
2116	주출입문 활동 공간	497	497	497	100.0%	497	100.0%	0.0%
2117	주출입문 형태	497	497	497	100.0%	497	100.0%	0.0%
2131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97	497	352	70.8%	246	49.5%	21.3%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497	497	352	70.8%	261	52.5%	18.3%
2133	점형블록 시공방법	497	497	352	70.8%	250	50.3%	20.5%
합계		4,970	4,970	4,453	89.6%	4,063	81.8%	7.8%



② 일반출입문

- 일반출입문의 세부항목은 출입문 단차여부, 통과 유효폭, 유효거리, 손잡이 설치, 점자표지판 설치 등이 있음.
- 출입문의 95퍼센트는 단차 없이 계획되었으며, 전체 출입문이 유효폭도 80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실로의 이동을 위한 유효폭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출입문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은 14.7퍼센트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점자표지판의 설치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표 IV-23〉 일반출입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141	일반출입문 높이차이	422	422	422	100.0%	401	95.0%	5.0%
2142	출입문 유효폭 확보	410	410	410	100.0%	354	86.3%	13.7%
2143	출입문 유효거리	406	406	406	100.0%	389	95.8%	4.2%
2144	출입문 손잡이 설치	342	342	335	98.0%	296	86.5%	11.4%
2145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313	313	46	14.7%	37	11.8%	2.9%
2146	출입문 활동공간 확보	339	339	322	95.0%	257	75.8%	19.2%
2147	출입문 손잡이	335	335	326	97.3%	310	92.5%	4.8%
2148	출입문 형태	350	350	350	100.0%	350	100.0%	0.0%
합계		2,917	2,917	2,617	88.1%	2,394	80.5%	7.6%

③ 보안 및 스피드게이트

- 보안 및 스피드게이트는 4.2퍼센트(21개소)의 시설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1개소 중 20개소는 통과 유효폭 80센티미터 이상이며, 90센티미터 이상 확보한 시설은 18개소임.

〈표 IV-24〉 보안 및 스피드게이트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202	통과 유효폭	21	21	20	95.2%	18	85.7%	9.5%
합계		21	21	20	95.2%	18	85.7%	9.5%



[그림 IV-22] 보안게이트 사례



[그림 IV-23] 스피드게이트 사례

④ 복도

- 복도는 유효폭 확보, 단차 여부, 상부 유효높이 등을 평가하였으며, 복도 세부항목의 전체 적정설치율은 93.0퍼센트로 나타남.

<표 IV-25> 복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211 복도 유효폭	497	497	493	99.2%	475	95.6%	3.6%
2212 복도 단차	497	497	481	96.8%	465	93.6%	3.2%
2213 복도 상부 유효높이	497	497	447	89.9%	447	89.9%	0.0%
합계	1,491	1,491	1,421	95.3%	1,387	93.0%	2.3%

⑤ 내부 관람로

- 내부 관람로는 복도와 구분된 전시공간의 복도를 일컬으며, 실제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람로 유효폭, 단차, 유효 높이 등을 평가함. 조사대상시설 중 내부 관람로가 있는 시설은 98퍼센트(487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전시공간과 복도 공간을 분리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시설은 '내부 관람로'를 없으므로 평가하고 '복도' 항목에서 평가함.
- 내부 관람로에 장애인 등의 이동에 제약이 되는 2센티미터 이상의 단차가 있는 시설은 78개소이며, 주요 원인은 스킵플로어 계획, 바닥면을 활용한 전시공간의 계획, 그리고 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연계 등이 있음.



〈표 IV-26〉 내부 관람로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A2211	내부 관람로 유효폭	487	487	486	99.8%	439	90.1%	9.7%
A2212	내부 관람로 단차	487	487	486	99.8%	409	84.0%	15.8%
A2213	내부 관람로 유효높이	487	487	486	99.8%	436	89.5%	10.3%
합계		1,461	1,461	1,458	99.8%	1,284	87.9%	11.9%



[그림 IV-24] 스킵플로어 바닥



[그림 IV-25] 바닥 전시로 인한 복도단차

⑥ 수직 이동수단(계단 또는 승강설비)

○ 조사대상시설 중 단층 건축물은 24.3퍼센트(121개소)이며, 1층 이상의 건축물은 75.7퍼센트(376개소)로 나타남. 수직 이동을 위한 계단은 351개소, 승강기는 299개소, 경사로는 57개소, 그리고 리프트는 22개소가 설치함.

○ 계단

- 계단은 유효폭, 첩면, 손잡이 설치 관련 사항을 평가함.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손잡이는 [그림 IV-26], [그림 IV-27]과 같이 난간과 구분되어 설치하여야 함. 난간만 설치한 시설의 경우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30.8퍼센트 차이가 있으며, 손잡이 굵기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차이는 47퍼센트에 달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손잡이 설치가 필요함.

〈표 IV-27〉 계단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421	계단 유효폭	351	351	348	99.1%	318	90.6%	8.5%
2422	계단 철크면 설치 유무	351	351	330	94.0%	330	94.0%	0.0%
2423	계단코 돌출여부	351	351	346	98.6%	285	81.2%	17.4%
2424	손잡이 굽기	351	351	302	86.0%	137	39.0%	47.0%
2425	손잡이 높이	351	351	304	86.6%	196	55.8%	30.8%
2426	손잡이 연장설치	351	351	189	53.8%	81	23.1%	30.8%
2428	손잡이 점자표지판	351	351	139	39.6%	121	34.5%	5.1%
2429	손잡이 연속설치	351	351	289	82.3%	128	36.5%	45.9%
2427	점형블록 계단 폭만큼 설치	351	351	211	60.1%	147	41.9%	18.2%
24210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15	215	215	100.0%	145	67.4%	32.6%
24211	점형블록 시공방법	215	215	215	100.0%	146	67.9%	32.1%
합계		3,589	3,589	2,888	81.8%	2,034	57.4%	24.4%



[그림 IV-26] 계단 난간



[그림 IV-27] 계단 손잡이

○ 승강기

- 승강기의 세부항목은 출입문 유효폭, 내부 유효바닥면적, 가로 및 세로 조작판 설치 높이, 점형블록, 조도 등이 있음. 표준형 점형블록의 설치 및 시공방법, 그리고 조도 항목은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가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올바른 설치가 필요함.



〈표 IV-28〉 승강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2441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299	299	291	97.3%	279	93.3%	4.0%
2442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	299	299	292	97.7%	292	97.7%	0.0%
2444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299	299	297	99.3%	242	80.9%	18.4%
2445	승강기 가로형 조작판 설치	299	299	287	96.0%	287	96.0%	0.0%
2446	승강기 세로형 조작판 높이	299	299	291	97.3%	141	47.2%	50.2%
2447	승강기 조작설비 버튼식	299	299	299	100.0%	299	100.0%	0.0%
2448	승강기 조작설비 점자표시	299	299	298	99.7%	298	99.7%	0.0%
2449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99	299	289	96.7%	202	67.6%	29.1%
244101	점형블록 설치위치	299	299	288	96.3%	250	83.6%	12.7%
244102	점형블록 시공방법	299	299	290	97.0%	201	67.2%	29.8%
24411	승강기 외부 도착여부	299	299	273	91.3%	271	90.6%	0.7%
24412	내부 운행상황 표시 설치	299	299	275	92.0%	261	87.3%	4.7%
24413	내부 손잡이 굵기 간격	299	299	297	99.3%	252	84.3%	15.1%
24414	승강장 바닥틈	299	299	299	100.0%	283	94.6%	5.4%
24415	조도	299	299	299	100.0%	222	74.2%	25.8%
합계		4,485	4,485	4,365	97.3%	3,780	84.3%	13.0%

○ 경사로

- 경사로는 유효폭, 휴식참, 기울기, 활동공간, 손잡이 설치 등을 평가함.
- 경사로는 57개소에 설치되었으며, 유효폭은 모든 시설이 적정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경사로 기울기 12분의 1이하의 적정설치율은 38.6퍼센트로 나타나 경사로를 이용한 이동이 어려운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9〉 수직 이동수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2431	경사로 유효폭	57	57	57	100.0%	57	100.0%	0.0%
2432	경사로 휴식참 설치	57	57	37	64.9%	16	28.1%	36.8%
2433	경사로 기울기	57	57	57	100.0%	22	38.6%	61.4%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434	경사로 바닥면 미끄럼 정도	57	57	57	100.0%	48	84.2%	15.8%
2435	경사로 활동공간	57	57	57	100.0%	45	78.9%	21.1%
2436	경사로 손잡이 연속설치	52	52	42	80.8%	28	53.8%	26.9%
2437	경사로 손잡이 높이	52	52	42	80.8%	27	51.9%	28.8%
2438	경사로 손잡이 굽기	52	52	42	80.8%	32	61.5%	19.2%
2439	경사로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52	52	26	50.0%	14	26.9%	23.1%
24310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52	52	22	42.3%	19	36.5%	5.8%
합계		545	545	439	80.0%	308	56.1%	23.9%

○ 리프트

- 리프트를 설치한 대상시설은 4.4퍼센트(22개소)로 조사됨.
- 리프트의 활동공간과 바닥면적은 적정설치율이 각각 86.4퍼센트와 90.9퍼센트로 나타남. 그러나 호출벨의 설치율은 36.4퍼센트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IV-30〉 리프트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451	리프트 활동공간	22	22	22	100.0%	19	86.4%	13.6%
2452	리프트 유효바닥 면적	22	22	22	100.0%	20	90.9%	9.1%
2453	리프트 호출벨 등 설치유무	22	22	8	36.4%	7	31.8%	4.5%
합계		66	66	52	78.8%	46	69.7%	9.1%



(4) 위생시설

① 일반사항

- 장애인용대변기를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92.4퍼센트(459개)로 나타났으며, 접근로의 유효 통로폭 1.2미터를 확보한 시설은 64퍼센트로 나타남.
- 또한, 일반화장실 측면 점자표시판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63.8퍼센트(317개소)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며 적정설치율은 43.3퍼센트 나타남.

〈표 IV-31〉 위생시설의 일반사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111 장애인용대변기 남녀 구분	497	497	459	92.4%	345	69.4%	22.9%
3112 사용여부 설비	497	497	364	73.2%	323	65.0%	8.2%
3113 접근로 통로폭 확보	497	497	419	84.3%	318	64.0%	20.3%
3114 화장실 바닥 단차	497	497	453	91.1%	453	91.1%	0.0%
3115 바닥마감 미끄럼 정도	497	497	415	83.5%	415	83.5%	0.0%
3116 영유아용거치대	497	497	197	39.6%	145	29.2%	10.5%
3117 남녀구별 점자표시판	497	497	291	58.6%	179	36.0%	22.5%
3119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497	497	421	84.7%	255	51.3%	33.4%
3131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97	497	317	63.8%	215	43.3%	20.5%
3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497	497	229	46.1%	229	46.1%	0.0%
3133 점형블록 시공방법	497	497	228	45.9%	228	45.9%	0.0%
합계	5,964	5,964	4,110	69.4%	3,105	56.8%	12.6%

② 대변기

- 장애인용 대변기칸 또는 화장실을 설치한 시설의 수는 88.9퍼센트(442개소)로 나타났으며, 유효 바닥면의 크기의 적정설치율은 41.2퍼센트로 나타남.
- 장애인용 화장실의 출입문의 형태로 자동문, 미닫이, 그리고 밖여닫이 등으로 설치한 시설은 79.9퍼센트(353개소)임.
- 휠체어 회전 활동공간의 적정설치율은 45.7퍼센트이며, 수평손잡이 및 수직손잡이의 설치율은 97.1퍼센트에 달함.

〈표 IV-32〉 대변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221 출입문 형태	442	442	412	93.2%	353	79.9%	13.3%
3222 통과 유효폭	442	442	401	90.7%	255	57.7%	33.0%
3225 유효 바닥면 크기	442	442	347	78.5%	182	41.2%	37.3%
3226 휠체어 회전 활동공간	442	442	202	45.7%	202	45.7%	0.0%
3231 대변기 형태 좌대 높이	442	442	442	100.0%	382	86.4%	13.6%
3232 수평손잡이 높이	442	442	429	97.1%	308	69.7%	27.4%
3233 수직손잡이 설치	442	442	429	97.1%	266	60.2%	36.9%
3234 회전식손잡이 설치	442	442	426	96.4%	426	96.4%	0.0%
3235 세정장치 형태	442	442	246	55.7%	165	37.3%	18.3%
3236 비상용 벨 높이	442	442	139	31.4%	87	19.7%	11.8%
3237 비상용 벨 작동여부	442	442	135	30.5%	109	24.7%	5.9%
합계	4,862	4,862	3,608	74.2%	2,735	56.3%	18.0%



[그림 IV-28] 측면활동공간을 확보한 장애인 화장실



[그림 IV-29] 장애인 화장실 설치 오류



③ 소변기(권장)

- 소변기는 수평손잡이 높이와 길이, 수직손잡이 높이와 길이 등을 평가하였으며,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소변기를 설치한 시설은 266개소로 조사됨.

〈표 IV-33〉 소변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321	수평손잡이 높이	266	266	225	84.6%	175	65.8%	18.8%
3322	수평손잡이 길이	266	266	225	84.6%	223	83.8%	0.8%
3323	좌우 손잡이 간격	266	266	225	84.6%	213	80.1%	4.5%
3324	수직손잡이 높이	266	266	223	83.8%	171	64.3%	19.5%
3325	수직손잡이 돌출길이	266	266	253	95.1%	219	82.3%	12.8%
합계		1,330	1,330	1,151	86.5%	1,001	75.3%	11.3%

④ 세면대(권장)

- 세면대는 497개소 모두 설치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하부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한 세면대는 67.6퍼센트(336개소)로 나타남.
- 수도꼭지 형태는 58.8퍼센트(293개소)가 적정하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점자표시는 13.5퍼센트(67개소)만이 설치하고 있어 점자표시의 설치가 필요함.

〈표 IV-34〉 세면대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421	상하단 높이	497	497	422	84.9%	360	72.4%	12.5%
3422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497	497	430	86.5%	336	67.6%	18.9%
34231	수도꼭지 형태	497	497	293	59.0%	293	59.0%	0.0%
34232	수도꼭지 점자 표시	497	497	75	15.1%	67	13.5%	1.6%
합계		1,988	1,988	1,220	61.4%	1,056	53.1%	8.2%

(5) 유도 및 안내시설

○ 점자, 촉지도식 안내판(권장)

-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한 시설은 497개소 중 28.4퍼센트(141개소)로 나타나며, 음성안내 장치는 4.8퍼센트(24개소), 촉지도식 안내판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시설은 12.7퍼센트(63개소)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촉지도식 안내판의 설치율이 낮게 나타난다.

〈표 IV-35〉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4122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높이	141	141	141	100.0%	105	74.5%	25.5%
4123	점자표기 방식	141	141	141	100.0%	102	72.3%	27.7%
4124	음성안내장치 적정	24	24	24	100.0%	21	87.5%	12.5%
4125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24	24	24	100.0%	12	50.0%	50.0%
4141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63	63	63	100.0%	60	95.2%	4.8%
4142	점형블록 설치위치	63	63	63	100.0%	42	66.7%	33.3%
4143	점형블록 설치방법	63	63	63	100.0%	49	77.8%	22.2%
합계		519	519	519	100.0%	391	74.4%	25.1%

(6)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결과는 편의시설 법적 의무대상시설 〈표 IV-14〉의 결과와 같음.
- 다만, 전체 497개 시설의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36〉과 같음. 시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35.7퍼센트가 설치하였으며,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41.8퍼센트가 설치함.

〈표 IV-36〉 조사대상시설의 경보 및 피난설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4211	시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497	497	178	35.7%	178	35.7%	0.0%
4212	청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497	497	208	41.8%	208	41.8%	0.0%
합계		996	996	386	38.8%	386	38.8%	0.0%



(7) 기타시설

○ 매표소(권장)

-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매표소는 매표의 기능보다 관람객을 맞이하거나 시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함.
- 매표소는 42.9퍼센트(213개소)의 시설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하부 깊이를 확보한 매표소는 8퍼센트(17개소)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함.

○ 판매대(권장)

- 판매대는 7.6퍼센트(38개소)의 시설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전투입구 및 조작버튼의 적정 위치 및 점자표시 설치는 각각 8개소와 4개소로 나타남.

○ 음료대(권장)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음료대는 최근 정수기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로, 100개소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분출구 높이 및 조작기 형태는 각각 51퍼센트와 90퍼센트로 나타남.

○ 점형블록(권장)

-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 시설은 7.9퍼센트(18개소)로 나타남.

○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무)

-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의무대상시설은 <표 IV-15>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의 결과와 동일함. 다만, 497개소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한 시설을 의무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한 결과 34.6퍼센트(172개소)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시설은 23.5퍼센트(117개소), 세면대를 설치한 시설은 11.9퍼센트(59개소)로 나타남.



[그림 IV-30]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사례



[그림 IV-3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사례

〈표 IV-37〉 기타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매 표 소	543	매표소 설치유무	497	497	213	42.9%	-	-	-
	5431	매표소 상부 높이	213	213	213	100.0%	66	31.0%	69.0%
	5432	매표소 하부 높이	213	213	213	100.0%	90	42.3%	57.7%
	5433	매표소 하부 깊이	213	213	213	100.0%	17	8.0%	92.0%
	소계(5431~5433)		639	639	639	100.0%	173	27.1%	72.9%
판 매 대	543	자판기 설치 유무	497	497	38	7.6%	-	-	-
	5434	동전투입구·조작버튼 위치	38	38	38	100.0%	8	21.1%	78.9%
	5435	조작버튼 점자표시 설치유무	38	38	4	10.5%	4	10.5%	0.0%
	5436	자판기 누름버튼식 설치유무	38	38	33	86.8%	33	86.8%	0.0%
	소계(5434~5436)		114	114	75	65.8%	45	39.5%	26.3%
음 료 대	543	음료대 유무	497	497	100	20.1%	-	-	-
	5437	음료대 분출구 높이	100	100	100	100.0%	51	51.0%	49.0%
	5438	음료대 조작기 형태	100	100	100	100.0%	90	90.0%	10.0%
	소계(5437~5438)		200	200	200	100.0%	141	70.5%	29.5%
점 형 블 록	5441	매표소 및 자판기 점형블록 설치여부	228	228	18	7.9%	-	-	-
	5451	매표소 및 자판기 점형블록 형태	18	18	18	100.0%	14	77.8%	22.2%
	5452	매표소 및 자판기 점형블록 설치위치	18	18	18	100.0%	14	77.8%	22.2%
	5453	매표소 및 자판기 점형블록 시공방법	18	18	18	100.0%	13	72.2%	27.8%
	소계(5451~5453)		54	54	54	100.0%	41	75.9%	24.1%
임 산 부 등 휴 게 시 설	551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유무	497	497	172	34.6%	-	-	-
	5531	기저귀교환대 활동공간 확보	497	497	117	23.5%	58	11.7%	11.9%
	5532	기저귀교환대 높이	497	497	117	23.5%	75	15.1%	8.5%
	5533	기저귀교환대 깊이	497	497	117	23.5%	53	10.7%	12.9%
	5541	세면대 활동공간 확보	497	497	59	11.9%	31	6.2%	5.6%
	5542	세면대 높이	497	497	59	11.9%	29	5.8%	6.0%
	5543	세면대 깊이	497	497	59	11.9%	11	2.2%	9.7%
	소계(5531~5543)		2,982	2,982	528	17.7%	257	8.6%	9.1%



(8) 비치용품과 인적서비스

- 휠체어(권장)
 - 휠체어를 비치한 시설은 64.6퍼센트(321개소)가 있음.
- 점자전시안내책자(권장)
 - 점자전시안내책자를 비치한 시설은 6퍼센트(30개소)가 있음.
- 전자기기
 - 전자기기는 의무 또는 권장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근 박물관 및 미술관 내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함. 조사결과 전자기기를 비치한 시설은 25.1퍼센트(124개소)로 점자전시안내책자보다 높게 나타남.
- 인적서비스
 - 인적서비스는 62퍼센트(308개소)가 제공하고 있음.
- 수어영상 서비스
 - 수어영상 서비스는 의무 또는 권장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설치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함. 수어 영상 서비스를 마련한 시설은 5퍼센트(25개소)로 점자전시안내책자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

〈표 IV-38〉 비치용품의 설치율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비치 용품	휠체어	497	497	321	64.6%
	점자전시안내책자	497	497	30	6.0%
	인적서비스	497	497	308	62.0%
	전자기기	497	497	124	24.9%
	수어 영상 서비스	497	497	25	5.0%
	합계	2,485	2,485	808	32.5%

3) 2015년 이후 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1)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 2015년을 기점으로 법적 기준을 적용한 조사대상시설의 수는 24개소이며, 편의시설 종류별(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V-39〉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과 적정설치율(2015년 이후)

구분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적정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465	465	441	92.4%	380	79.3%	13.1%
내부시설	806	806	722	89.9%	669	83.3%	6.6%
위생시설	552	552	493	90.0%	417	79.0%	11.0%
안내시설	48	48	28	58.3%	28	58.3%	0.0%
기타시설	144	144	51	35.4%	23	16.0%	19.4%
합계	2,015	2,015	1,735	73.2%	1,517	63.2%	10.0%

(1) 매개시설

① 주출입구 접근로

- 주출입구로의 접근로는 24개 대상시설 중 87.5퍼센트(21개소)에 있음.
- 접근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한 시설은 21개소 중 90.5퍼센트(19개소)임.

〈표 IV-40〉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적정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121	바닥마감 미끄럼 정도	21	21	21	100.0%	21	100.0%	0.0%
1122	바닥 틈과 평탄한 정도	21	21	21	100.0%	21	100.0%	0.0%
1123	뒹개틈새	21	21	21	100.0%	18	85.7%	14.3%
1131	통로 유효폭	21	21	21	100.0%	20	95.2%	4.8%
1132	기울기	21	21	21	100.0%	15	71.4%	28.6%
1141	보차분리	21	21	21	100.0%	16	76.2%	23.8%
1142	유효 높이	21	21	21	100.0%	21	100.0%	0.0%
1161	점자블록 형태	19	19	19	100.0%	17	89.5%	10.5%
1162	설치위치	19	19	19	100.0%	13	68.4%	31.6%
1163	시공방법	19	19	19	100.0%	18	94.7%	5.3%
합계		204	204	204	100.0%	180	88.1%	11.9%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조사대상시설 24개소 중 83.3퍼센트(20개소)가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3개소는 공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 1개소는 주차장 없음.
- 적정 면수 확보는 법적기준 이상으로 잘 설치되었으나 주차 후 주출입구 접근에 있어서 3개소는 보행자와 차량과의 간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입식 등의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2015년 이후 변경된 기재사항 변경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전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안전보행 통로의 유효폭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223	설치면수 적합	20	20	20	100.0%	20	100.0%	0.0%
1224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	20	20	20	100.0%	17	85.0%	15.0%
1225	주차면 크기	20	20	20	100.0%	13	65.0%	35.0%
1226	바닥마감 미끄럼 정도	20	20	20	100.0%	20	100.0%	0.0%
1227	기울기	20	20	20	100.0%	19	95.0%	5.0%
1231	안내표지 적정 여부	20	20	20	100.0%	15	75.0%	25.0%
1232	보행통로 유효폭	20	20	20	100.0%	12	60.0%	40.0%
1233	보행통로와 차도 분리	20	20	18	90.0%	17	85.0%	5.0%
합계		160	160	158	98.8%	133	83.1%	15.6%

③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한 시설은 33.3퍼센트(8개소)이며, 계단을 설치한 시설은 29.1퍼센트(7개소)로 조사됨.
- 계단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점형블록의 설치가 의무이며, 1개소를 제외한 85.7퍼센트(6개소)가 점형블록을 설치함.
- 단차 제거를 위해 설치한 경사로의 기울기가 적절한 비율은 62.5퍼센트로 나타남.

〈표 IV-4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1321	경사로 기울기	8	8	8	100.0%	5	62.5%	37.5%
1322	경사로 유효폭	8	8	8	100.0%	8	100.0%	0.0%
1323	휴식참 설치여부	8	8	6	75.0%	4	50.0%	25.0%
1324	바닥 마감	8	8	8	100.0%	7	87.5%	12.5%
1325	휴식참 활동공간	8	8	7	87.5%	7	87.5%	0.0%
1326	손잡이 연속설치	8	8	5	62.5%	4	50.0%	12.5%
1327	손잡이 높이	8	8	5	62.5%	5	62.5%	0.0%
1328	손잡이 굽기	8	8	5	62.5%	4	50.0%	12.5%
1329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8	8	4	50.0%	1	12.5%	37.5%
13210	손잡이 점자표지판	8	8	5	62.5%	5	62.5%	0.0%
1341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7	7	6	85.7%	6	85.7%	0.0%
1342	점형블록 설치위치	7	7	6	85.7%	5	71.4%	14.3%
1343	점형블록 시공방법	7	7	6	85.7%	6	85.7%	0.0%
합계		101	101	79	78.4%	67	66.8%	11.7%



(2) 내부시설

①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

- 주출입문의 단차 유무를 조사한 결과 24개소 모두 단차 없이 계획된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점형블록의 설치율은 79.2퍼센트(19개소)로 나타남.
- 일반출입문은 무단차가 21개소이나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 1.2미터를 확보하지 않은 시설이 18개소로 25퍼센트에 달하며, 점자표지판은 5개 시설로 20.8퍼센트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43〉 주출입문과 일반출입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주출입문	2111	주출입문 높이차이	24	24	24	100.0%	24	100.0%	0.0%
	2112	주출입문 유효폭 확보	24	24	24	100.0%	21	87.5%	12.5%
	2113	주출입문 유효거리	24	24	24	100.0%	24	100.0%	0.0%
	2114	주출입문 손잡이 높이	24	24	24	100.0%	22	91.7%	8.3%
	2115	주출입문 손잡이 형태	24	24	24	100.0%	24	100.0%	0.0%
	2116	주출입문 활동공간	24	24	24	100.0%	20	83.3%	16.7%
	2117	주출입문 형태	24	24	24	100.0%	24	100.0%	0.0%
	2131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4	24	19	79.2%	19	79.2%	0.0%
	2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24	24	19	79.2%	18	75.0%	4.2%
	2133	점형블록 시공방법	24	24	19	79.2%	18	75.0%	4.2%
	소계		240	240	225	93.8%	214	89.2%	4.6%
일반출입문	2141	일반출입문 높이차이	24	24	22	91.7%	22	91.7%	0.0%
	2142	출입문 유효폭 확보	24	24	18	75.0%	17	70.8%	4.2%
	2143	출입문 유효거리	24	24	19	79.2%	18	75.0%	4.2%
	2144	출입문 손잡이 설치	24	24	18	75.0%	17	70.8%	4.2%
	2145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24	24	5	20.8%	5	20.8%	0.0%
	2146	출입문 활동공간 확보	16	16	16	100.0%	14	87.5%	12.5%
	2147	출입문 손잡이	14	14	14	100.0%	14	100.0%	0.0%
	2148	출입문 형태	16	16	16	100.0%	16	100.0%	0.0%
소계		166	166	127	79.7%	123	77.1%	2.6%	

② 복도

- 복도 유효폭은 95.8퍼센트(23개소)가 적정하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든 시설이 단차 없이 계획함.
- 다만, 복도상부 유효높이의 확보는 79.2퍼센트(19개소)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44〉 복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211	복도 유효폭	24	24	24	100.0%	23	95.8%	4.2%
2212	복도 단차	24	24	24	100.0%	24	100.0%	0.0%
2213	복도상부 유효높이	24	24	24	100.0%	19	79.2%	20.8%
합계		72	72	72	100.0%	66	91.7%	8.3%

③ 수직 이동수단(계단 또는 승강설비)

- 24개소 중 7개소는 단층건물이거나 1층에만 전시설이 있는 시설이며, 17개소는 계단 또는 승강기, 계단 또는 리프트를 설치함.
- 승강기는 24개소 중 14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리프트는 3개소에 설치됨.

〈표 IV-45〉 수직 이동수단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계 단	2421	계단 유효폭	17	17	17	100.0%	17	100.0%	0.0%
	2422	계단 챠면 설치여부	17	17	17	100.0%	17	100.0%	0.0%
	2423	계단코 돌출여부	17	17	17	100.0%	17	100.0%	0.0%
	2424	손잡이 굽기	17	17	16	94.1%	14	82.4%	11.8%
	2425	손잡이 높이	17	17	16	94.1%	16	94.1%	0.0%
	2426	손잡이 연장설치	17	17	12	70.6%	9	52.9%	17.6%
	2428	손잡이 점자표지판	17	17	16	94.1%	16	94.1%	0.0%
	2429	손잡이 연속설치	17	17	16	94.1%	9	52.9%	41.2%
	2427	계단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17	17	15	88.2%	15	88.2%	0.0%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24210	점형블록 표준형 설치	17	17	15	88.2%	15	88.2%	0.0%	
24211	점형블록 시공방법	17	17	15	88.2%	15	88.2%	0.0%	
소계		187	187	172	92.0%	160	85.6%	6.4%	
승 강 기	2441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14	14	14	100.0%	13	92.9%	7.1%
	2442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	14	14	14	100.0%	14	100.0%	0.0%
	2444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14	14	14	100.0%	12	85.7%	14.3%
	2445	승강기 가로형 조작판 설치	14	14	14	100.0%	14	100.0%	0.0%
	2446	승강기 세로형 조작판 높이	14	14	14	100.0%	9	64.3%	35.7%
	2447	승강기 조작설비 버튼식	14	14	14	100.0%	14	100.0%	0.0%
	2448	승강기 조작설비 점자표지	14	14	14	100.0%	14	100.0%	0.0%
	2449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4	14	14	100.0%	14	100.0%	0.0%
	244101	점형블록 설치위치	14	14	14	100.0%	14	100.0%	0.0%
	244102	점형블록 시공방법	14	14	14	100.0%	13	92.9%	7.1%
	24411	승강기 외부 도착여부	14	14	14	100.0%	14	100.0%	0.0%
	24412	내부 운행상황 표시 설치	14	14	9	64.3%	9	64.3%	0.0%
	24413	내부 손잡이 굵기 간격	14	14	14	100.0%	13	92.9%	7.1%
	24414	승강장 바닥틈	14	14	14	100.0%	12	85.7%	14.3%
	24415	조도	14	14	14	100.0%	12	85.7%	14.3%
소계		210	210	205	97.6%	191	91.0%	6.7%	
합계		9	9	9	100.0%	9	100.0%	0.0%	

(3) 위생시설

① 일반사항

- 일반사항의 세부항목은 접근 통로폭 확보, 화장실 바닥 단차, 바닥마감, 출입문 유효폭, 점형블록 설치 등이 있음.
- 화장실 점형블록은 75퍼센트(18개소)가 설치하였으며, 1개소는 설치 위치가 잘못 된 것으로 나타남.

〈표 IV-46〉 위생시설의 일반사항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112	사용여부 설비	24	24	23	95.8%	19	79.2%	16.7%
3113	접근로 통로폭 확보	24	24	23	95.8%	22	91.7%	4.2%
3114	화장실 바닥 단차	24	24	24	100.0%	24	100.0%	0.0%
3115	바닥마감 미끄럼 정도	24	24	24	100.0%	24	100.0%	0.0%
3116	영유아용거치대	24	24	21	87.5%	19	79.2%	8.3%
3117	남녀구별 점자표지판	24	24	22	91.7%	21	87.5%	4.2%
3119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24	24	24	100.0%	18	75.0%	25.0%
3131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4	24	18	75.0%	18	75.0%	0.0%
3132	점형블록 설치위치	24	24	18	75.0%	16	66.7%	8.3%
3133	점형블록 시공방법	24	24	18	75.0%	17	70.8%	4.2%
합계		288	288	257	90.5%	198	82.5%	7.1%



② 대변기

- 장애인용대변기는 24개소 모두 남아 구별하여 설치하였으나, 화장실 바닥면 크기 및 휠체어 회전 활동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한 화장실은 41.7퍼센트와 58.3퍼센트로 각각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표 IV-47〉 대변기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3221	출입문 형태	24	24	23	95.8%	22	91.7%	4.2%
3222	통과 유효폭	24	24	23	95.8%	17	70.8%	25.0%
3225	바닥면 크기 확보	24	24	23	95.8%	10	41.7%	54.2%
3226	휠체어 회전 활동공간	24	24	14	58.3%	14	58.3%	0.0%
3231	대변기 형태 좌대 높이	24	24	24	100.0%	22	91.7%	8.3%
3232	수평손잡이 높이	24	24	24	100.0%	21	87.5%	12.5%
3233	수직손잡이	24	24	24	100.0%	23	95.8%	4.2%
3234	회전식손잡이	24	24	23	95.8%	23	95.8%	0.0%
3235	세정장치 형태	24	24	24	100.0%	18	75.0%	25.0%
3236	비상용벨 높이	24	24	16	66.7%	13	54.2%	12.5%
3237	비상용벨 작동여부	24	24	17	70.8%	12	50.0%	20.8%
합계		264	264	235	89.0%	195	73.9%	15.2%

(4)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24개소 중 54.2퍼센트(13개소),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는 62.5퍼센트(15개소)가 설치함.

〈표 IV-48〉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4211	시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24	24	13	54.2%	13	54.2%	0.0%
4212	청각장애인설비 연속적 설치	24	24	15	62.5%	15	62.5%	0.0%
합계		48	48	28	58.3%	28	58.3%	0.0%

(6) 기타시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24개소 중 54.2퍼센트(13개소)가 설치하였으며, 기저귀교환대는 10개소, 세면대는 7개소에서 설치함.

〈표 IV-4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현황(2015년 이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553	기저귀 교환대 설치유무	24	24	10	41.7%	-	-	-
5531	기저귀교환대 활동공간 확보	24	24	10	41.7%	7	29.2%	12.5%
5532	기저귀교환대 높이	24	24	10	41.7%	4	16.7%	25.0%
5533	기저귀교환대 깊이	24	24	10	41.7%	4	16.7%	25.0%
554	세면대 설치 유무	24	24	7	29.2%	-	-	-
5541	세면대 활동공간 확보	24	24	7	29.2%	5	20.8%	8.3%
5542	세면대 높이	24	24	7	29.2%	2	8.3%	20.8%
5543	세면대 깊이	24	24	7	29.2%	1	4.2%	25.0%
합계 (5531~5533),(5541~5543)		144	144	51	35.4%	23	16.0%	19.4%

4) 조사대상시설의 면적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건축물 연면적을 500제곱 미만, 500제곱 이상 2000제곱 이하, 2000제곱 초과로 구분하여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분석함.

(1) 500제곱 미만

- 매개시설의 설치율은 73.7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57.6퍼센트로 조사됨.
- 내부시설의 설치율은 91.8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11.6퍼센트로 조사됨.
-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68.3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23.9퍼센트로 조사됨.
- 안내시설의 세부항목은 경보 및 피난설비로 구성되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26.9퍼센트로 나타남.
- 기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2.7퍼센트와 1.8퍼센트로 나타남.



〈표 IV-50〉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500제곱 미만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매개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210	210	157	74.8%	121	57.6%	17.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24	224	195	95.2%	99	52.9%	42.2%
	높이 차이제거	299	299	153	51.2%	108	36.1%	15.1%
	소계	733	733	505	73.7%	328	48.9%	24.8%
내부 시설	주출입구 및 일반출입문	525	525	445	88.0%	387	74.5%	13.5%
	복도	111	111	111	100.0%	98	88.3%	11.7%
	계단 또는 승강설비	190	190	138	87.3%	94	59.2%	29.1%
	소계	826	826	694	91.8%	579	55.49%	18.1%
위생 시설	일반샤워	420	420	253	62.3%	162	42.1%	20.3%
	대변기	275	275	204	74.2%	128	46.5%	27.6%
	소계	695	695	457	68.3%	290	44.3%	23.9%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78	78	21	26.9%	21	26.9%	0.0%
	소계	78	78	21	26.9%	21	26.9%	0.0%
기타 시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111	111	3	2.7%	2	1.8%	0.9%
	소계	111	111	3	2.7%	2	1.8%	0.9%
합계		2,443	2,443	1,680	52.7%	1,220	35.5%	17.2%

〈표 IV-51〉 비치용품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500제곱 미만

구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수	설치율
비치용품	휠체어	37	37	8	21.6%
	점자전시안내책자	37	37	1	2.7%
	합계	74	74	9	12.2%

(2) 500제곱 초과 2000제곱 미만

- 매개시설의 설치율은 81.6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56.4퍼센트로 조사됨.
- 내부시설의 설치율은 89.3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11.6퍼센트로 조사됨.
-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75.4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20.7퍼센트로 조사됨.
- 안내시설의 세부항목은 경보 및 피난설비로 구성되며,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36.6퍼센트로 나타남.

- 기타시설의 세부항목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으로 구성되며, 설치율은 2.3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0.3퍼센트로 나타남.

〈표 IV-5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500제곱 이상 2000제곱 미만

구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적정설치율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설치수	적정설치율	
매개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1,410	1,410	1,212	86.0%	968	68.7%	17.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668	1,668	1,584	97.6%	845	56.9%	40.7%
	높이 차이제거	1,586	1,586	971	61.2%	691	43.6%	17.7%
	소계	4,664	4,664	3,767	81.6%	2,504	56.4%	25.2%
내부 시설	주출입구 및 일반출입문	2,844	2,844	2,421	85.0%	2,162	74.9%	10.0%
	복도	531	531	531	100.0%	502	94.5%	5.5%
	계단 또는 승강설비	2,688	2,688	2,257	82.9%	1,758	63.5%	19.4%
	소계	6,063	6,063	5,209	89.3%	4,422	77.66%	11.6%
위생 시설	일반샤워	2,196	2,196	1,560	72.2%	1,103	54.8%	17.4%
	대변기	1,771	1,771	1,392	78.6%	966	54.5%	24.1%
	소계	3,967	3,967	2,952	75.4%	2,069	54.7%	20.7%
안내 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16	16	10	62.5%	10	62.5%	0.0%
	소계	16	16	10	62.5%	10	62.5%	0.0%
기타 시설	임산부등휴게시설	48	48	24	50.0%	3	6.3%	43.8%
	소계	48	48	24	50.0%	3	6.3%	43.8%
합계		14,758	14,758	11,962	71.8%	9,008	45.1%	20.3%

(3) 2000제곱 이상: 208개소

- 매개시설의 설치율은 85.0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63.8퍼센트로 조사됨.
- 내부시설의 설치율은 90.0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80.9퍼센트로 조사됨.
-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87.8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68.8퍼센트로 조사됨.
- 안내시설은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율로 평가되며, 설치율은 42.5퍼센트로 조사됨.
- 기타시설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로 평가되며, 설치율은 3.6퍼센트이며, 적정설치율은 1.6퍼센트로 조사됨.



〈표 IV-53〉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 : 2000제곱 이상

구분	항목	대상 건물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와 설치율		적정설치수와 설치율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의 차이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수	적정 설치율	
매개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1,890	1,890	1,731	91.6%	1,452	76.8%	14.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101	2,101	2,043	98.9%	1,190	62.9%	36.0%
	높이 차이제거	1,387	1,387	894	64.6%	717	51.8%	12.8%
	소계	5,378	5,378	4,668	85.0%	3,359	63.8%	21.2%
내부 시설	주출입구 및 일반출입문	3,551	3,551	2,997	83.1%	2,798	77.5%	5.7%
	복도	624	624	624	100.0%	580	92.9%	7.1%
	계단 또는 승강설비	4,782	4,782	4,225	86.9%	3,548	72.2%	14.7%
	소계	8,957	8,957	7,846	90.01	6,926	80.9	9.14
위생 시설	일반사항	2,298	2,298	2,017	89.9%	1,502	72.9%	17.1%
	대변기	2,156	2,156	1,735	80.5%	1,282	59.5%	21.0%
	소계	4,274	4,274	3,752	87.8%	2,784	68.8%	19.0%
합계		20,263	20,263	16,486	87.6%	13,264	71.2%	16.4%

4. 개선 방향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등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향상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장애인편의시설의 확대를 위한 시설개선 방향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제시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매개시설

- 보행로와 차로의 명확한 분리로 안전한 접근로 형성
 -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로의 이동 경로인 접근로의 '보차분리'를 위한 정비.
 - 대지경계로부터 접근로에 점자블록의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부터의 접근로에 단차 및 장애물 제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시
 - 단기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안내표시 및 입식 안내표지의 올바른 설치를 위한 개선을 추진 가능함.
 -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근접한 위치 등 위치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즉, 전술한 바와 같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은 공용주차장으로부터의 접근환경을 개선하거나 개별건축물별로 최소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내부시설

- 제품의 설치 및 정합성 향상
 - 출입문의 전·후면에 출입구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이때 중요한 사항은 표준형 점형블록을 설치하는 것임. 제품과 기준의 정합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품 선택만으로도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음.
 - 출입문 측면에 실명을 기입한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표기는 실명을 기입하며, 잘못된 표기 및 부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계단 및 경사로 손잡이의 점자표지판 설치.
 - 점자블록, 안내표시, 점자표기 등은 다른 항목보다 기존시설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용이 유리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함.
- 복도
 - 복도와 전시공간 관람로의 보행 장애물 제거.
 - 장애인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단차제거 및 경사로 설치. 경사로는 구조상 적정 기울기를 어려운 경우 리프트 등의 설치를 고려 가능함.



○ 승강기 설치

- 수직이동을 위한 장애인들의 이용 가능한 승강기 설치. 손잡이 설치, 점자표지판, 토글 방식의 운영 등 승강기의 구조 관련된 사항과 승강기 도입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필요여부에 따라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위생시설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 및 내구 구조변경

- 화장실 내 유효면적 기준을 확보하였으나 위생도기 및 손잡이 설치 오류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올바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 또는 화장실 내 유효면적을 면적 확보하지 못한 경우 면적 확대를 위한 대수선이 요구될 수 있음.

○ 일반화장실

- 일반 화장실 전면 표준형 접형블록의 설치.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소변기 설치.

(4)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설비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는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낮게 나타나 교육 강화를 통해 기준에 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함.

(5) 비치용품

- 휠체어 및 전시 내용을 알 수 있는 점자전시안내책자 비치.

(6) 기타시설 및 인적서비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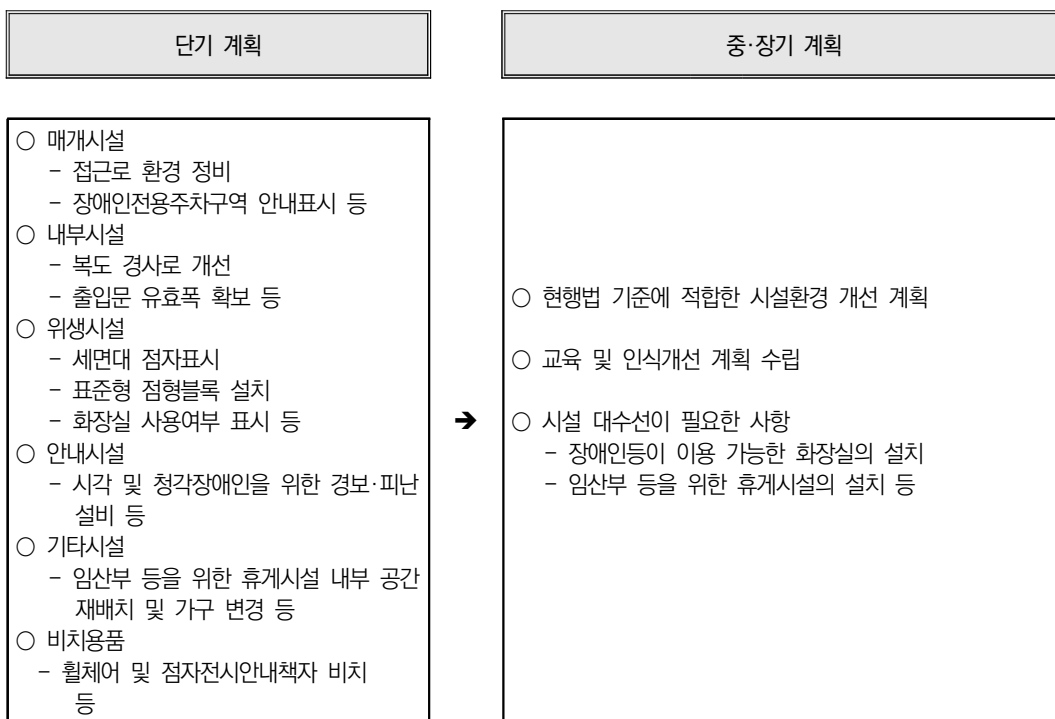
- 장애인등편의법 의무대상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141개소(36.1퍼센트) 조사되어 향후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신설은 기존 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과 시설 증축 및 개축 등의 경우 설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음.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통과 유효폭 및 가구 등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내부 유효면적이 확보된 경우 공간 재배치 및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가구로의 교체가 필요함.

○ 인적서비스

-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조사대상시설의 수평 및 수직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외에도 인적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전체 조사대상시설의 경우 접근로의 기울기가 8분의 1이하인 시설이 전체 대상지는 72.3퍼센트로 나타나 휠체어 이용자의 독립적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사로 시작부분에 호출벨 등을 설치하여 인적서비스가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전시 관람을 위한 안내 및 이동편의를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

○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장기 개선 방향은 현행법 기준에 맞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도모하는 것임.

- 공간규모의 확보의 측면에서 위생시설이 미설치 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건축물 대수선을 통해 위생시설 마련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그림 IV-33] 단계별 개선방안



V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안 및 추정사업비 산정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일정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층조사 대상시설은 5개 권역 10개소를 선정함. 조사일정은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함. 조사대상 선정은 권역별로 2개소 씩 중 현재 공사 중이거나 리모델링 중인 박물관, 미술관 시설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함.

〈표 V-1〉 권역별 조사 대상기관 현황


방문날짜	권역	지역	방문기관
10-28 (금)	전라권	목포 목포	A 박물관 B 박물관
10-31 (월)	강원권	춘천 춘천	C 박물관 D 박물관
11-01 (화)	충청권	공주 부여	E 박물관 F 박물관
11-02 (수)	수도권	서울 부천	G 박물관 H 박물관
11-03 (목)	경상권	부산 김해	I 박물관 J 박물관

2) 조사대상시설 현황 및 개선 방향

조사대상시설은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총 17개 대분류 항목과 43개 소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개선 방향은 장애인등편의법 현행 기준에 준한 설치 방안을 제시함. 각 시설의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1) A 박물관

〈표 V-2〉 A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A 박물관		
개관년도	2006		
연면적	595㎡	전시실 면적	595㎡
주차대수	21대		
건축물 전경			

A 박물관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으로 연면적은 595제곱미터임. 주요 소장 자료는 지류, 민속품 등을 전시함.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3〉 A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접근로	재질과 마감 (바닥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블록 및 경계석 설치 20m(w=1.5) - 주출입구 접근이 불가능하여 부출입구 연계가 필요함. 따라서 이에 대한 보행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현재 보도블록, 차량 그레이팅 설치)
	보행장애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부출입구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이설 1개소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설치	기울기		- 부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1개소(문폭 0.75m)
주출입문	기타설비	점형블록		- 주출입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1개소
내부 출입문	점자표지판			- 내부출입문 자동문 설치
복도	손잡이			- 복도 경사로 설치 1개소 - 경사로 양측 손잡이 설치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 계단 양측 손잡이 설치 - 점형블록 설치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승강기	장애인승강기 설치			- 장애인용승강기 외부설치
화장실	일반사향	접근통로		- 레이아웃 변경 면적(4.4m × 3.8m) - 남·여 : 2.2m × 3.8m 각 1개소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 시각경보기 미설치
	비상경보등			

(2) B 박물관

〈표 V-4〉 B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B 박물관		
개관년도	2004		
연면적	9,117㎡	전시실 면적	4,470㎡
주차대수	60대		
건축물 전경			

B 박물관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으로 연면적 9,117제곱미터임. 주요 소장 자료는 지질, 광물, 예술품을 전시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5〉 B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 설치		- 접근로 선형블록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동을 위한 보행안전 통로 설치
주출입문	기타설비	점자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문 점자블록 교체 - 벽부형 촉지도 안내판



항목		현황	개선 방향
	기타설비	점형블록	
내부 출입문		점자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복도	손잡이	점자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 양측 손잡이 설치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 손잡이 설치 - 점형블록 설치 - 계단 하부 보행장애물 보호난간 설치
	점형블록		
화장실	대변기	출입문 사용여부 설비와 잠금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1.3m×1.6m (그대로 존치)
		유효 바닥면적	
		대변기 구조	
		손잡이	
		세정장치	
	비상용 벨		
세면대 (권장)	구조	점자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화장실 세면대는 성인용 / 유아용 위치변경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경보기 설치필요 - 음성 피난구 유도등 설치필요
	비상경보등		

항목		현황	개선 방향
경보·피난 설비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휴게시설 수유커튼 설치 1개소 - 임산부휴게시설 세면대 설치 1개소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3) C 박물관

〈표 V-6〉 C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C 박물관		
개관년도	2002		
연면적	4,306㎡	전시실면적	1,258㎡
주차대수	130대		
건축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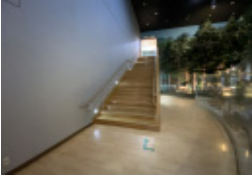




박물관은 강원도 춘천시 공립박물관으로 연면적 14,993제곱미터임. 주요 소장 자료는 동식물 박제, 표본, 산림관련 문헌자료 등을 전시함.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7〉 C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접근로	경계 (보차분리)		- 경차 주차구역을 설치한 곳은 접근로에 해당하므로 경차 주차구역 삭제
	바닥마감 (덮개)		- 접근로 상 설치된 배수로 덮개는 격자구멍 간격이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 설치		- 화목원 정문(자바라 대문)에서부터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로에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행안전통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화목원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는 차도와 교차하는 구조이므로 바닥의 색상을 다르게 하여 보행 안전통로 표시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설치	기울기	- 본관 주출입구 높이차이(약 45cm) 제거를 위해 설치된 경사로 2개 중 1개소 12분의 1 이하 경사로로 재설치
		손잡이	- 손잡이 재설치 및 점자표지판 설치
	계단	점형블록	- 주출입구 전면 계단에 점형블록 설치
		손잡이	- 주출입구 전면 계단에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주출입문	기타설비	점형블록	- 주출입구 출입문 3개소 중 우측 외여닫이문 0.3m 전면에 출입구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현재 방풍실 내 1열만 설치된)
부출입문	기타설비	점형블록	- 부출입구(공연장) 0.3m 전면에 출입구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내부 출입문	단차		- 1층 스마트 가든과 복도의 바닥 높이차이 0.1m 발생부위에 경사로 설치
	점자표지판		- 전시실 출입구,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출입문 등에 점자표지판 설치
승강기	점형블록		- 승강기 출입구 전면 점형블록은 제거하고 우측 조작반 하부에 2장 설치
계단	점형블록		- 지하1층에서 지상1층 연결 계단(중앙홀 오픈 계단)에 점형블록 설치 - 지상1층에서 지상2층 연결 계단에 점형블록 설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지하1층에서 지상1층 연결 계단(중앙홀 오픈계단)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 어린이 이용객이 많아 손잡이 2단 설치(기존 손잡이는 어린이용으로만 설치됨)



항목		현황	개선 방향
계단 (관람 동선)	재질과 마감 (점형블록)		- 전시실 내 계단 시작과 끝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점자 표지판		- 전시실 내 계단 양측에 점자표지판 설치
계단 (상영관 통로)	재질과 마감 (점형블록)		- 계단을 통해 도달한 지하1층 바닥과 상영관 바닥 높이차이로 인해 설치된 계단 2개소 중 1개소에 대해 손잡이 및 점형블록 설치 * 휠체어 이용자는 승강기를 통해 상영관 접근 가능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화장실	일반사항	점형블록	 - 1층 화장실 출입구, 내부통로에 설치한 pvc 점형블록은 제거하고 화장실 안내표지판 하단에 매립형으로 재설치 - 2층 화장실 출입구 전면 점형블록은 제거하고 일반화장실 벽면 안내표지판 하단에 점형블록 2장 설치
		점자표지 판	 - 1층 및 2층 화장실 안내표지판에 점자 안내 설치(높이 1.5m)
	대변기	비상용벨	- 대변기 가까운 곳 바닥면으로부터 0.6m 와 0.9m, 바닥면으로부터 0.2m에 설치
	(권장) 세면대	점자표시	 - 1층, 2층 남자 및 여자 화장실 내 세면대 냉·온수 점자표지판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권장)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 주출입구 출입문 3개소 중 중앙 자동문과 우측 외여닫이문 사이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및 전면 0.3m 바닥에 점형블록 설치
	(권장)기타 유도신호장치		- 박물관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 피난층(1층) 출입구와 각종 피난계단 출입구 주변에는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등 설치 (지상 층의 오픈된 직통계단은 별도 출입구 없음으로 비해당)
	비상경보등		-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권장)매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표소는 외부에 개별 건물로 설치되고, 휠체어가 이용 가능한 구조로 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의 대안으로 인적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호출벨을 설치함 - 박물관 내 안내데스크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구조로 추가 설치
	수유장소		- 내부 가구 배치를 변경하여 1.4m × 1.4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기저귀교환대	- 기저귀 교환대 상단높이 0.85m 이하, 하부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		
세면대	- 세면대 설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4) D 박물관

〈표 V-8〉 D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D 박물관		
개관년도	2022		
연면적	14,893㎡	전시실 면적	2,184㎡
주차대수	150대		
건축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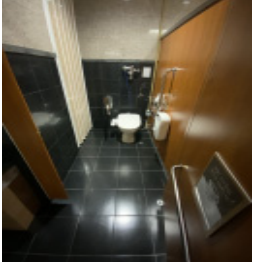
D 박물관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으로 연면적 14,893제곱미터임. 주요 소장 자료는 강원도의 선사시대부터 근세까지 다양한 도기류, 그림 및 불상 등을 전시함.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9〉 D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접근로	재질과 마감 (바닥표면)	- 고원식 횡단보도 1개소 철거 후 재설치(평탄한 바닥마감, 횡단보도 전면 0.3m에 점형블록 설치)
	보행장애물	- 본관 접근로로 이용되는 어린이박물관 외부 계단에는 계단 상부 2.1m 유효 높이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 접근방지 난간 설치
접근로 (외부계단)	재질과 마감 (점형블록)	- 본관 접근로로 이용되는 어린이박물관 외부 계단에는 계단의 시작과 끝 0.3m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본관 접근로로 이용되는 어린이박물관 외부 계단에는 계단 양측에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 설치		- 본관 접근로는 어린이박물관 내부 승강기 (1→3층)를 이용해야하는 구조로서 어린이 박물관 3층 부출입구에서 본관 1층 주출입구까지 외부 접근로에 점자블록 연속하여 설치(현재 대지경계에서 어린이박물관 1층 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은 설치되어 있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 본관 측 주차장 이용자들이 본관 출입구로 가는 접근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박물관 2층 부출입구를 통해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로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설치	기울기 	- 본관 주출입구 높이차이(약 14cm)는 12분의 1 이하 경사로로 재설치
			- 본관 주출입구 높이차이 부분에 경사로 설치가 아닌 접근로를 기울기를 18분의 1 이하로 조정하여 설치
주출입문	기타설비	점형블록 	- 주출입구 0.3m 전면에 출입구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기타설비	(부출입문) 점형블록 	- 부출입구(공연장) 0.3m 전면에 출입구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내부출입문	점자표지판		- 전시실 출입구,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출입문 등에 점자표지판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복도	손잡이		- 공연장 양측 복도에 설치된 경사로에는 양측 손잡이 설치	
	점자표지판		- 1층과 중층(카페)으로 연결되는 경사로 손잡이 양끝부분에 점자표지판 설치	
계단	손잡이		- 중앙홀 계단 2개소 양측 손잡이 재설치	
	점자표지판		- 중앙홀 계단 2개소 손잡이 교체에 따라 양 끝부분(시작과 도착 층)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재설치	
	점형블록		- 중앙홀 계단 2개소 시작과 끝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화장실	일반사항	접근통로		- 남자화장실 내 장애인용대변기 접근통로는 소변기 1개소 제거하여 1.2m 이상 확보
		점자 표지판		- 화장실 점자표지판 높이 1.5m에 재시공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		- 1층 및 2층 남자 및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용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을 폭 1.6m × 깊이 2.0m 이상(부득이한 경우 1.4m × 1.8m 이상)으로 재설치(일반대변기 남녀 각 1개소 제거 요망)
		대변기구조		- 대변기 등받이 설치
		손잡이		- 손잡이 설치 높이 재시공
세정장치		-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세정장치 설치		
비상용벨	- 대변기 가까운 곳 바닥면으로부터 0.6m와 0.9m, 바닥면으로부터 0.2m에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권장) 세면대 점자표시		- 1층, 2층 남자 및 여자 화장실 내 세면대 냉·온수 점자표시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권장)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 어린이박물관 주출입구에 설치된 촉지도식 안내판 전면 0.3m 바닥에 점형블록 설치 - 본관 주출입구 방풍실 내 설치된 촉지도식 안내판 전면 0.3m 바닥에 점형블록 설치
	(권장) 기타 유도신호장치	-	- 본관 접근로는 어린이박물관 내부 승강기 (1→ 3층)를 이용해야하는 구조로서 어린이 박물관 주출입구에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를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	- 본관 1층(피난층) 출입구 상단에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등 설치(계단은 오픈된 직통계단으로 2층 계단 별도 출입구 없음으로 비해당)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장소	-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내 레이아웃 변경하여 1.4m×1.4m 이상의 휠체어 활동공간 확보
	기저귀교환대	-	- 기저귀 교환대 상단높이 0.85m 이하, 하부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
	세면대	-	- 1층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내 세면대 설치
무대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휠체어리프트	-	- 무대 높이차이(1m)는 계단 겸용 리프트 설치하여 제거



(5) E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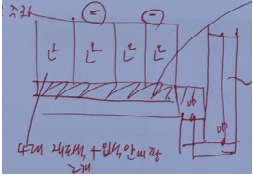





〈표 V-10〉 E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E 박물관		
개관년도	1946		
연면적	18,228㎡	전시실 면적	2,165㎡
주차대수	119대		
건축물 전경			

E 박물관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으로 건축물 연면적은 18,228제곱미터임. 주요 소장 자료는 토도, 금속, 도자기 등을 전시하였음.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11〉 E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접근로	재질과 마감 (바닥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로 경사로 양측 손잡이 설치 - 접근로 첫 경사로 상단에 점형블록 제거 - 주출입구 앞 트렌치 덮개 2cm 이하 설치
	보행 장애물		
접근로 (외부계단)	재질과 마감 (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로 첫 계단 상·하단에 점형블록 1줄 제거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전면 중간에 설치된 점형블록 제거 - 주출입구로 전면까지 유도블록 연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접근 경사로 양측 손잡이 설치 - 주차장 3개소 재도색 - 입식안내판 2개소 설치 - 주차장 전면 보행안전통로 표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설치	기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전면 계단 미설치된 점형블록 추가 설치 - 주출입구 전면 계단 양측 손잡이 설치
주출입문	기타설비	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블록과 연결된 출입구의 내부 출입문에 설치된 점형블록 외 통행이 되지 않는 곳 점형블록 삭제
승강기	장애인승강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외부 조작버튼 전면 점형블록 설치
화장실	일반사향	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화장실 출입구 측면에 점형블록 설치
		점자표지판		
	대변기	출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닫이문 설치 및 막대형 잠금장치 +사용여부설비 설치
		유효 바닥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2.0m × 1.5m 크기로 큐비클 설치
		대변기구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거치대 설치 - 유아변기 삭제, 대변기 위치 변경 및 조작벽 쌓기, 등받이 설치
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기 좌우손잡이 설치 			
세정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감지식 세정장치 설치 - 비상벨 상, 하단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비상용 벨		
(권장) 세면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밖에 있는 일반화장실 세면대 거울 추가 설치 - 여자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세면대 양측 손잡이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권장)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조칙조식 안내판 전면 점형블록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내측 음성점멸피난구유도등 설치 - 남녀화장실 시각경보기 설치
	비상경보등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권장)매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데스크 소규모 설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유커튼 설치 - 세면대 설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6) F 박물관

〈표 V-12〉 F 박물관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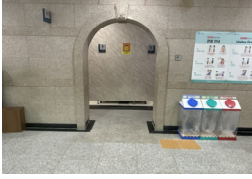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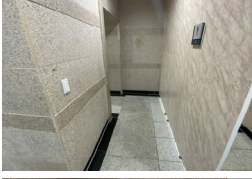


시설명	F 박물관		
개관년도	1945		
연면적	14,483㎡	전시실 면적	2,333㎡
주차대수	111대		
건축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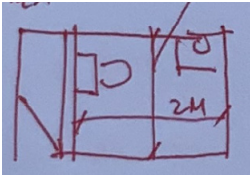



박물관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으로 건축물 연면적은 14,483제곱미터임. 주요 소장 자료는 금속, 도로 등을 전시하였음.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13〉 F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접근로	재질과 마감 (바닥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3미터 기준 1/12 이하 경사로 설치 (1/8 경사) - 경사로 양측 손잡이 설치+점자표지판 설치
	보행장애물		
접근로 (외부계단)	재질과 마감(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계단 2곳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상·하단에 설치 - 외부 원형 계단 1곳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상·하단에 설치 - 계단 손잡이 양측 설치+점자표지판 설치 - 외부 원형 계단 손잡이 양측 설치+점자표지판 설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개소 부분도색 (4.7m×3.3m로 표기되어 있음) - 입식안내판은 주차 2대당 1개소 이상 설치(문구 등 기준에 맞게)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설치	기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전면 꺾임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상·하단에 추가 설치 - 주출입구 경사로 1/12 이하로 설치(높이 0.3m)
주출입문	기타설비	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방풍실 내부 출입문 점형블록 5장 설치
내부 출입문	점자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실 4개소, 문화상품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실명점자안내판 설치 	
복도	손잡이			
	점자표지판			
화장실	일반사향	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화장실(남, 여) 점형블록 설치 - 추가 화장실 내부에 점형블록 설치
		점자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통로 통합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점자 표지판 설치 - 추가 화장실 복도 점형블록 상부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대변기	출입문 유효 바닥면적 대변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닫이문 설치 및 막대형 잠금장치+사용여부설비 설치 - 남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2.0m×1.4m 크기로 큐비클 설치 - 영유아 거치대 설치 - 대변기 위치 변경 및 조적벽 쌓기, 등받이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손잡이		설치 - 대변기 좌우손잡이 설치 - 광감지식 세정장치 설치 - 비상벨 하단 추가설치
	세정장치		
	비상용벨		
소변기 (권장)	손잡이		
세면대 (권장)	구조		- 전면거울 설치 - 양측 상하회전형 손잡이 설치 - 냉·온수점자 표시
	점자표시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권장)점자안내판/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권장)		- 촉지도식 안내판 상부에 음성안내장치 설치
	(권장)기타 유도신호장치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 주출입구 내측 음성점멸피난구유도등 설치
	비상경보등		- 남녀화장실 시각경보기 설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장소		- 수유커튼 설치 - 세면대 설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7) G 박물관

〈표 V-14〉 G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G 박물관		
개관년도	2014		
연면적	3,987㎡	전시실 면적	1,170㎡
주차대수	-		
건축물 전경			

○ G 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으로 건축물 연면적은 3,987제곱미터 임. 주요 소장 자료는 가구, 의상, 서지 등을 전시함.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15〉 G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 설치		- 덕수궁 내 설치된 박물관으로, 접근로의 문화재 현상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도블록이 아닌 안내(촉지도식안내판, 음성유도장치)로 대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계단		- 1층(지층)-2층(전시관) 전면 계단 내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일부 구간에 점형블록 설치 ※ 계단 상부 기둥으로 인하여 전체 설치 불가함. 동선 분리하여 유도.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 1.7m 내 점형블록 설치
	손잡이		- 1층(지층)-2층(전시관) 전면 계단 내 기둥과 바닥재 색상이 비슷하여 충돌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점형블록에 맞춰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손잡이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승강기	전층 운행		-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나 3층 전시판은 운행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 전층 운행 가능하도록 변경
	안내		- 승강기가 후면에 있으나 안내표시가 없어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움. 주출입구 전면에 승강기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
주출입문	단차		- 2층 특별전시 출입구(외부-신발장) 내 단차 0.1m 에 대한 경사로 연장 설치
			- 2층 특별전시 출입구(신발장-내부 관람로) 내 단차 0.6m에 대한 경사로 설치
복도	유효폭		- 특별전시 통과폭 일부 구간 0.67m(문틀 0.7m)으로 0.9m 이상 확대
	기울기		- 상설전시 내 바닥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경사도가 1/7(9.5도)로 경사로 연장 설치 또는 교체
계단	손잡이		- 상설전시 내 계단 손잡이 부재(난간은 설치됨)로 측면 손잡이 설치
화장실	일반사향	점자안내판	- 일반화장실 출입구 내 소규모 촉지안내판 설치
		점형블록	- 촉지안내판 설치 후 바닥면 점형블록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접근통로		- 접근 통로 유효폭 0.64m로 확대 필요
소변기	손잡이		- 소변기 1대 손잡이 설치 필요
세면대	점자표시		- 남자 및 여자 화장실 내 세면대 냉·온수 점자표시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현재 덕수궁 내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검용해서 사용하고 있음 - 석조전 1층 일반화장실 전체 칸을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변경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촉지도식 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 1층 상설전시 출입구 벽면에 음성유도기 설치 필요 / (지층 계단 전면에서 시각장애인 리모콘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등		- 상설전시 출입구 상단에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설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장소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8) H 박물관

〈표 V-16〉 H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H 건축물		
개관년도	2004		
연면적	2,620㎡	전시실 면적	771㎡
주차대수	182대		
건축물 전경			

H 박물관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으로 연면적은 2,620제곱미터임. 주요 소장 자료는 화석, 곤충(표본), 생물(파충류, 절지류, 양서류) 등을 전시함.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17〉 H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설치		- 공원 내 식물원을 거쳐 박물관에 진입해야 하므로 유도블록 설치 대신 보행통로 출입구 내 촉지도식안내판으로 대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통로		- 보행통로 확보를 위하여 기존 일반 2대 주차장 마킹 제거
	안내표시		- 주차선에 표시되는 안내표시 및 보행통로 표시가 없어 전체 재도색 및 입식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계단		-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손잡이



항목		현황	개선 방향
	경사로	기울기	- 현재 1/10을 1/120이하로 연장 설치 필요
		바닥마감	- 화강석, 잔다듬 교체
		손잡이	- 양측 설치 및 점자표지판 설치
주출입문	점형블록		- 입구와 출구의 동선이 분리되어, 점형블록 설치 필요
계단	점형블록		- 점형블록 설치 필요
	손잡이	점자표지	- 점자표지 설치 필요
승강기			- 현재 내부 계단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계단 전면)에 승강기 설치 필요
화장실	일반사항	점자 안내판	- 일반화장실 출입구 통로 내 점자표지판 설치 필요
		점형블록	- 점자표지판 설치 후 바닥면 점형블록 설치 필요
	장애인 화장실	크기	- 사이즈 1.1m×2.1m - 현재 승강기가 없으므로 1층 화장실 전체를 확장하여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변경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촉지도식안내판		- 박물관 진입을 위해서는 식물원을 거쳐야 하므로 유도블록 설치 대신 보행통로 출입구 내 촉지도식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주출입구)로 대체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등		- 주출입문 출구 상단에 음성점멸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설치
	화재경보기 (시각경보기)		- 화장실 내 시각경보기 설치 필요

항목		현황	개선 방향
대표소 판매기 음료대	안내데스크		- 1층 안내데스크 옆 상단 높이가 낮은 의자 또는 테이블 설치 필요
	수유장소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내 쿠션 배치를 조정하여 활동공간 및 가림커튼 설치 필요
기저귀교환대	- 기저귀 교환대 상단높이 0.85m 이하, 하부높이 0.65m 이상으로 설치		
세면대	- 1층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내 세면대 설치		



(9) | 박물관

〈표 V-18〉 |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I 박물관		
개관년도	2003		
연면적	2,280㎡	전시실 면적	758㎡
주차대수	2대		
건축물 전경			

I 박물관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공립박물관으로 연면적 2,280제곱미터임. 주요 소장 자료는 지료, 민속품 등을 전시함.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19〉 |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접근로	재질과 마감 (바닥표면)		- 부출입구 보행구간 정비 필요 / 보행구간 거리 10m
	보행장애물		
접근로 (외부계단)	재질과 마감(점형블록)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출입구 전면 공지에 최소 1면 설치 필요 - 그 외 주차구역에 필요한 항목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설치	기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경사로 재설치 필요 단차구간 전체 경사로 설치 폭 2.4m, 길이 1.5m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주출입문	기타설비	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측 주출입문 유효폭 미확보에 따라 유효폭 0.9m 이상 확보된 출입문 재설치 필요/ 3연동 자동문 또는 포켓형태 자동문 등 - 점형블록 출입문 전후면 3장씩(총 6장) 설치 필요
	기타설비	점형블록		
내부 출입문	점자표지판			
복도	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우측 계단실 출입문 전면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계단을 홀쪽으로 설치 - 수평공간 3.5m×3.5m 강화마루설치 +계단 2단 설치 - 점형블록 6장 2곳 설치, 양측 손잡이 설치 및 점자표지판 설치 필요
	점자표지판			
계단	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에서 2층 연계 흘계단 점형블록 추가 필요(기존 12장에 2장×2곳 총 4장 추가) 및 양측 점자표지판 4개 설치 필요 - 2층 중층 계단 점형블록 추가 필요 (기존 10장에 2장×2곳 총4장 추가) 및 양측 점자표지판 4개 설치 필요 - 화장실쪽 계단 1층부터 3층까지 점형블록 설치 필요 1층→2층 4장씩 6곳 / 2층→3층 4장씩 4곳 / 양측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필요 - 라이브리리 공간 우측 계단 1층부터 3층까지 점형블록 설치 필요 1층→2층 4장씩 4곳 / 2층→3층 4장씩 4곳 / 양측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설치 필요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승강기	장애인승강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개층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2장 점형블록 설치 필요 / 총6장
화장실	일반사항	접근통로		



항목		현황	개선 방향
대변기	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점형블록 날개벽쪽으로 2장 설치 / 기존 3개 철거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진입시에 세면대 거울보이고,대변기 장방향으로 재설치 * 장애인큐비클 출입문 날개벽 미확보로 인한 철거 후 슬라이딩(사용여부 +잠금장치)설치 필요 * 세면대 손잡이는 상·하회전형 설치 - 여자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문 점형블록 날개벽쪽으로 2장 설치 / 기존 3개 철거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내 측면 접근 및 활동공간 미확보로 인해 기존 설비 철거 후 재설치 필요 *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전면공간까지 큐비클 연계설치 * 내부 설비 재설치 필요 / 세면대 손잡이는 상하회전형으로 설치 - 그 외 화장실 신설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비상벨 및 수신장치 등을 1층 2개소 설치가 필요함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출입문 형태/ 사용여부 설비/ 잠금장치		
	유효 바닥면적		
	대변기 구조		
	손잡이		
	세정장치		
	비상용벨		
	소변기 (권장)	손잡이	
세면대 (권장)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화장실 내 일반세면대의 경우 최소 각 1개씩은 하부공간이 확보된 세면대 설치가 필요함. - 각층별 세면대 1개소씩 철거 후 재설치 / 1층 3개소, 2층 2개소 총 5개 	
	점자표시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비상경보등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권장)매표소		
	(권장)판매기		
	(권장)음료대		
임산부	수유장소		- 임산부휴게시설에 대한 설치가 필요함

항목		현황	개선 방향
등을 위한 휴게시설	기저귀교환대		- 가로 세로 각각 4.0m 유효폭이 확보된 공간 확보 필요 / 세면대1개소 설치, 별도 수유공간(커튼가능) 1개소 설치, 기저귀교환대 1개소 이상
	세면대		
비치용품	(권장용품)휠체어		
	(권장용품)접자전시안내 책자		
무대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10) J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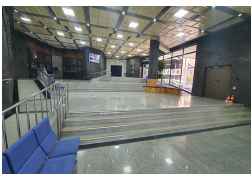
〈표 V-20〉 J 박물관 건축물 현황

시설명	J 박물관		
개관년도	1998		
연면적	16,783㎡	전시실 면적	3,623㎡
주차대수	166대		
건축물 전경			








J 박물관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으로 연면적 16,783㎡임. 주요 소장 자료는 금속, 토도, 석 등을 전시함.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음.

〈표 V-21〉 J 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향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접근로	재질과 마감 (바닥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문 좌측 경사로의 경우 양측면 손잡이 설치 - 보행로상 설치된 배수구 덮개 보완 / 경사로 위 아래쪽 각각 1개, 주출입문 우측 계단 시작지점 1개, 총 3개소 - 전시장 출구 회랑쪽 배수로 공자갈 설치로 시인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 주출입문 우측 경사로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따라서 조경공간으로 재구성
	보행장애물		
접근로 (외부계단)	재질과 마감(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연계 계단 점형블록 설치 - 전시장 출구와 연계된 주출입문 우측 계단 벽면쪽으로 손잡이 설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안전통로 확보 - 입식안내판 교체 및 유도 표지판 설치
	 		
주출입문	기타설비	점형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구쪽 출입문 점형블록 추가설치 필요 - 입구쪽 출입문 방풍실 내부 축지도식안내판 외부로 이동배치 후 점형블록 설치 필요
내부 출입문	점자표지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필요
복도	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 시작지점 점형블록 제거 필요
	점자표지판		
계단	손잡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양측면 손잡이 설치 필요 / 경사로쪽 계단 기준 - 점형블록 미설치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승강기	장애인승강기 설치		



항목		현황	개선 방향	
화장실	일반사항	접근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화장실 내측 장애인사용가능화장실 설치 필요 - 화장실 입구 장애인사용가능화장실은 여자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로 안내표지판 변경 필요
		출입구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대변기	출입문 형태 /사용여부 설비 및 잠금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화장실 내 창호쪽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산설, 소변기 일부 철거 후 추가적인 기타 설비 적용 필요 / 일반사항 참조 - 기존 남녀공용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내 세면대 양측면 손잡이 미설치, 하부공간 미확보, 비상벨 미설치, 내부 활동공간 미확보 등
		유효바닥면적		
		대변기 구조		
		손잡이		
		세정장치		
		비상용벨		
(권장)소변기	손잡이			
(권장)세면대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대 수전 점자표시 설치 필요 	
	점자표시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2층 소화전과 연계하여 시각경보기 설치 필요 	
	비상경보등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권장)매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사용자 이용 가능한 안내데스크 1개소 추가 필요 	
	(권장)판매기			
	(권장)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수유공간 철거 후 활동공간이 확보된 수유공간 1개소 설치 - 세면대 설치 1개소 - 출입문 재료분리대 단차제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2. 유형별 개선안

유형별 개선안은 대분류로 접근로, 점자블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문, 내부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시각 및 청각장애인경보·피난설비,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신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조사항목으로 구분함. 각 시설별로 필요한 개선항목에 대해서 아래에 표로 정리함.

항목		1	2	3	4	5	6	7	8	9	10
접근로	인조 화강석블록설치					●	●				●
	보도블록포장	●			●						
	화강경계석 설치	●									●
	핸드레일, 난간/외부용				●	●	●			●	
	콩자갈 깔기 포장									●	
	조경마감, 인공토깔기									●	
점자블록		●	●	●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색	●	●		●	●	●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판	●	●		●	●	●	●	●	●	
	차선규제봉	●									
	디자인그레이팅			●		●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설치	●			●	●	●	●	●		●
	자동문 설치										●
주출입구	점형블록 설치	●	●	●	●	●			●	●	●
	출입문 교체	●		●				●			
내부 출입문	실명점자표지판		●	●	●		●			●	
	승강기 설치	●			●				●		
승강기	승강기 바닥정비			●		●					
	계단	핸드레일 손잡이	●	●	●	●			●		
핸드레일 축지판		●	●	●	●			●	●	●	●
점형블록		●	●	●	●				●	●	●
충돌방지 난간			●								
경사로	경사로 설치	●		●							●
	경사로 손잡이	●	●	●	●						
화장실	일반사항	레이아웃 변경	●	●		●	●		●	●	●



항목		1	2	3	4	5	6	7	8	9	10
	출입문	●	●			●		●		●	●
	점형블록	●		●	●	●	●	●	●	●	●
	점자표지판	●	●	●	●		●	●	●	●	
	대변기	●	●	●	●	●	●	●	●	●	●
	소변기	●			●			●		●	●
	세면대	●	●	●	●	●	●	●	●	●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권장)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	●	●	●			●	●		
	(권장)기타 유도신호장치			●	●		●	●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	●	●	●	●	●	●		
	비상경보등	●	●			●	●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안내데스크 정비			●		●			●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커튼		●	●	●	●	●	●	●	●	●
	기저귀교환대 설치			●	●			●	●		●
	세면대		●	●	●	●	●	●	●	●	●

3. 추정사업비 산정

- 편의시설 항목별 공사비는 아래와 같은 산정근거를 통해 제시하였음. 추정사업비 산정은 실적단가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아래와 같이 추정사업비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였음.
 - ① 2022년 하반기 공사일위대가.
 - ② 단가 1-학교시설/ 단가 2-공공시설/ 단가 3-기타시설의 단가를 참조.
 - ③ 단가 1, 2, 3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 ④ 적용단가는 백 원 단위에서 절삭 및 조정한 단가를 금액으로 적용함.

- 먼저, 편의시설 항목별 공사비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10개의 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를 산정함.

1) 편의시설 항목별 공사비

① 매개시설 항목별 공사비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및 자재(원)				적용단가 (원)
				단가 1	단가 2	단가 3	자재	
1	아스콘포장	50+100+300= 450	M ²		54,198	46,435		54,200
2	인조 화강석 블록설치	300×300×60T, 투수	M ²	15,792	51,147	38,202		38,200
3	소형고압블록포장	200×200×60T, 투수	M ²		28,061	23,090		23,000
4	보도블록포장	T60mm, 투수	M ²		43,006			43,000
5	화강석경계석/ 보차분리 경계	180×200×1000, 직선	M		64,699	50,049		65,000
6	화강석경계석/도 로경계	150×150×1000, 직선	M		33,637	32,634		33,000
7	화강석붙임 (습식, 잔다듬)	바닥, 화강석 30mm+ 몰탈 30mm	M ²	109,797	150,000	136,760		136,000
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색	문양+안전구간	EA			60,540		60,000
9	장애인주차 카스토퍼	네오프렌계, 150×120 ×750mm	개소	22,105	28,105	28,281	28,105	28,000
10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입식안내판	700×600×1,50 0 안내표지판 겸용	EA		293,474	250,000	250,000	250,000
11	보행안전통로 도색	W:1,200mm/ 융착식	M		13,000	33,267	23,395	24,000
12	차선규제봉	D80, H:750, 볼트양카 포함	EA				21,000	21,000
13	디자인그레이팅	W:1,000× L:1,000	M ²				320,000	320,000
14	목재경사로	단차극복 (6~10cm)	EA				300,000	300,000
15	공자갈 깔기 /T100	∅30~40 자갈 깔기	M2			98,300		98,300
16	인공토 깔기 /T640	육성용인공토	M ²			95,000		95,000



② 내부시설 항목별 공사비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및자재				적용단가
				단가1	단가2	단가3	자재	
1	핸드레일 (난간/H:0.9m)	SST재질, D38+25.4@150	M	84,486	54,060	54,000	80,767	80,700
2	핸드레일(벽부형/ H:0.85m)	D38+STL D21@600	M	50,000	44,130	42,671		44,000
3	난간(계단하부 충돌방지용)	SST재질, H:900 D38+25.4@250	M	80,000	70,000			80,000
4	핸드레일 접사표지(촉지판)	AL 120×∅38 (인쇄, 접사, 타공)	EA	17,000	15,000	17,000	33,841	17,000
5	계단논슬립설치	-	M		21,537			21,500
6	실명점자표지판		EA		16,700	30,000	11,000	17,000
7	비닐타일갈기	450×450×3T	M2	22,713	22,713	15,290	27,042	22,700
8	모르타르바름	바닥, 27mm	M ²	13,180		13,991		13,000
9	화장실/인테리어 필름	창호, 불투명필름	M2	32,110		30,000		30,000
10	경사판설치	단차극복(10~20cm) 체크무늬강판, T3.2	M ²	250,000	400,000			400,000
11	핸드레일 (2단손잡이)	SST재질, H:900+H:650/2단	M		137,992	116,075		135,000

③ 위생시설 항목별 공사비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및 자재(원)				적용단가 (원)
				단가 1	단가 2	단가 3	자재	
1	화장실 촉지도식안내판	A3/점자표기	EA	50,000			45,000	50,000
2	화장실 점자표지판(남,여)	접사타공/plexan 배면 인쇄+ 아크릴/ 120×120	EA	32,000	25,000	36,610	25,000	32,000
3	시멘트액체방수 (바닥)	바닥/1종	M2	21,519	23,590	9,827	-	23,000
4	시멘트액체방수(벽)	벽/2종, H:1.2m	M ²	16,861	19,047	11,987	-	16,800
5	도기질타일(벽)	300×6007T	M2	13,500	15,000	22,000	19,000	15,000
6	자기질타일(바닥)	300×300×7T	M ²	10,800	12,000	19,000	21,000	19,000
7	타일 띠 붙이기	벽,	M2	58,477	34,648	46,106	-	46,000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및 자재(원)				적용단가 (원)
				단가 1	단가 2	단가 3	자재	
	(바탕 23mm)	300×300×7T						
8	타일 압착 붙이기 (바탕 53mm+ 압5mm)	바닥, 300×300×7T (백셀출눈)	M ²	57,275	56,666	56,565	-	56,600
9	화장실/ 알루미늄천장재	600×600×0.7 T,무광	M ²	70,200	52,000	45,354		52,000
10	대변기/장애인용, 전자 감지식	KSC-910/ 전자 감지식	SET	-	-	365,000	-	370,000
11	대변기/ 장애인용 등받이	-	EA	139,000	234,604	180,000	350,000	230,000
12	대변기/일반F.V	KSC-910C/ 절수형	EA	148,000	185,000			185,000
13	대변기/ 비상 호출벨, 무선	상, 하단/ 수신반 포함 호출벨 개당1.5만 추가	SET	-	-	-	175,000	180,000
14	자동문(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2,100×2,400H /사용여부 조작반 개당4만원	EA		5,800,000	2,945,304	1,870,000	3,030,000
15	자동문(일반, 화장실)	2,100×2,400H /터치식버튼포함	EA		5,800,000	2,945,304	1,870,000	2,950,000
16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슬라이딩)	2,300×2,400H /사용여부+잠금 장치포함	EA			1,390,000	1,200,000	1,300,000
17	장애인용 손잡이 (고정식)	대변기용/L형	EA	139,000	79,050	79,050	-	80,000
18	장애인용 손잡이 (상하회전식)	대변기, 세면대	EA	131,750	131,750	131,750	-	130,000
19	휴지걸이	-	EA	STS 15,000	점보롤 65,000	-	6,380	15,000
20	큐비클 칸막이 (일반화장실)	T20/H:2m	M ²	130,000	150,000	130,000	160,000	150,000
21	소변기	전기식, 센서 일체	SET	294,000	268,685	312,800		294,000
22	소변기손잡이	소변기용, ∅38×1.5T	조	93,000	118,470	-	234,000	120,000
23	세면대(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세면기 (SL, 절수형), 수전포함일체형	SET	316,000	124,950	242,000	-	240,000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및 자재(원)				적용단가 (원)
				단가 1	단가 2	단가 3	자재	
24	세면대설치 (일반화장실)	오닉스, W:520×230 세면대Bowl포함	M	107,100	124,866	161,538	150,000	150,000
25	세면대 수전	레버식/ 접자일체형	EA	103,000	80,000	-	48,000	80,000
26	세면대거울 (장애인용, 일반)	5mm,전면거울 틀포함 (600×900)	M ²	77,136	101,027	104,961		100,000
27	영유아거치대	접이식/H:300	EA	99,000	234,604	99,000	200,000	200,000
28	위생용품수거함	-	SET	49,000	-	-	40,760	49,000
29	냉·온수점자 표지스티커	-	EA		5,000			5,000

④ 안내시설 항목별 공사비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및 자재 (원)				적용단가 (원)
				단가 1	단가 2	단가 3	자재	
1	촉지도식안내판 /벽부형	음성안내장치/ 스탠드	EA	2,700,000		2,200,000	2,500,000	2,500,000
2	촉지도식안내판 /벽부형	음성안내장치, 음성유도기내장/ 스탠드	EA			3,000,000		3,000,000
3	점자블록/유도, 선형/고강도 콘크리트블록 (외부용)	300×300×60T	EA		22,805			23,000
4	자기질점자블록 (내부용/ 논슬립)	300×300×18T (점형, 선형)	EA	12,000	18,990	23,059	17,583	19,000
5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	천정단면, 대형	EA		438,336	503,336		500,000
6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용 /노무비포함	EA	83,049	80,686	82,072		82,000
7	음성유도기	노출형/ 벽면상단설치	EA				332,000	332,000
8	외부 호출벨	스탠드형	EA				220,000	220,000

⑤ 기타시설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및 자재(원)				적용단가 (원)
				단가 1	단가 2	단가 3	자재	
1	승강기/ 관급자재	15인승/MRL .장애인겸용/ 기본옵션기준	대	67,810,000	79,000,000	54,340,000	52,000,000	68,000,000
2	승강기/ 관급자재	13인승/MRL .장애인겸용/ 기본옵션기준	대		59,000,000		49,000,000	49,000,000
3	레미콘/ 관급자재	25-18-120	M ³	82,170	81,240	73,150		82,000
4	싱크대설치	1조세정대	EA		980,000			980,000
5	안내데스크설치	W:1000, H:1000, L:5,000	개소		2,523,381	2,078,712		2,000,000
6	안내데스크/ 추가설치	W:1000, H:1000, L:1,500	EA	-	-	-	600,000	600,000
7	기저귀교환대		EA	329,000			314,940	330,000
8	수유커튼	H:2.4m/ 레일커튼포함	M				30,000	30,000
9	계단겸용 수직형리프트	H:1m 내외	EA				15,000,000	15,000,000

⑥ 철거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적용 근거	적용단가 (원)
1	철거/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로 8m 이하, T50mm	M ²	아스팔트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5,194원/m ²	5,200
2	철거/비계설치 및 옹벽철거	일식	M ²	① 시스템비계:17,000원/m ² ② 현장정리:3,000원/m ² ③ 콘크리트구조물철거(장비):63,000원/m ²	83,000
3	철거/조적벽체, 타일철거	일식	M ²	천장텍스철거:5,200원/m ² 타일해체15,000원/m ² 조적벽체철거(소형브레이커):14,000원/m ²	34,200
4	철거/창호 (철재, 플라스틱)	일식	M ²	철재:18,650원/m ² 플라스틱:17,069원/m ²	18,000
5	철거/외부 보도블록철거	설치비용×0.3	EA	설치비용 43,000×0.3	12,900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적용 근거	적용단가 (원)
6	철거/ 외부 점형블록 철거	설치비용×0.3	EA	설치비용 23,000×0.3	6,900
7	철거/ 내부 점형블록철거	설치비용×0.3	EA	설치비용 19,000×0.3	5,700
8	철거/ 장애인주차도색 제거	설치도색비용× 0.3	EA	도색비용 60,000×0.3	18,000
9	철거/세면대 (일반화장실)	설치비용×0.3	EA	설치비용 150,000×0.3	45,000

⑦ 복합공정 관련비용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적용 근거	적용단가 (원)
1	무근타설	T150	M ²	레미콘/8.2만+타설비용/1.5만+ 와이어 메시/0.6만	33,000
2	구조물터파기 및 다짐	토사	M ³	① 터파기15,000원/m ² ② 잡석지정9,000원/m ² ③방습필름3,000원/m ²	27,000
3	1.0B벽돌쌓기/ 조적벽체	3.6m이하	M ²	벽돌장당/70원+1.0B쌓기/6만원+ 벽돌운반/천매당9만원	85,000
4	벽체마감/ 몰탈+페인트	내벽18mm/ 3.6m이하	M ²	18mm몰탈바름/3만원+친환경수성페인트/ 1.5만원	45,000
5	승강기/외부마감	SPG공법/ 유리공법	M ²	철골부재/톤당130만원+스파이더공법	350,000
6	승강기/외장마감	옹벽+외장마감	M ²	옹벽T200/12만원+유로폼4만+ 외장마감/14만원	300,000
7	승강기/지붕마감	슬라브+방수+ 무근	M ²	① 슬라브T150/레미콘9만+철근3만 +타설1.5만+강관동바리2만 ② 방수4만 ③ 무근/레미콘8.2만+타설비용/ 1.5만+ 와이어메시/0.6만	152,000
8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대변기공사 (매립배관공사 제외)	대변기, 등받이, 손잡이, 광감지기 포함	일식	대변기, 광감지기/37만원+등받이/23만원 +L형손잡이/8만원+상하회전형손잡이×2/2 6만+비상호출벨 18만 +영유아거치대/20만	1,320,000
9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세면대공사 (매립배관공사 제외)	세면대, 손잡이, 거울	일식	세면대/24만+상하회전형손잡이×2/26만+ 거울10만	600,000
10	외부 접근경사로/화강석	T150무근+ 화강석	M ²	T150무근/3.3만원+T30화강석/ 13.6만×단가조정	170,000
11	화강석마감/내부	바닥/T60mm	M ²	몰탈T30/1.5만+T30화강석10만	115,000

2) 시설별 편의시설 비용 산출

① A 박물관 : 총 125,437,732원

접근로	기존 보도철거	보도블록 설치	경계석설치	차선 규제봉	주차안내 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0	30	20	20	1		
단가(원)	13,000	43,000	33,000	21,000	250,000		
소계(원)	390,000	1,290,000	660,000	420,000	250,000		3,010,000
장애인주차구획	기존 구획제거 /산설×0.3	주차구역도색	입식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1	1				
단가(원)	18,000	60,000	250,000				
소계(원)	18,000	60,000	250,000				328,000
주출입구 단차	기존보도철거	경사로 무근설치	화강석설치	점형블록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7	3.7	3.7	5			
단가(원)	13,000	33,000	136,000	23,000			
소계(원)	48,100	122,100	503,200	115,000			788,400
주출입문	축지도식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2,500,000						
소계(원)	2,500,000						2,500,000
내부출입문	자동문/ 3연동×1.1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3,250,000						
소계(원)	3,250,000						3,250,000
복도/손잡이	경사로/무근	경사/ 비닐타일	손잡이 양측	손잡이/점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3	6.6	4			
단가(원)	33,000	22,700	80,700	17,000			
소계(원)	99,000	68,100	532,620	68,000			767,720
계단	양측손잡이	손잡이/점자	점형블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1.1	2	16				
단가(원)	24,000	17,000	19,000				
소계(원)	266,400	34,000	304,000				604,400
승강기	터파기및다짐	비계설치 및 옹벽철거	가설웬스/ H:6m	기존창호철거	승강기/ 관통×1.2	승강기/ 외장마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6	1	10	4	1	96	
단가(원)	27,000	182,000	70,000	18,000	58,800,000	300,000	
소계(원)	124,200	182,000	700,000	72,000	58,800,000	28,800,000	88,678,200
승강기	승강기 지붕마감	연결 브릿지 (일식)					
개소/길이/면적	4.6	1					
단가(원)	152,000	5,000,000					
소계(원)	699,200	5,000,000					5,699,200
합계(원)							94,377,400
화장실/ 접근통로	조적벽체 철거/일식	세면대철거/ 신설×0.3	소변기철거/ 신설×0.3	벽체신설	바닥방수 +바닥타일	벽 방수 +벽타일 / 일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8.24	2	3	9.12	16.70	1	
단가(원)	34,200	45,000	88,200	85,000	98,600	2,731,584	
소계(원)	623,808	90,000	264,600	775,200	1,646,620	2,731,584	6,131,812
화장실/ 점자표지판	점형블록 (남, 여)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2					
단가(원)	19,000	32,000					
소계(원)	38,000	64,000					102,000
화장실/대변기	화장실 (남, 여/ 자동문)	장애인화장실 (남, 여/ 슬라이딩 도어)	대변기세트	세면대세트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2	2	2			
단가(원)	2,950,000	1,300,000	1,320,000	600,000			
소계(원)	5,900,000	2,600,000	2,640,000	1,200,000			12,340,000
화장실/소변기	소변기(남)	소변기손잡이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1					
단가(원)	294,000	120,000					
소계(원)	294,000	120,000					414,000
화장실/세면대	일반세면대 (남, 여)	세면대 수전	세면대 거울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2	2				
단가(원)	150,000	80,000	100,000				
소계(원)	300,000	160,000	200,000				660,000
경보피난	시각경보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단가(원)	82,000						
소계(원)	164,000						164,000

② B 박물관 : 총 25,123,300원

점자블록	기존선형 블록철거/ 신설×0.3	선형블록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17	217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1,497,300	4,991,000					6,488,300
장애인 주차구역	기존구획제거	기존 안내판 제거 /신설×0.3	주차구역도색	입식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1	1	1			
단가(원)	18,000	75,000	60,000	250,000			
소계(원)	18,000	75,000	60,000	250,000			403,000
주출입문	자동문 점형블록 제거/ 신설×0.3	자동문 점형블록	촉지도식 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	16	1				
단가(원)	6,900	23,000	3,000,000				
소계(원)	27,600	368,000	3,000,000				3,395,600
내부출입문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단가	17,000						
합계	51,000						51,000
복도	경사로손잡이	손잡이 점자표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1	2					
단가(원)	44,000	17,000					
소계(원)	484,000	34,000					518,000
계단	양측 손잡이 설치	손잡이 점자표지	점형블록제거 /신설×0.3	점형블록설치	난간 (충돌방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0	4	28	28	12		
단가(원)	80,700	17,000	5,700	19,000	80,000		
소계(원)	2,421,000	68,000	159,600	532,000	960,000		4,140,600
화장실/대변기	벽체철거	자동문설치 (남, 여)	비상벨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	2	4				
단가(원)	34,200	3,030,000	15,000				
소계(원)	136,800	6,060,000	60,000				6,256,800
화장실/세면대	세면대 철거	세면대 설치	화장실				항목별 공사비



	/산설×0.3		점자표지			
개소/길이/면적	6	6	2			
단가(원)	45,000	150,000	32,000			
소계(원)	270,000	900,000	64,000			1,234,000
경보피난	시각경보기 설치	음성점멸 유도등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4				
단가(원)	82,000	500,000				
소계(원)	246,000	2,000,000				2,246,000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커튼설치	세면대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2				
단가(원)	30,000	150,000				
소계(원)	90,000	300,000				390,000

③ C 박물관 : 총 61,749,700원

접근로	경차구역삭제 /산설×0.3	뒀개 (1m×1m)	뒀개 (1m×0.4m)	뒀개 (0.5m×0.4m)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7	1	3	1		
단가(원)	18,000	320,000	128,000	64,000		
소계(원)	126,000	320,000	384,000	64,000		894,000
점자블록	기존바닥마감 철거/산설×0.3	점형블록 신설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040	1,040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7,176,000	23,920,000				31,096,000
장애인 주차구역	보행안전통로 도색/폭1.2m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7					
단가(원)	24,000					
소계(원)	648,000					648,000
주출입구/ 경사로	기존바닥철거 /산설×0.3	주출입구 경사로설치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8	8	12	4		
단가(원)	51,000	170,000	80,700	17,000		
소계(원)	408,000	1,360,000	968,400	68,000		2,804,400
주출입구/ 계단	기존바닥철거 /산설×0.3	주출입구 계단/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00	100	4			
단가(원)	6,900	23,000	17,000			
소계(원)	690,000	2,300,000	68,000			3,058,000
주출입문/점형블록	기존바닥철거 /신설×0.3	주출입문 점형블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9	9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62,100	207,000				269,100
부출입문/점형블록	기존바닥철거 /신설×0.3	부출입문 점형블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3	6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89,700	138,000				227,700
내부출입문	경사판설치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5				
단가(원)	400,000	17,000				
소계(원)	400,000	85,000				485,000
승강기	점형블록 제거 /신설×0.3	화강석마감설치	점형블록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8	1.1	6			
단가(원)	5,700	115,000	19,000			
소계(원)	102,600	126,500	114,000			343,100
계단-01	점형블록 제거 /신설×0.3	점형블록설치	2단 손잡이	손잡이 점자표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6	56	84	8		
단가(원)	5,700	19,000	135,000	17,000		
소계(원)	319,200	1,064,000	11,340,000	136,000		12,859,200
계단(관람동선)	점형블록 제거 /신설×0.3	점형블록설치	손잡이 점자표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0	10	4			
단가(원)	5,700	19,000	17,000			
소계(원)	57,000	190,000	68,000			315,000
계단(상영관통로)	점형블록 제거 /신설×0.3	점형블록설치	계단손잡이	손잡이 점자표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0	10	4	4		
단가(원)	5,700	19,000	80,700	17,000		
소계(원)	57,000	190,000	322,800	68,000		637,800
화장실/일반사향	점형블록 제거 /신설×0.3	화강석마감설치	점형블록	화장실 점자표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1.7	6	4		



단가(원)	5,700	115,000	19,000	32,000			
소계(원)	5,700	195,500	114,000	128,000			443,200
화장실/대변기, 냉온수점차표지	대변기 비상호출벨 /상·하단1세트	세면대/냉·온 수점차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6					
단가(원)	180,000	5,000					
소계(원)	360,000	30,000					390,000
유도안내설비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유도기내장	기존바닥철거 /산설×0.3	점형블록	음성유도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2	2	1			
단가(원)	3,000,000	5,600	23,000	332,000			
소계(원)	3,000,000	11,200	46,000	332,000			3,389,200
경보피난	음성점멸유도등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						
단가(원)	500,000						
소계(원)	2,500,000						2,500,000
매표소	외부 호출벨	하부공간 데스크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1					
단가(원)	220,000	600,000					
소계(원)	220,000	600,000					820,000
임산부휴게실	수유커텐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1	1				
단가(원)	30,000	330,000	150,000				
소계(원)	90,000	330,000	150,000				570,000

④ D 박물관 : 총 59,599,600원

접근로/재질	기존고원식 철거 /산설×0.3	고원식/보도블록설치	기존점형 블록제거/ 산설×0.3	점형블록 신설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3	23	20	20			
단가(원)	12,900	43,000	6,900	23,000			
소계(원)	296,700	989,000	138,000	460,000			1,883,700
접근로/보행장애	접근방지 난간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7						

단가(원)	80,000						
소계(원)	560,000						560,000
접근로/ 점형블록	기존화강석마감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신설	손잡이/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70	70	8				
단가(원)	6,900	23,000	17,000				
소계(원)	483,000	1,610,000	136,000				2,229,000
점자블록	기존바닥 마감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신설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00	200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1,380,000	4,600,000					5,980,000
장애인주차 구역	입식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250,000						
소계(원)	250,000						250,000
주출입구/ 경사로01	기존바닥 철거 /신설×0.3	주출입구 경사로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6	4.6					
단가(원)	51,000	170,000					
소계(원)	234,600	782,000					1,016,600
주출입구/ 경사로02	기존바닥철거 /신설×0.3	주출입구 경사로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5	25					
단가(원)	51,000	170,000					
소계(원)	1,275,000	4,250,000					5,525,000
주출입문/ 점형블록	기존바닥, 점형블록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8	18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124,200	414,000					538,200
주출입문/ 부출입문 점형블록	기존 바닥, 점형철거/ 신설×0.3	점형블록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7	7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48,300	161,000					209,300
내부출입문/점 자표지판	실명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						
단가(원)	17,000						
소계(원)	85,000						85,000

⑤ E 박물관 : 총 29,624,700원

접근로	기존 손잡이제거 /산설×0.3	경사로손잡이 설치	손잡이점자 표지판	기존점형블록 제거	트렌치 (1m×0.3m)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98	198	24	12	2		
단가(원)	13,200	44,000	17,000	6,900	96,000		
소계(원)	2,613,600	8,712,000	408,000	82,800	192,000		12,008,400
접근로 (외부계단)	기존점형블록 제거 /산설×0.3	기존점형블록 구간 화강석마감	핸드레일설치	손잡이점자 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2	3	36	24			
단가	6,900	170,000	80,700	17,000			
합계	82,800	510,000	2,905,200	408,000			3,906,000
점자블록	기존점형 블록제거 /산설×0.3	기존점형 블록구간 화강석마감	선형블록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0	1.8	8				
단가(원)	6,900	170,000	23,000				
소계(원)	138,000	306,000	184,000				628,000
장애인주차 구획	핸드레일 설치/벽부형	주차구역 도색	입식안내판	보행안전 통로도색 /폭1.2m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8	4	2	19			
단가(원)	44,000	60,000	250,000	24,000			
소계(원)	1,672,000	240,000	500,000	456,000			2,868,000
주출입구 높이차	기존바닥마감 제거 /산설×0.3	점형블록 설치	핸드레일설치	손잡이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8	8	6	4			
단가(원)	6,900	23,000	80,700	17,000			

소계(원)	55,200	184,000	484,200	68,000			791,400
주출입문 점형블록	기존바닥마감 제거 /신설×0.3	점형블록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	4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27,600	92,000					119,600
승강기	기존 바닥마감 제거 /신설×0.3	점형블록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	4					
단가(원)	5,700	19,000					
소계(원)	22,800	76,000					98,800
화장실/대변기	기존 점형 블록제거 /신설×0.3	기존 점형 블록구간 화장석마감	점형블록 설치	유아변기삭제 /신설×0.3	화장실 내부조적벽체 설치	큐비클 칸막이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6	0.5	4	2	7.2	7	
단가(원)	5,700	115,000	19,000	55,500	85,000	150,000	
소계(원)	34,200	57,500	76,000	111,000	612,000	1,050,000	1,940,700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슬라이딩)	대변기세트					
개소/길이/면적	2	2					
단가(원)	1,300,000	1,320,000					
소계(원)	2,600,000	2,640,000					5,240,000
합계(원)							7,180,700
화장실/세면대	세면대거울	상하회전형 손잡이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2					
단가(원)	100,000	130,000					
소계(원)	200,000	260,000					460,000
유도안내설비	기존바닥 마감제거/신설×0.3	점형블록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2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13,800	46,000					59,800
경보피난	음성점멸유도등	시각경보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2					
단가(원)	500,000	82,000					
소계(원)	500,000	164,000					664,000
안내데스크	하부공간 데스크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600,000						
소계(원)	600,000						600,000
임산부 휴게실	수유커튼	세면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1					
단가(원)	30,000	150,000					
소계(원)	90,000	150,000					240,000

⑥ F 박물관 : 총 34,611,160원

접근로/재질	기존보행로마감 철거 /신설×0.3	소형 고압블록마감	핸드레일 설치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9	59	78	4			
단가(원)	6,900	23,000	80,700	17,000			
소계(원)	407,100	1,357,000	6,294,600	68,000			8,126,700
접근로/ 외부계단	기존 바닥마감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60	260	16.8	16			
단가(원)	6,900	23,000	80,700	17,000			
소계(원)	1,794,000	5,980,000	1,355,760	272,000			9,401,760
장애인지우차구역	기존주차구역 부분도색 /1대산정	입식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2					
단가(원)	60,000	250,000					
소계(원)	60,000	500,000					560,000
주출입구/ 높이차이	기존 바닥철거 /신설×0.3	주출입구 경사로설치	기존바닥마감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0	10	80	80	18	12	

단가(원)	51,000	170,000	6,900	23,000	80,700	17,000	
소계(원)	510,000	1,700,000	552,000	1,840,000	1,452,600	204,000	6,258,600
주출입문	기존 바닥철거 /신설×0.3	접형블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	5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34,500	115,000					149,500
내부출입문	실명 접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						
단가(원)	17,000						
소계(원)	85,000						85,000
화장실	기존 점형 블록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화장실 /통합축지도	화장실 접자표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8	6	2	2			
단가(원)	5,700	19,000	50,000	32,000			
소계(원)	45,600	114,000	100,000	64,000			323,600
화장실/ 대변기	기존 큐비클 철거/ 신설×0.3	장애인대변기 철거/ 신설×0.3	큐비클 칸막이설치	화장실 내부조적 벽체설치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슬라이딩)	대변기세트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2	2	7	2.8	2	2	
단가(원)	45,000	111,000	150,000	85,000	1,300,000	1,320,000	
소계(원)	990,000	222,000	1,050,000	238,000	2,600,000	2,640,000	7,740,000
화장실/ 세면대	세면대거울	상하회전형 손잡이	냉·온수점차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4	2				
단가(원)	100,000	130,000	5,000				
소계(원)	200,000	520,000	10,000				730,000
유도안내	음성유도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332,000						
소계(원)	332,000						332,000
합계(원)							33,707,160
경보피난	음성점멸 유도등	시각경보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2					
단가(원)	500,000	82,000					
소계(원)	500,000	164,000					664,000
임산부휴게실	수유커튼	세면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1				
단가(원)	30,000	150,000				
소계(원)	90,000	150,000				240,000

⑦ G 박물관 : 총 22,608,280원

	음성유도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332,000						
소계(원)	332,000						332,000
주출입구 /높이차이	기존바닥마감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0	20	10.8	4			
단가(원)	6,900	23,000	80,700	17,000			
소계(원)	138,000	460,000	871,560	68,000			1,537,560
주출입구 /승강기/안내	입식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250,000						
소계(원)	250,000						250,000
주출입문/ 단차	목재경사로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단가(원)	300,000						
소계(원)	600,000						600,000
복도	출입문 내벽철거	출입문 프레임 설치	목재경사로 /H:0.3m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	2	1				
단가(원)	34,200	400,000	900,000				
소계(원)	136,800	800,000	900,000				1,836,800
계단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7	8					
단가(원)	44,000	17,000					
소계(원)	748,000	136,000					884,000
화장실	소규모 축지안내판	기존 바닥 마감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출입문 내벽철거	출입문 프레임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2	2	4	2		

단가(원)	50,000	6,700	19,000	34,200	400,000		
소계(원)	50,000	13,400	38,000	136,800	800,000		1,038,200
소변기	소변기손잡이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120,000						
소계(원)	120,000						120,000
세면대	냉·온수점자						항목별 공사비
단가(원)	2						
소계(원)	5,000						
합계	10,000						10,000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화장실 내부조적벽체 철거	큐비클 칸막이 철거 /신설×0.3	대변기 철거 /신설×0.3	소변기철거 /신설×0.3	세면대철거 /신설×0.3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자동문)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9.6	7.2	2	2	2	2	
단가(원)	34,200	45,000	55,500	88,200	45,000	3,030,000	
소계(원)	328,320	324,000	111,000	176,400	90,000	6,060,000	7,089,720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세트	세면대세트	현장정리비용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2	1				
단가(원)	1,320,000	600,000	1,000,000				
소계(원)	2,640,000	1,200,000	1,000,000				4,840,000
합계(원)							11,929,720
유도안내설비	촉지식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3,000,000						
소계(원)	3,000,000						3,000,000
경보피난	음성점멸유도등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500,000						
소계(원)	500,000						500,000
임산부휴게실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수유커튼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1	3				
단가(원)	150,000	330,000	30,000				
소계(원)	150,000	330,000	90,000				570,000



⑧ H 박물관 : 총 170,562,140원

점자블록	촉지도식 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2,500,000						
소계(원)	2,500,000						2,500,000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주차구역도색 제거/ 신설×0.3	주차구역도색	입식안내판	보행안전통로도 색/폭1.2m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	5	3	18			
단가(원)	18,000	60,000	250,000	24,000			
소계(원)	90,000	300,000	750,000	432,000			1,572,000
주출입구/ 계단	기존바닥 마감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6	46	3	4			
단가(원)	6,900	23,000	80,700	17,000			
소계(원)	317,400	1,058,000	242,100	68,000			1,685,500
주출입구 /경사로	기존바닥 마감제거 /신설×0.3	주출입구 경사로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0.8	10.8	7.2	4			
단가(원)	51,000	170,000	80,700	17,000			
소계(원)	550,800	1,836,000	581,040	68,000			3,035,840
주출입문 /점형블록	기존바닥마감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6	36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248,400	828,000					1,076,400
계단	기존바닥마감 제거 /신설×0.3	점형블록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40	40	16				
단가(원)	5,700	19,000	17,000				
소계(원)	228,000	760,000	272,000				1,260,000
승강기	터파기 및 다짐	비계설치 및 옹벽철거	가설웬스 /H:6m	기존창호철거	승강기/ 관통×1.2	승강기/ 외장마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7	2	14	6	1	106	
단가(원)	27,000	182,000	70,000	18,000	81,600,000	350,000	

소계(원)	153,900	364,000	980,000	108,000	81,600,000	37,100,000	120,305,900
승강기	승강기지붕 /유리마감	연결브릿지 (일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7	1					
단가(원)	350,000	20,000,000					
소계(원)	1,995,000	20,000,000					21,995,000
합계							142,300,900
화장실 /일반사향	소규모 축지안내판	기존 바닥 마감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4	2				
단가(원)	50,000	5,700	19,000				
소계(원)	100,000	22,800	38,000				160,800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화장실 내부조적 벽체철거	큐비클 칸막이철거 /신설×0.3	대변기 철거 /신설×0.3	소변기철거 /신설×0.3	세면대철거 /신설×0.3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자동문)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	12	4	2	1.5	2	
단가(원)	34,200	45,000	55,500	88,200	45,000	3,030,000	
소계(원)	171,000	540,000	222,000	176,400	67,500	6,060,000	7,236,900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대변기세트	세면대세트	현장정리비용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2	1				
단가(원)	1,320,000	600,000	1,000,000				
소계(원)	2,640,000	1,200,000	1,000,000				4,840,000
합계(원)							12,076,900
유도안내	기존 바닥 마감 제거/ 신설×0.3	점형블록	축지도식 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2	1				
단가(원)	6,900	23,000	3,000,000				
소계(원)	13,800	46,000	3,000,000				3,059,800
경보피난	음성점멸유도등	시각경보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2					
단가(원)	500,000	82,000					
소계(원)	500,000	164,000					664,000
매표소	하부공간 데스크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	600,000						
소계	600,000						600,000



임산부휴게실	수유커텐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1	1				
단가	30,000	330,000	150,000				
소계	90,000	330,000	150,000				570,000

⑨ | 박물관 : 총 26,286,500원

접근로	기존보행로 철거	소형고압블록 설치	화강석경계석 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0	20	10				
단가(원)	6,900	23,000	65,000				
소계(원)	138,000	460,000	650,000				1,248,000
장애인주차구획	주차구역도색	입식안내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1					
단가(원)	60,000	250,000					
소계(원)	60,000	250,000					310,000
주출입구 높이차이	기존바닥마감 철거	외부 접근 경사로/화강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6	3.6					
단가(원)	51,000	170,000					
소계(원)	183,600	612,000					795,600
주출입문	기존바닥마감 철거	점형블록 설치	3연동 /자동문×1.1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6	6	1				
단가(원)	6,900	23,000	3,250,000				
소계(원)	41,400	138,000	3,250,000				3,429,400
복도	강화마루설치	양측손잡이	기존바닥마감 철거	점형블록설치	손잡이/점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2.3	2	12	12	4		
단가(원)	263,000	80,700	5,900	19,000	17,000		
소계(원)	3,234,900	161,400	70,800	228,000	68,000		3,763,100
계단	기존바닥마감 철거	점형블록설치	양측손잡이	손잡이/점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80	80	60	24			
단가(원)	5,700	19,000	80,700	17,000			
소계(원)	456,000	1,520,000	4,842,000	408,000			7,226,000
화장실	기존바닥마감 철거	점형블록설치	큐비클 칸막이 철거/ 신설×0.3	대변기 철거 /신설×0.3	세면대철거 /신설×0.3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슬라이딩)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2	10	10	2	2	2	
단가(원)	5,700	19,000	45,000	55,500	45,000	1,300,000	
소계(원)	68,400	190,000	450,000	111,000	90,000	2,600,000	3,509,400
화장실	대변기세트	세면대세트	현장정리비용				
개소/길이/면적	2	2	1				
단가(원)	1,320,000	600,000	500,000				
소계(원)	2,640,000	1,200,000	500,000				4,340,000
합계							7,849,400
소변기	소변기손잡이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120,000						
소계(원)	120,000						120,000
세면대	세면대철거	세면대설치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	5					
단가(원)	45,000	150,000					
소계(원)	225,000	750,000					975,000
임산부휴게실	수유커튼설치	세면대설치	기저귀교환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3	1	3				
단가(원)	34,200	200,000	30,000				
소계(원)	90,000	150,000	330,000				570,000

⑩ J 박물관 : 총 22,324,360원

접근로	경사로 손잡이설치	손잡이 점자표지판	트렌치 (0.7m×0.4)	콩자갈 깔기	보행로철거 /신설×0.3	조경마감 /인공토깔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4	4	3	60	9	9	
단가(원)	80,700	17,000	96,000	98,300	6,900	95,000	
소계(원)	1,129,800	68,000	288,000	5,898,000	62,100	855,000	8,300,900
접근로/ 외부계단	기존바닥마감 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핸드레일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60	60	24	6			
단가(원)	6,900	23,000	80,700	17,000			
소계(원)	414,000	1,380,000	1,936,800	102,000			3,832,800
장애인주차구획	보행안전통로 도색/ 폭1.2m	입식안내판	차량 유도 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5.2	2	1				



단가(원)	24,000	250,000	250,000				
소계(원)	364,800	500,000	250,000				1,114,800
주출입문/ 점형블록	기존바닥 마감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1	11					
단가(원)	6,900	23,000					
소계(원)	75,900	253,000					328,900
내부출입문	실명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						
단가(원)	17,000						
소계(원)	51,000						51,000
복도	점형블록 제거/ 신설×0.3	안내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1					
단가(원)	5,700	50,000					
소계(원)	11,400	50,000					61,400
계단	기존바닥 마감철거/ 신설×0.3	점형블록	핸드레일 점자표지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4	24	12				
단가(원)	5,700	19,000	17,000				
소계(원)	136,800	456,000	204,000				796,800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화장실 축지도	점형블록 설치	큐비클 칸막이 철거/ 신설×0.3	대변기 철거 /신설×0.3	소변기 철거 /신설×0.3	세면대 철거 /신설×0.3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2	4	3	2	1	
단가(원)	50,000	19,000	45,000	55,500	88,200	45,000	
소계(원)	50,000	38,000	180,000	166,500	176,400	45,000	655,900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슬라이딩)	대변기세트	세면대세트	현장 정리비용			
개소/길이/면적	1	2	2	1			
단가(원)	1,300,000	1,320,000	600,000	700,000			
소계(원)	1,300,000	2,640,000	1,200,000	700,000			5,840,000
합계(원)							6,495,900
화장실/세면대	냉·온수점자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5						
단가(원)	5,000						
소계(원)	25,000						25,000

경보피난	시각경보기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2						
단가(원)	82,000						
소계(원)	164,000						164,000
안내데스크	하부공간 데스크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1						
단가(원)	600,000						
소계(원)	600,000						600,000
임산부휴게실	내측건식 벽체철거	수유익자	수유 커튼	세면대			항목별 공사비
개소/길이/면적	3.3	1	3	1			
단가(원)	34,200	200,000	30,000	150,000			
소계(원)	112,860	200,000	90,000	150,000			552,860



4. 소결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10개소 심층조사를 진행하였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이를 토대로 편의시설 항목별 공사비라는 실적단가를 통해 시설별 편의시설의 공사비를 도출하였음. 각각의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추정공사비는 아래와 같음.

〈표 V-22〉 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추정공사비

시설명	추정공사비	시설명	추정공사비
A 박물관	125,437,732원	F 박물관	34,611,160원
B 박물관	25,123,300원	G 박물관	22,608,280원
C 박물관	61,749,570원	H 박물관	170,561,640원
D 박물관	59,599,600원	I 박물관	26,286,500원
E 박물관	29,624,700원	J 박물관	22,324,360원

- 추정공사비는 각각의 대상시설 별로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비용의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이며,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는 제외함.

- 각각의 편의시설 항목별 평균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음. 총 편의시설 설치 항목은 41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심층조사를 통해 각각의 항목별 소요비용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였음. 산출된 편의시설 항목별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음. 해당 항목별 소요비용의 경우 10개의 심층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총 항목별 총 소요비용을 나타낸 값으로, 각각의 단위당 소요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여 추후 정비대상 시설별로 소요비용을 산출할 수 있게 하였음.

〈표 V-23〉 편의시설 항목별 소요비용

(단위: 원)

편의시설 항목		단위	항목별 소요비용(평균)	단위 당 소요비용
접근로 (6)	인조화강석 블록 설치	M ²	1,582,967	46,536
	보도블록포장	M ²	1,506,900	56,752
	화강경계석 설치	M ²	906,600	61,580
	핸드레일, 난간/외부용	M	7,160,440	85,404
	콩자갈 깔기 포장	M ²	5,898,000	98,300
	조경마감, 인공토깔기	M ²	917,100	101,900
점자블록 (1)	점자블록 설치	M	9,123,350	31,540
장애인 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색	M ²	353,644	78,000

편의시설 항목		단위	항목별 소요비용(평균)	단위 당 소요비용	
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판	EA	478,125	259,375	
	차선규제봉	M	420,000	21,000	
	디자인그레이팅	M	416,000	96,000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경사로 설치	M	3,181,171	275,401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EA	3,250,000	3,250,000	
	점형블록 설치	M	432,400	30,469	
내부 출입문	출입문 교체	EA	1,655,500	1,655,500	
	점형블록 설치	M ²	168,633	21,433	
	실명점자표지판	EA	95,000	16,550	
승강기	승강기 설치	EA	83,892,767	83,892,767	
	승강기 바닥정비	M ²	220,950	220,950	
계단	핸드레일 손잡이	M	4,138,750	70,291	
	핸드레일 축지판	EA	199,750	17,531	
	점형블록	M ²	1,061,486	23,794	
	충돌방지 난간	M	960,000	80,000	
경사로	경사로 설치	M	2,032,733	457,335	
	경사로 손잡이	EA	1,694,005	60,523	
화장실	일반사항	레이아웃 변경	M ²	4,529,167	4,529,167
		출입문	EA	4,171,133	2,056,400
		점형블록	M ²	120,178	67,237
		점자표지판	M	83,750	29,375
	대변기	EA	2,559,750	1,911,750	
	소변기	EA	201,360	201,360	
	세면대	EA	1,023,500	817,250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촉지도식안내판	EA	2,923,500	2,460,183	
	(권장)기타 유도신호장치	EA	298,400	165,600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음성점멸 피난구유도등	EA	1,079,971	437,114	
	비상경보등	EA	280,400	82,000	
매표소	안내데스크 정비	EA	655,000	655,000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커튼	M	112,222	90,000	
	기저귀교환대 설치	EA	330,000	330,000	
	세면대	EA	179,207	162,540	



VI 결론 및 정책제안

1. 연구의 종합

- 박물관·미술관은 국민의 대표적인 문화향유 공간으로 문화 소외계층의 접근성 문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국가는 박물관 및 미술관 내 장애인편의시설의 의미와 역할에 주목하고, 관련법과 정책을 정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따라서 본 연구는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정책의 추진에 앞서 현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나아가 편의시설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였음.
-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사표 개발
 - 박물관·미술관 실태조사 추진을 위하여 마련한 조사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한 조사 내용의 범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시 관람을 위한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사진자료, 수치 자료, 개선비용 등을 수집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모바일 조사와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확성 향상 도모
 - 본 조사는 모바일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조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현장과 전문가를 바로 연결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진과 조사원을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질의응답 소통 채널을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 민원 발생 해소와 더불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함.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 조사기간은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이며,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517개소를 전수 조사함. 이번 조사는 조사원 60명이 투입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그리고 승강기 등 총 20종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함. 최종적으로 전수조사는 96.1퍼센트(49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조사 시설은 시설 이전, 공사 중, 멸실 등의 이유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나마 조사가 가능한 시설은 최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장애인편의시설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 1) 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의 편의종류별 설치현황
 - 2) 전체 조사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 3) 2015년도 이후 시설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 4) 조사대상시설의 면적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으로 구분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사하는 바를 도출함.
- 2022년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완료 후 최종분석대상 수는 497개소이며, 법적 의무대상시설은 391개소로 나타남.
- 법적 의무대상시설 391개소를 분석한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70.0퍼센트**, 적정설치율**은 **57.4퍼센트**로 각각 나타났음. 이는 2018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율은 15퍼센트, 적정설치율은 21.2퍼센트 낮은 결과임.

* 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이 적정 또는 미흡이지만 설치되어 있는 비율

** 적정설치율: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

***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외에 문화·집회시설로서 전시장으로 구분되는 모든 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제시함

- 또한, 전수조사 대상시설 497개소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을 적용한 설치율은 67.6퍼센트, 적정설치율은 56.9퍼센트로 각각 나타났으며, 법적 의무대상시설과 마찬가지로 법 개정에 따른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설치율은 71.6퍼센트, 적정설치율은 57.2퍼센트로 각각 나타남.

○ 본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 항목별 개선방향을 단기 및 장기 개선 방향으로 이원화하여 제시함

- 첫째, 공간 면적 확보.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분리설치, 바닥면적 등 확보
- 둘째, 공간 위치변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접근을 위한 방안 등
- 셋째, 제품의 적합성. 승강기 가로조작반 높이, 손잡이 굵기, 세면대 하부공간 확보 등
- 넷째, 유도 및 안내. 장애인들의 이용 및 접근을 위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설치
- 다섯째, 기타시설 및 비치용품.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등
- 마지막으로 장애인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총 6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였음. 공간규모(면적)의 확보와 관련된 항목들은 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 및 반영이 필요하며 항목별로 개선 방향의 차이가 있지만, 기준 숙지를 위한 매뉴얼 보급,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및 관계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시공 정밀도 향상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 다만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2015년도부터 BF 인증 의무시설임.



따라서 향후 신축될 시설들은 적정설치 방법에 대한 BF인증 심사, 심의를 거쳐 지어지는 건축물인 만큼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상의 설치율 및 적정설치율이 향상될 것임. 다만,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서의 설치율 향상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기존시설에 적용 가능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편의시설 심층 조사결과

- 심층조사는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 종류별로 설치현황을 도면분석과 현장조사, 사진자료, 그리고 측정된 수치로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항목별 공사비를 제시함.

○ 이상에서 밝힌 전수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은 아래 5단계로 구성됨.

〈표 VI-1〉 전수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 활용 방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전수조사 결과확인 및 개선범위 선정	현황조사 및 시설 실측 [부록 2] 참조	개선 계획 수립 및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 에 의한 검토	예산편성 및 공사기관 선정 전문가 관리·감독체계 수립	시설 개선

2. 정책제안 및 활용방안

○ 위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과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 첫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이의 방안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절차 도입을 제안함.
- 둘째, 중·장기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법 기준에 부합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 셋째, 손잡이 설치 위치, 점자표지판 위치, 수납공간의 높이, 휠체어 발판 공간 높이 등과 같이 현장에서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시설 관계자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므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확보

- 국·공립 시설은 운영주체가 공공으로 공공부지에 단지 형태로 계획되는 사례가 많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이 때 발생하는 문제는 차량 하차지점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접근을 위한 동선이 길어지고, 접근로가 장애인등편의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장애인등의 시설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건축물 별로 최소한의 장애인이 주차가능한 주차면 수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비치 용품의 도입

-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치용품은 휠체어와 점자전시안내책자로 한정되고 있으나, 조사결과 점자전시안내책자의 설치율은 497개소 중 6퍼센트(29개소)만이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함. 다만,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점자전시안내책자 구비의 어려움과 전시물품의 교체 등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최근 음성안내, 수어영상정보서비스, 확대경 등 다양한 용품들이 장애인의 전시관람 및 체험에 활용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활용성과 한계를 지님.

○ 장애인편의시설 관리를 위한 조사표의 활용

- 표준조사표는 사후관리의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향후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조사 수행의 도구로써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향후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편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 가능함.

○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서의 활용

-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에서 제시한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 목표치 관리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또한 2023년 전수조사 및 이후 계획되어 시행될 관련 계획 수립 시 편의시설 설치율 목표치 설정 등의 관련정책 자료로도 활용 가능함.

○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 장애인편의시설은 건축물 대장상의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물 이력을 반영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적용시점이 결정됨. 그러나 본 연구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라는 특성상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이 많아 개관년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설치 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 그러나,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 대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님.
-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만큼 시급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 개선 방향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해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램.

부록 1.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표준조사표

1. 매개시설

평가기준	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	--

Q* 외부전경 사진 업로드(10MB 이하 가능)



외부전경(예시)
촬영구도: 외부 접근로와 전체 건물이 나오도록 촬영

1.1 주출입구 접근로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1	해당시설에 건축물 주출입구로의 접근로가 있는가?

▶ 1.1.1.1 해당시설에 건축물 주출입구로의 접근로가 있는가?	접근로 있음	접근로 없음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접근로 없음을 선택하며, 1.1.2~1.1.6항목은 모두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2	해당대지 내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는 보행 장애인에게 적절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2.1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마감		미끄러지지 않으며 넘어질 염려 없음	부분적으로 미끄러움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



▶ 1.1.2.2 바닥면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블록, 아스팔트 등의 재질로 틈새 없거나 2cm 이하로 평탄하게 마감	부분적으로 평탄하지 않음	블록 등 이음새의 틈이 2cm를 초과하거나 평탄하지 않음
▶ 1.1.2.3 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의 덮개는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	덮개의 높이차 없으며, 격자구멍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다만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적정으로 봄	덮개의 높이차가 있거나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한 방향이 간격이 2cm초과	덮개의 높이차 있으며,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양방향 2cm초과,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3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3.1 접근로 유효폭 120cm 이상 확보		전체구간 접근로 유효폭 120cm 이상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120cm 미만 90cm 이상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90cm 미만
▶ 1.1.3.2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 단차 2cm 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 (3.18°) 이하, 단차 2cm 이하	접근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 기울기 1/12(4.76°)이하 ~ 1/18(3.18°)초과	접근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 기울기 1/12(4.76°)초과, 단차 2cm 이상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4	휠체어 등 보행자를 위해 접근로는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연속성이 있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4.1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울타리·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설치 (공작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 설치)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 경계석·울타리·기타공작물 등이 설치됨 ※ 이동식화분 설치시는 적정	경계석·울타리·기타공작물 없이 경계선만 표기 ※ 라바콘만 설치하여 접근로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미흡	접근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음
▶ 1.1.4.2 접근로 유효높이 2.1m 이상 확보		가로수의 가지치기 되어있는 등 접근로의 유효높이 2.1m 이상 확보됨	-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되어있지 않는 등 접근로의 유효높이 2.1m 미만 구간 있음

※ 접근로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한 경우 1.1.4.1 적합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6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6.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1.1.6.2 설치위치(주출입구와 대지경계선까지의 연계)		대지경계에서부터 주출입구까지 연속 설치	대지경계에서부터 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이 부분적으로 연속되지 않음	미설치
▶ 1.1.6.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B1.1.1 외부 관람동선

평가 번호	평가 내용
B1.1.1	조사대상시설에 외부 관람시설이 있는가?

▶ B1.1.1 외부 관람시설 유무	해당 (1) (→ B1.1.2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B1.1.2	외부 관람동선은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에 적합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B1.1.2.1 잘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마감		미끄럽지 않으며 넘어질 염려 없음	부분적으로 미끄러움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
▶ B1.1.2.2 바닥면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블록, 아스팔트 등의 재질로 틈새 없거나 2cm 이하로 평탄하게 마감	부분적으로 평탄하지 않음	블록 등 이음새의 틈이 2cm를 초과하거나 평탄하지 않음
▶ B1.1.2.3 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의 덮개는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		덮개의 높이차 없으며, 격자구멍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다만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적정으로 봄	덮개의 높이차가 있거나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간격이 2cm초과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 미설치
▶ B1.1.2.4 접근로 유효폭 120cm 이상 확보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 120cm 이상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120cm 미만 90cm 이상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90cm 미만



▶ B1.1.2.5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 단차 2cm 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 (3.18°) 이하, 단차 2cm 이하	접근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 기울기 1/12(4.76°)이하 ~ 1/18(3.18°)초과	접근로 전체 또는 일부 구간 기울기 1/12(4.76°)초과, 단차 2cm 이상
--	---	--	---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1	해당시설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가?

▶ 1.2.1.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여부	해당 (1) (→ 1.2.2 항목부터 시작)	※ 비해당 (2) (→ 1.3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항목부터 시작)
------------------------------	-----------------------------	---

※ 법정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비해당으로 체크하고 1.3항목으로 이동.(단 비해당의 경우에도, 주차대수를 기입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2	주차장의 설치위치, 크기 및 수는 적절한가?

▶ 1.2.2.1 대상시설 총 주차 대수	▷ 1.2.2.1.1 법정대수 (본원 입력)대	▷ 1.2.2.1.2 실제 설치 주차대수 (현장방문 조사요원 입력)대
	▶ 1.2.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주차 대수	▷ 1.2.2.2.1 법정대수 (본원 입력)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2.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 수 확보		규정비율의 100%이상	규정비율의 100%미만	미설치
▶ 1.2.2.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 가장 가까운 주차구역에 설치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로 접근가능하다는 표시(경사로 표시 등)가 있으나, 출입구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음	미설치
▶ 1.2.2.5 폭 30.3m 이상, 길이 500cm 이상 (평행주차인 경우 폭 200cm 이상, 길이 600cm이상)의 주차공간의 확보		모든 주차면 규정 준수	일부 주차면이 규정 미달	모든 주차면이 규정 미달
▶ 1.2.2.6 주차공간 바닥마감의 적정성		전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마감	일부 평탄하지 않은 마감	잔디블록 등 2cm초과의 틈새로 인해 휠체어 이동 곤란

▶ 1.2.2.7 주차공간 바닥 단차 없거나 기울기 50분의 1 이하	단차 없거나 기울기 50분의 1 이하	기울기 50분의 1 초과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있음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3	주차구역의 표시, 유도, 안내표시는 적절하며 주출입구까지의 보행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2.3.1 장애인전용주차장 바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바닥 및 입식표시 규격에 맞게 모두 적정 설치, 안내표지 내용 적정 기재	바닥 또는 입식표시 중 한 가지만 적정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없음
▷ 1.2.3.1.1 ※ 바닥표시 적정여부		법 규격에 맞추어 설치	법 규격 이외의 표시가 됨	표시 없음
▷ 1.2.3.1.2 ※ 입식안내표시 적정여부		법 규격에 맞추어 설치	법 규격과 다름	표시 없음
▶ 1.2.3.2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통로 확보		모든 구간 보행통로 유효폭 120cm 이상, 기울기 1/18 이하이며, 보행통로와 차도 분리 설치	보행통로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90cm 이상, 120cm 미만이며, 기울기 1/12(4.76°) 이하 1/18(3.18°) 초과	보행통로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90cm 미만 또는 모든 구간 보행통로 없으며, 기울기 1/12 초과
▷ 1.2.3.2.1 ※ 보행통로 유효폭		모든 구간 폭 120cm 이상 보행통로가 연속적으로 설치	보행통로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90cm 이상 120cm 미만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90cm 미만/모든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 없음
▷ 1.2.3.2.3 ※ 보행통로의 기울기, 단차		전체구간 기울기* 1/18 (3.18°) 이하, 단차 2cm 이하 *지하주차장과 같이 내부통로일 경우: 1/12이하	전체 또는 일부 구간 기울기* 1/12(4.76°)이하 1/18(3.18°)초과 *지하주차장과 같이 내부통로일 경우: 1/8이하 1/12초과	전체 또는 일부 구간 기울기* 1/12(4.76°)초과, 단차 2cm 이상 *지하주차장과 같이 내부통로일 경우: 1/8초과
▷ 1.2.3.2.2(2018.8.10.이후) ※ 자동차 길과 분리		보행통로와 차도 분리 설치	-	보행통로와 차도 교행
▶ 1.2.3.3(2018.8.10.이후) 보행통로와 차도의 교차부분		보행통로와 차도의 교차부분이 없거나 교차부분의 색상과 질감을 바닥재와 다르게 처리함	보행통로와 차도의 교차부분의 바닥재의 색상만 다르게 처리함	표시 없음

※ 바닥표시와 입식안내표시는 교육 해설서 참고



1.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사진촬영〉



주출입구

촬영구도: 주출입문 앞 3~5미터 정도 거리에서 출입문과 단차여부, 점형블록이 확인되도록 촬영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1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의 형태는?

▶ 1.3.1.1 주출입구 높이 차이제거 방식	단차 없거나 2cm이하(1) (주출입문 앞까지 단차없음) (→ 2.1.1.1로)	계단+경사로 (2) (주출입문 앞까지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 (→ 1.3.2.1~ 1.3.2.8 답변 후 1.3.3으로)	계단(3) (주출입문 앞까지 계단만 설치) (→ 1.3.2.1~ 1.3.2.8 모두 미설치 처리 후 1.3.3으로)	경사로만 설치(4) (주출입문 앞까지 경사로만 설치) (→ 1.3.2.1~ 1.3.2.8 답변 후 1.3.3으로)	계단+리프트 설치(5) (→1.3.3.답변 후1.3.5로)	호출벨 설치(인적서비 스)(6)
---------------------------------	---	---	--	---	---	-------------------------

※ 경사로의 길이가 180cm미만이거나 높이가 15cm미만인 경우에는 1.3.2.6~1.3.2.9는 평가하지 않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2	해당시설의 주출입구는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경사로 구조	▶ 1.3.2.1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설치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경사로 일부구간 기울기 1/12(4.76°)초과 1/8(7.13°)이하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전체 1/8(7.13°)초과
	▶ 1.3.2.2 경사로 유효폭 120cm 이상 확보	전체구간 유효폭 120cm 이상	일부구간 유효폭 90cm 이상 120cm 미만	전체구간 유효폭 90cm 미만
	▶ 1.3.2.3 경사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5cm 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75cm 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75cm 초과 휴식참 설치	미설치
	▶ 1.3.2.4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함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지 않거나, 또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평탄하게 설치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음
	▶ 1.3.2.5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0cm×150c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모든공간 150cm×15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일부공간 150cm×150cm 미만 활동공간 확보	활동공간 미확보
경사로 손잡이	▶ 1.3.2.6 양측면 손잡이 연속 설치	양측 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양측 면 또는 한쪽 면에 일부 설치	미설치
	▶ 1.3.2.7 손잡이 높이 적정여부	높이 80cm 이상 90cm 이하	높이 80cm 미만 또는 90cm 초과	미설치
	▶ 1.3.2.8 손잡이 굵기 적정여부	굵기는 3.2~3.8cm	굵기는 3.2cm미만 또는 3.8cm이상	미설치
	▶ 1.3.2.9 손잡이 연장 설치 여부	손잡이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 손잡이 0.3m 이상 연장 설치 ※ 통행 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0.3m 이내로 설치한 경우 적정	손잡이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 손잡이 0.3m 미만 연장 설치	미설치
	▶ 1.3.2.10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손잡이 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모두 설치	손잡이 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일부 설치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3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계단에 점형블록 설치되어 있는가?

▶ 1.3.3.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점형블록 설치여부	유 (1) (→ 1.3.4 항목부터 시작)	무 (2) (→ 2.1 내부시설 항목부터 시작)
-------------------------------------	----------------------------	-------------------------------

※ 계단과 경사로가 함께 설치된 경우이면서 점형블록을 경사로쪽에만 설치한 경우에는 유(1)로 표기하고 1.3.4.1부터 1.3.4.3까지는 미설치로 표기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4	점형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3.4.1 점형블록 형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1.3.4.2 설치위치		단차가 있는 전체구간에 점형블록 설치	단차가 있는 일부구간에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1.3.4.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 주출입문의 단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음

※ 1.3.1.1에서 경사로만 설치(4)된 경우 시작과 끝 부분에서 0.3m이격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5	해당시설의 주출입구는 휠체어리프트를 통해 휠체어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한가?

▶ 1.3.5.0 리프트 형태	경사형리프트 (1) 2.4.5.1~2.4.5.3	수직형리프트 (2) 2.4.5.1~2.4.5.2
---------------------	-------------------------------	-------------------------------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3.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0cm×140cm 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와 하부 모두에 140cm×140c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 또는 하부 중 한 곳만 140cm×140c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와 하부 모두에 140cm×140cm미만의 승강장 확보
▶ 1.3.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폭76cm×길이105cm이상 수직형 폭90cm×깊이120cm이상		기준 이상의 바닥면적	-	폭과 길이(또는 깊이) 모두 기준미달
▶ 1.3.5.3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60cm이내 돌출		모든 항목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1개 이상 항목이 설치기준에 미달	모든 항목 기준 미달
▷ 1.3.5.3.1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설치		유	-	무
▷ 1.3.5.3.2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60cm이내 돌출		60cm이내 돌출	60cm초과 돌출	-

2. 내부시설

평가기준	모든 시설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2.1 출입구(문)

(*내부의 문(주출입문, 일반출입문)이 모두 없는 경우는 2111~2145 모두 비해당'0'으로 표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1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은 전·후면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등이 적정한가?

※ 지형 구조상 불가피하게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인정함.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1.1 주출입문의 높이차이 여부		주출입문의 단차 2cm 이하	-	주출입문의 단차 2cm 초과
▶ 2.1.1.2 주출입문 통과유효폭 90cm 이상 확보 여부(2018. 8. 10. 이후)		주출입문의 유효폭 90cm 이상	주출입문의 유효폭 80cm 이상 90cm 미만	주출입문 유효폭 80cm 미만
▶ 2.1.1.3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0cm 이상 확보		주출입문 연 후 전·후면 유효거리 120cm 이상	-	전·후면 유효거리 미확보
▶ 2.1.1.4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90cm 사이에 설치		높이 80~90cm 사이에 손잡이 설치 (자동문 포함)	높이 80cm 미만 또는 90cm 초과 위치에 손잡이 설치	수동문이며 손잡이 없음
▶ 2.1.1.5 주출입문 손잡이 형태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자동문포함)	돌림형 손잡이 (등근형 손잡이)	수동문이며 손잡이 없음
▶ 2.1.1.6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6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2018. 8. 10. 이후)		모든 출입문 옆의 활동공간 60cm 이상	일부 출입문 옆의 활동공간 60cm 미만	모든 출입문 옆의 활동공간 60cm 미만 또는 미설치
▶ 2.1.1.7 주출입문의 형태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	회전문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2	주출입문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2.1.2.1 주출입문에 점형블록 설치여부	유 (1) (→ 2.1.3 항목부터 시작)	무 (2) (→ 2.1.4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3	점형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3.1 점형블록 형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2.1.3.2 설치위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30cm이격해서 문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30cm이격하지 않거나 또는 문폭만큼 점형블록 설치하지 않음	미설치
▷2.1.3.2.1 30cm 이격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30cm 이격해서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30cm 이격하지 않음	미설치
▷2.1.3.2.2 문 폭 만큼 설치	문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문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하지 않음	미설치
▶ 2.1.3.1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4	해당시설 일반출입문의 활동공간,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등이 적정한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4.1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모든 문의 단차 2cm이하	-	모든 또는 일부 문의 단차 2cm초과
▶ 2.1.4.2 출입문 통과유효폭 90cm이상 확보 여부(2018. 8. 10. 이후)	모든 문의 유효폭 90cm 이상	일부 문의 유효폭 80cm 이상 90cm 미만	모든 또는 일부 문의 유효폭 80cm 미만
▶ 2.1.4.3 출입문 전·후면 유효거리 120cm 이상 확보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0cm 이상	-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0cm 미만
▶ 2.1.4.4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 사이에 설치	모든 손잡이(레버식)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 사이에 설치	높이 80cm 미만 또는 90cm 초과 위치에 손잡이 설치	수동문이며 손잡이 없음
▶ 2.1.4.5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	출입문 손잡이 쪽 벽면에 점자표지판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의 출입문에 점자표지판 설치위치	중심을 기준으로 120cm 이상 150cm 이하 높이에 설치		
-------------------	---	--	--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은 사무실, 민원실 등이며 창고나 전기실, 기계실 등은 포함하지 않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4	해당시설 일반출입문의 활동공간,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등이 적정한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4.6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60c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2018. 8. 10. 이후)		모든 출입문 옆의 활동공간 60cm 이상	일부 출입문 옆의 활동공간 60cm 미만	모든 출입문 옆의 활동공간 60cm 미만 또는 미설치
▶ 2.1.4.7 출입문 손잡이 형태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자동문포함)	돌림형 손잡이 (둥근형 손잡이)	수동문이며 손잡이 없음
▶ 2.1.4.8 출입문의 형태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	회전문

2.2 복도

(*복도가 없고, 로비나 홀만 있는 경우는 로비나 홀로 2211~2213 평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2.0	보안게이트 또는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가?

▶ 2.2.0.1 보안게이트 또는 스피드게이트가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2.0.2 보안게이트 또는 스피드게이트 통 과 유효폭 90cm 이상 확보		통과 유효폭 90cm 이상	통과 유효폭 80cm 이상, 90cm 미만	통과 유효폭 80cm 미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2.1	해당시설 복도의 유효폭 확보, 턱낮추기, 단차해소, 보행장애물 제거 등은 적정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2.1.1 복도 유효폭 120cm 이상 확보		모든 복도 유효폭 120cm 이상	모든 또는 일부 복도 유효폭 90cm 이상 120cm 미만	모든 또는 일부 복도 유효폭 90cm 미만
▶ 2.2.1.2 복도 바닥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또는 승강설비 설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초과 1/8 이하 설치	2cm초과의 단차만 있음 (계단 등) 복도 경사로 전체 또는 일부구간 기울기 1/8 초과
▷ 2.2.1.2.1 복도 바닥면의 단차		복도 바닥면에 2cm이하 단차	-	일부 복도에 2cm 초과 단차 있음
▷ 2.2.1.2.2 복도 경사로의 기울기		복도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복도 경사로 전체 또는 일부구간 기울기 1/12초과 1/8 이하	복도 경사로 전체 또는 일부구간 기울기 1/8 초과
▶ 2.2.1.3 복도상부의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 여부(2.1m 이내 장애물 있는 경우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2.1m 이내에 보행장애물 없음(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에서 60cm이하의 보호벽, 난간 설치)	-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나 아무런 접근방지 설비가 없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A2.2	조사대상시설에 내부 관람로가 있는가?

▶ A2.1.1 내부 관람로 유무	있음 (1) (→ A2.2.1 항목부터 시작)	없음 (2) (→ 2.3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A2.2.1	내부 관람 동선은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에 적합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A2.2.1.1 관람로 유효폭 120cm 이상		모든 관람로 유효폭 120cm 이상	모든 또는 일부 관람로 유효폭 90cm 이상 120cm 미만	모든 또는 일부 관람로 유효폭 90cm 미만
▶ A2.2.1.2 관람로 바닥 단차 2cm 이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또는 승강설비 설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초과 설치	2cm초과의 단차만 있음 (계단 등) 복도 경사로 전체 또는 일부구간 기울기 1/8 초과
▷ A2.2.1.2.1 관람로 바닥면의 단차		모든 관람로 바닥면에 2cm이하 단차	일부 관람로에 2cm 이하 단차 있음	일부 관람로에 2cm 초과 단차 있음

▷ A2.2.1.2.2 관람로 경사로의 기울기	관람로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관람로 경사로 전체 또는 일부구간 기울기 1/12초과 1/8 이하	관람로 경사로 전체또는 일부구간 기울기 1/8 초과
▶ A2.2.1.3 관람로 상부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 유효높이 확보 (2.1m 이내 장애물 있는 경우 난 간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2.1m 이내에 보행장애물 없음(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에서 60cm이하의 보호벽, 난간 설치)	-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나 아무런 접근방지 설비가 없음

2.3 해당시설 층수

(*단층(1층)일 경우 1로 표기하며, 2층 이상(2,3,4,5층 등)일 경우 2로 표기, 만원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부층을 제외하여 평가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3.1	현재 조사대상시설은 몇 층 건물입니까? (층간이동관련 평가: 계단, 승강기 등)	
▶ 2.3.1.1 대상시설이 1층 이거나 2층 이상 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직이 동 설비의 조사 가능 여부	1층 (1) (→ 3 위생시설 항목부터 시작)	2층 이상 (2) (→ 2.4.1 항목부터 시작)

2.4 계단 또는 승강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1	수직이동 수단으로 계단 또는 경사로, 리프트, 승강기 중에서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2.4.1.1 대상시설에 설치된 수직이동설비 는 모두 체크	계단 (1) (→ 2.4.2 계단)	경사로 (2) (→ 2.4.3 경사로)	승강기 (3) (→ 2.4.4 승강기)	리프트(4) (→ 2.4.5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5) (→ 2.4.6 에스컬레이터)

※ 해당건축물 전체 층을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수직이동 수단에 대해 평가함. (중복표기 예: 1,2,3)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2	<계단>	계단의 유효폭, 휴식참, 난간의 굽기 및 높이 등은 적절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계단의 구조	▶ 2.4.2.1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0cm 이상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0cm이상	모든 또는 일부 계단 및 참의 유효폭 90cm 이상 120cm 미만	모든 또는 일부 계단 및 참의 유효폭 90cm 미만
	▶ 2.4.2.2 계단의 철평면 설치 여부		모든 계단에 철평면 설치	-	일부 계단에 철평면 미설치
	▶ 2.4.2.3 철평면의 높이, 디딤판의 너비, 계단코 처리방법		철평면 18cm이하이며, 디딤판 28cm이상이며 발끝이 걸리지 않음	철평면, 디딤판, 계단코 3개의 기준중 1~2개 적합	철평면, 디딤판, 계단코 3개의 기준 모두 미흡
	▷ 2.4.2.3.1 철평면의 높이		18cm 이하	-	18cm 초과
	▷ 2.4.2.3.2 디딤판의 너비		28cm 이상	-	28cm 미만
	▷ 2.4.2.3.3 계단코의 돌출여부		발끝이 걸리지 않음	-	발끝이 걸릴 위험이 있음
	▷2.4.2.3.4 계단코 처리방법		계단코에 줄눈넣기 또는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 마감 또는 바닥표면전체 미끄러지지않는재질	-	미끄럼방지재 미설치
손잡이	▶ 2.4.2.4 손잡이 굵기 3.2cm 이상 3.8cm 이하 설치		굵기는 3.2cm 이상 3.8cm 이하	굵기는 3.2cm미만 또는 3.8cm초과	미설치
	▶ 2.4.2.5 손잡이 높이 80cm 이상 90cm 이하		높이는 80cm 이상 90cm 이하 (이중 설치시 : 상부 0.85m내외, 하부 0.65m 내외)	높이는 80cm 미만 또는 90cm 초과	미설치
	▶ 2.4.2.6 손잡이 끝부분 0.3m 이상 수평손잡이 연장설치		끝부분 0.3m 이상 수평손잡이 설치	끝부분 0.3m 미만 수평손잡이 설치	미설치
	▶ 2.4.2.8 손잡이에 점자표기		모든 층 설치	일부 층 설치	미설치
	▶ 2.4.2.9 양측면 손잡이 연속 설치		양측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양측면 또는 한측면에 손잡이 일부구간 설치	미설치
점형블록	▶ 2.4.2.7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중간 참 포함) 0.3m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0.3m 이격하여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의 일부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중간참에 미설치	미설치
	▷2.4.2.7.1		끝지점에 30cm	끝지점에 30cm 미만	미설치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끝지점에 30cm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또는 초과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2.4.2.7.2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 폭보다 작거나 크게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2.4.2.10 점형블록 표준형 설치		표준형 설치	비표준형 설치	미설치
▶ 2.4.2.11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 유효폭은 손잡이 내측 폭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계단의 형태는 곧은 계단(직선형), 꺾은 계단(굴절형)을 기본 형태로 함
 ※ 손잡이 끝부분의 수평부분 길이를 측정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3	<경사로>	층간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참, 난간(손잡이), 안내 등은 적절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3.1 경사로 유효폭 120cm 이상		전체구간 유효폭 120cm 이상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90cm 이상 120cm 미만	전체 또는 일부구간 유효폭 90cm 미만

※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90cm까지 경사로 유효폭 완화 (적정으로 표기)

경사로의 구조	▶ 2.4.3.2 바닥면에서 높이 75cm 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75cm 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75cm 초과 휴식참 설치	미설치
	▶ 2.4.3.3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경사로 일부구간 기울기 1/12(4.76°)초과 1/8(7.13°)이하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전체 1/8(7.13°)초과
	▶ 2.4.3.4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함	바닥이 미끄럽거나 평탄하지 않음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음
	▶ 2.4.3.5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 150cm × 15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	모든 활동공간 150cm×150cm 이상	일부 활동공간 150cm×150cm 미만	모든 활동공간 150cm×150cm 미만

※ 경사로의 길이가 180cm미만이거나 높이가 15cm미만인 경우에는 2.4.3.6~2.4.3.8은 평가하지 않음
 ※ 경사로 기울기가 1/18이하인 경우 2.4.3.6~2.4.3.8은 평가하지 않음

경사로 손	▶ 2.4.3.6 양측면 손잡이 연속 설치	양 측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일부구간 양측면에 미설치 또는 한 측면에 연속 설치	미설치
	▶ 2.4.3.7	높이 80cm 이상 90cm	높이 80cm 미만	미설치



잡이	손잡이 높이 적정여부	이하(이중 설치 시 : 상부 0.85m내외, 하부 0.65m 내외)	또는 90cm 초과	
	▶ 2.4.3.8 손잡이 굵기 적정여부	굵기 3.2cm 이상 3.8cm 이하	굵기 3.2cm 미만 또는 3.8cm 초과	미설치
	▶ 2.4.3.9 손잡이 연장 설치 여부	손잡이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 손잡이 30cm 이상 연장 설치 ※ 통행 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0cm 이내로 설치한 경우 적정	손잡이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 손잡이 30cm 미만 연장 설치	미설치
	▶ 2.4.3.10 손잡이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모두 설치	손잡이 끝부분 및 굴절부분에 점자표지판 일부 설치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4	승강기는 유효한 바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에 적정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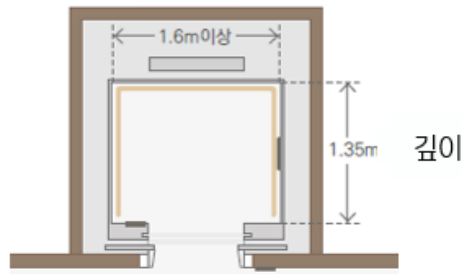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4.1 승강기 전면에는 140cm×14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전면 140cm×14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0cm×120cm 이상 140cm×140cm 미만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0cm×120cm 미만의 활동공간
▶ 2.4.4.2 장애인용 승강기는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출입문 유효폭 80cm 이상	-	출입문 유효폭 80cm 미만
▶ 2.4.4.4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60cm 이상, 깊이 135cm 이상		폭 160cm이상이며 깊이 135cm이상	폭 110cm이상이며 깊이 135cm이상	폭 110cm미만 또는 깊이 135cm미만

〈수치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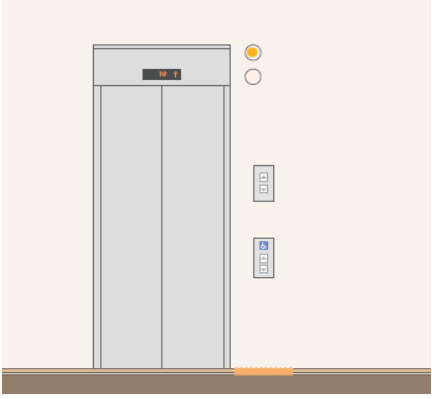

승강기 출입구의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폭 방향의 유효너비를 측정하여 기입하십시오. (cm)

승강기 출입구의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깊이 방향의 유효너비를 측정하여 기입하십시오. (cm)

폭



<사진촬영>

	
<p>승강기 외부(예시)</p> <p>촬영구도: 출입구 및 조작버튼과 조작버튼 전면 점형 블록이 나오도록 촬영</p>	<p>승강기 내부(예시)</p> <p>촬영구도: 가장 안쪽에서 가로 조작반과 세로 조작반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촬영</p>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 2.4.4.5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우측면에 가로형 조작반 설치(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0cm×140cm 이상인 경우 좌·우측 구분안함)	-	미설치
	▶ 2.4.4.6 승강기 내부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85cm 내외		(가장 낮은 버튼의 위치) 80~90cm에 설치	(가장 낮은 버튼의 위치) 80cm미만 또는 90cm초과	미설치
내외부 조작반	▶ 2.4.4.7 승강기 내외부 조작설비는 버튼식으로 설치		조작설비는 누름 버튼식	버튼식이 아닌 경우	-
	▶ 2.4.4.8 승강기 내외부 조작반의 층수, 통화장치 등은 장애인등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조작가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설치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미설치
	▷ 2.4.4.8.1 승강기 내외부 조작반의 높이 80cm 이상 120cm 이하		승강기 내외부 조작반의 높이 80cm 이상 120cm 이하	승강기 내외부 조작반의 높이 80cm 이상 140cm 이하	승강기 내외부 조작반의 높이 80cm 미만 140cm 초과
	▷ 2.4.4.8.2 승강기 내부 조작반의 층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설치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설치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미설치
▶ 2.4.4.9 점형블록 형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4.10 점형블록 설치방법				
▷ 2.4.4.10.2 설치위치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30cm 이격하여 설치	승강기 출입문 전면에 설치	미설치
▷ 2.4.4.10.2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승강기 외부	▶ 2.4.4.11 승강기 외부에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시각설비*, 승강기 도착음 작동 여부	도착여부 시각설비 및 승강기 도착음 작동	도착여부 시각설비 또는 승강기 도착음 작동	미설치
	▷ 2.4.4.11.1 도착여부를 표시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 2.4.4.11.2 도착음 동작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승강기 내부	▶ 2.4.4.12 승강기 내부에 도착층,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토글*(문개폐, 층정보, 운행방향) 설치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 2.4.4.12.1 도착층,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설치 여부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승강기 내부	▷ 2.4.4.12.2 음성신호장치* 설치 여부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 출입구의 방향 안내 포함)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 2.4.4.12.3 토글*(문개폐, 층정보, 운행방향) 설치 여부	전 층 설치	일부 층 설치	미설치
	▷ 2.4.4.12.4 승강기 전 층 운행 여부	전 층	일부 층	-
	▶ 2.4.4.13 승강기 내부 손잡이 굵기는 3.2cm 이상 3.8cm 이하이며, 높이는 80cm 이상 90cm 이하이며 벽으로부터 3cm이내의 간격을 확보하고 설치됨	승강기 내부 손잡이 높이는 80cm 이상 90cm 미만이며 벽으로부터 3cm 이내의 간격을 확보하고 설치됨	손잡이 높이 또는 벽으로부터의 간격이 적정하지 않음	미설치
	▷ 2.4.4.13.1 손잡이 굵기 3.2cm 이상 3.8cm 이하 설치	굵기는 3.2cm 이상 3.8cm 이하	굵기는 3.2cm 미만 또는 3.8cm 초과	미설치
▷ 2.4.4.13.2 승강기 내부 손잡이 높이	승강기 내부 손잡이 높이는 80cm 이상	승강기 내부 손잡이 높이는 80cm 미만	미설치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는 80cm 이상 90cm 이하		90cm 이하	90cm 초과	
	▷ 2.4.4.13.3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3cm 이내의 간격을 확보하고 설치	벽으로부터 3cm 이내의 간격을 확보하고 설치	일부 층 작동	미설치
▶ 2.4.4.14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틈 3cm 이하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틈 3cm 이하	-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틈 3cm 초과
▶ 2.4.4.15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		조도 150LUX이상	-	조도 150LUX미만

※ 도차여부를 표시하는 시각설비: 층수와 방향을 표시하는 장치 포함, 음성신호장치: 승강기 내부의 소리가 승강장에서 들릴 경우에도 적정으로 평가, 토글: 선택, 취소가 가능한 스위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5	휠체어리프트는 유효한 바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에 적정한가?

▶ 2.4.5.0 리프트 형태	경사형리프트 (1) 2.4.5.1~2.4.5.3	수직형리프트 (2) 2.4.5.1~2.4.5.2
------------------	-------------------------------	-------------------------------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0cm×140cm 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와 하부 모두에 140cm×140c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 또는 하부 중 한 곳만 140cm×140c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와 하부 모두에 140cm×140cm미만의 승강장 확보
▶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폭76cm×길이105cm이상 수직형 폭90cm×깊이120cm이상		기준 이상의 바닥면적	-	폭과 길이(또는 깊이) 모두 기준미달
▶ 2.4.5.3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60cm 이내 돌출		모든 항목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1개 이상 항목이 설치기준에 미달	모든 항목 기준 미달
▷ 2.4.5.3.1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설치		유	-	무
▷ 2.4.5.3.2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60cm이내 돌출		60cm이내 돌출	60cm초과 돌출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6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 및 속도, 디딤판, 손잡이의 설치가 적정한가?

※ 에스컬레이터는 건축물 내 전층에 설치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6.1 에스컬레이터 유효폭 : 80cm 이상		유효폭 80cm 이상	유효폭 80cm 미만	-
▶ 2.4.6.2 에스컬레이터 속도 : 분당 30m이내		분당 30m 이내	분당 30m 초과	-
▶ 2.4.6.3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디딤판 3장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가능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음	-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없음
▶ 2.4.6.4 에스컬레이터 양측면의 이동식손잡이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임		양측면의 이동식손잡이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임	양측면의 이동식손잡이가 디딤판과 다른 속도로 움직임	-
▶ 2.4.6.5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에는 120cm 이상 수평이동손잡이를 설치		양끝부분에는 120cm 이상 수평이동손잡이를 설치	양끝부분에는 120cm 미만 수평이동손잡이를 설치	-
▶ 2.4.6.6 수평이동식 손잡이 전면에 100cm 이상 수평고정손잡이 설치		수평이동식 손잡이 전면에 100cm 이상 수평고정손잡이 설치	수평이동식 손잡이 전면에 100cm 미만 수평고정손잡이 설치	미설치
▶ 2.4.6.7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총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총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총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하였으나, 내용이 맞지 않거나, 점자표지판이 훼손되어 알기 어려움	미설치

3. 위생시설

평가기준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

3.1 일반사항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1	해당시설에서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대변기)에 대한 일반사항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3.1.1.1~3.1.1.3은 장애인용대변기가 설치된 화장실(장애인용 대변기가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화장실)을 평가합니다.				
▶ 3.1.1.1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층간으로 남녀구분된 것은 적정	남·여 공용으로 설치 또는 남녀 중 1곳만 설치	미설치
▷ 3.1.1.1.1 장애인화장실 분리 설치 여부		분리설치(1) 일반화장실 내부에 설치(2)	-	미설치(3)
▷ 3.1.1.1.2 남·여화장실 분리 설치 위치		동일한 층에 남녀 각각 설치(1) 다른 층에 분리되어 남녀 각각 설치(2)	-	미설치
▶ 3.1.1.2 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설비 유무		색상 및 문자로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식별이 용이함	색상 또는 문자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움	미설치
▷ 3.1.1.2.1 색상 적용 여부		적용	-	미적용
▷ 3.1.1.2.2 문자 적용 여부		적용	-	미적용
▶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통로 폭 120cm 이상 확보		접근통로 폭 120cm 이상	접근통로 폭 90cm 이상 120cm 미만	접근통로 폭 90cm 미만
▶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간의 단차포함)가 2cm이하		단차 2cm 이하	-	단차 2cm초과



▶ 3.1.1.5 화장실 바닥표면(마감상태)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논슬립타일 등)	-	미끄러운 재질(일반타일)
▶ 3.1.1.9 화장실 출입구(문)의 유효폭	90cm 이상 확보	80cm 이상 90cm 미만 확보	80cm 미만 확보
▶ 3.1.1.6 남여화장실에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여부	영유아용거치대 1곳 이상 설치(남여각각)	남·여중 1개 설치	미설치
▶ 3.1.1.7 남녀화장실 구별을 위한 점자표지판 부착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0cm 높이에 설치*	점자표지판 설치 높이와 위치가 적정하지 않음	미설치

*장애인화장실이 별도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반화장실을 평가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2	화장실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3.1.2.1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여부	유 (1) (→ 3.1.3 항목부터 시작)	무 (2) (→ 3.2 대변기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3	점형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1.3.1 점형블록 형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3.1.3.2 설치위치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에 점형블록을 30cm 전면에 설치	일반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 또는 장애인화장실 출입구에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3.1.3.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3.2 대변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1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 3.2.1.1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여부	유 (1) (→ 3.2.2 항목부터 시작)	무 (2) (→ 3.3 소변기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0)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2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구조, 화장실의 크기, 위생기기의 설치위치가 휠체어 등의 접근과 이동에 적절한가?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대변기)을 평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자동문, 밖여닫이, 미닫이 (안여닫이인 경우 내부공간확보)	자동문(1) 미닫이문(2) 밖여닫이문(3) 안여닫이문- 내부공간확보(4)	잠금장치 있는 주름문 접이문	안여닫이 형태로 내부공간 미확보, 또는 잠금장치 없는 주름문
▶ 3.2.2.1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 3.2.2.1.1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잠금장치 있음	미설치(7)
▶ 3.2.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90cm 이상 확보		문의 유효폭 90cm 이상	문의 유효폭 80cm 이상 90cm 미만	문의 유효폭 80cm 미만	
▶ 3.2.2.5 바닥면 크기가 폭 140cm이상, 깊이 180c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확보		바닥면 크기가 폭 160cm 이상이며, 깊이 200cm 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바닥면 크기가 폭 140cm 이상이며, 깊이 180cm 이상(대변기 길이 방향)	폭 100cm 이상, 깊이 180cm이상	폭 100cm 미만 또는 깊이 180cm미만
▶ 3.2.2.6(법개정) 대변기 전면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 확보		140cm×140cm이상			미확보

<수치 기입>

화장실 내부 대변기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폭 방향의 유효너비를 측정하여 기입하십시오. (cm)

화장실 내부 대변기 설치위치를 기준으로 길이 방향의 유효너비를 측정하여 기입하십시오. (cm)

화장실 출입구의 방향이 대변기를 기준으로 (정면)인지 (측면)인지 기입하십시오.



〈사진촬영〉



화장실 외부 전경
 촬영구도: 화장실 외부 안내표지와 출입문, 점형블록 등이 보이도록 촬영

화장실 내부
 촬영구도: 대변기가 설치된 입면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촬영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3	대변기의 형태 및 보조손잡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대변기 형태	▶ 3.2.3.1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좌식변기)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 이상 45cm 이하로 설치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좌식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40cm이상 45cm이하	등받이가 없는 양변기(좌식변기)이거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40cm미만 또는 45cm초과	양변기(좌식변기)가 아님
	▷ 3.2.3.1.1 변기의 형태는 수세식 양변기 설치	수세식 양변기	-	양변기(좌식변기) 아님
	▷ 3.2.3.1.2 수세식 양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이상, 45cm이하로 설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이상 45cm이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미만 또는 45cm초과	양변기(좌식변기)가 아님
	▷ 3.2.3.1.3 변기의 형태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설치	장애인용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설치	일반용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설치	등받이 없거나 양변기 아님
수평손잡이	▶ 3.2.3.2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60cm 이상 70c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	설치높이는 60cm 이상 70cm 이하이며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이내	설치높이 및 중심위치 중 1개만 기준에 적합	미설치

	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 3.2.3.2.1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 적정 유무	설치높이는 60cm 이상 70cm 미만	설치높이는 60cm미만 70cm초과	미설치
	▷ 3.2.3.2.2 벽측 손잡이 위치(변기 기준)	벽측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40cm이내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초과	미설치
수직 손잡이	▶ 3.2.3.3 대변기의 한쪽 옆에는 수직 손잡이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있으며 손잡이 길이는 90cm이상 (ex: L자형 손잡이)	길이는 90cm미만 또는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미설치
	▷ 3.2.3.3.1 수직 손잡이 위치 적정 여부	가장 하단은 바닥면에서 60cm에 위치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미설치
	▷ 3.2.3.3.2 수직 손잡이 길이 적정 여부	90cm 이상	90cm 미만	미설치
회전식 손잡이	▶ 3.2.3.4 다른 쪽 손잡이 회전식 설치 여부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전식 (상·하 또는 좌·우) (적정일경우만32341로)	다른 쪽 손잡이는 고정식	미설치
	▷ 3.2.3.4.1 회전식손잡이 설치 형태	상회전식(1) 좌우회전식(2)	-	미설치(3)
대변기 세정장치	▶ 3.2.3.5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또는 바닥 및 벽 누름버튼식 설치	측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 (수조형)	후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
비상용벨	▶ 3.2.3.6 비상용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60cm 이상 90cm이하 의 높이에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20cm 이하의 높이 설치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상부비상벨의 설치가 60cm 이상 90c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었으며, 하부 비상벨은 바닥면으로부터 20c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60cm 이하 또는 90cm 초과와 높이에 설치되었으며, 하부비상벨은 바닥면으로부터 20cm 미만, 20cm 초과와 높이에 설치되었거나 상부 또는 하부 비상벨 중 하나가 미설치됨	미설치
	▷ 3.2.3.6.1 상부 비상벨의 높이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상부비상벨의 설치가 60cm 이상 90c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60cm 이하 또는 90cm 초과와 높이에 설치	미설치



▷ 3.2.3.6.2 하부 비상벨의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20cm 이하의 높이에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20cm 미만 20cm 초과 높이에 설치	미설치
▶ 3.2.3.7 비상용벨 작동 여부 및 응답여부	작동되며 응답함	작동되나 응답 없음	미작동

3.3 소변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3.1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3.3.1.1 일반화장실 내부 소변기 설치여부	유 (1) (→ 3.3.2 항목부터 시작)	무 (2) (→ 3.4 세면대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3.2	일반화장실 내부 소변기의 구조, 손잡이 등의 설치는 적정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수평 손잡이	▶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		높이는 80cm 이상 90cm 이하	높이는 80cm 미만 또는 90cm 초과	미설치
	▶ 3.3.2.2 수평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55cm내외		길이 50cm 이상 60cm 이하	길이는 50cm미만 또는 60cm초과	미설치
	▶ 3.3.2.3 좌우 손잡이 간격 60cm내외		좌우손잡이의 간격 50cm 이상 60cm 이하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55cm미만 또는 0.65m초과	미설치
수직 손잡이	▶ 3.3.2.4 소변기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0cm 이상 120cm 이하로 설치		높이는 110cm 이상 120cm 이하	높이는 110cm미만 또는 120cm초과	미설치
	▶ 3.3.2.5 소변기의 수직손잡이의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25cm 내외		돌출폭 20cm 이상 30cm 이하	돌출폭 20cm 미만 또는 30cm 초과	미설치

3.4 세면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4.1	화장실 내부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3.4.1.1 화장실 내부에 세면대 설치여부	유 (1)-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됨 (장애인화장실 내부 세면대 평가)	무 (2)-일반화장실에만 설치됨 (일반화장실 세면대 평가)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4.2	세면기 등의 설치 높이 등은 적정하며, 위생기기의 조작버튼 등의 설치 위치 등도 적정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85cm, 하단 높이가 65cm이상으로 설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 이며 하단 높이는 65cm이상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 초과 또는 하단 높이 65cm미만	상단높이 85cm 초과이며 하단높이 65cm미만 또는 하부 공간 없음
▶ 3.4.2.2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공간확보		하부 공간 45cm이상	하부 공간 25cm 이상 45cm 미만	하부 공간 전혀없거나 25cm 미만
▶ 3.4.2.3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설치	-	다이얼식(돌림식)으로 설치
▷ 3.4.2.3.1 수도꼭지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다이얼식(돌림식)(4)
▷ 3.4.2.3.2 모든 수도꼭지에 점자표시		수도꼭지 레버에 점자표시(냉온수구분)	점자표지가 손상되거나, 수도꼭지 레버에 설치되지 않음 / 일부만 설치됨	점자표시 없음



4. 안내시설

평가기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접근 및 이용, 긴급시 피난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	--

4.1 유도 및 안내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1	유도 및 안내설비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4.1.1.1 대상시설에 설치된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설치된 설비는 모두 체크	점자안내판 (1) (→ 4.1.2.1 항목으로)	촉지도식 안내판 (2) (→ 4.1.2.1 항목으로)	음성안내장치 (3) (→ 4.1.2.4 항목으로)	미설치(4)
--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2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대상건축물의 접근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해당시설을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유도 및 안내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4.1.2.2 설치규격	점자안내판 중심점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00cm 이상 120cm 이하, 또는 벽면형의 경우 100cm 이상 150cm 이하	적정이 아닌 경우
점자 안내판 / 촉지도식 안내판	▷ 4.1.2.2.1 입식 안내설비	중심점 높이 바닥면에서 10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4.1.2.2.2 벽부형 안내설비	중심점 높이 바닥면에서 100cm 이상 150cm이하에 설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4.1.2.3 점자표기방식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을 타공방식으로 제작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4.1.2.3.1	주요시설 또는 방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 4.1.2.3.2 점자 제작 방식	타공방식으로 제작(부식형 제외)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음성안내장치	▶ 4.1.2.4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방의 배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장치의 설치	음성안내장치가 작동되며, 음량이 적절함	음성안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미설치
	▶ 4.1.2.5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위치	주출입구 점자블록 동선상에 설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3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4.1.3.1 점형블록 설치여부	유 (1) (→ 4.1.4 항목부터 시작)	무 (2) (→ 4.2 경보 및 피난설비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4	점형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4.1.4.1 점형블록 형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4.1.4.2 설치위치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30c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30cm 미만 또는 초과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4.1.4.3.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4.2 경보 및 피난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2.1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상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4.2.1.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설치	-	청각경보·피난설비 미설치
▷ 4.2.1.1.1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상벨 설치		비상벨 설치	-	미설치
▷ 4.2.1.1.2 시각장애인을 위한 피난구유도등 설치		화재발생시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	피난구유도등에 음성출력기능 미설치
▶ 4.2.1.2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설치	-	시각경보·피난설비 미설치
▷ 4.2.1.2.1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비상벨설비 주변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	-	미설치
▷ 4.2.1.2.1 청각장애인을 위한 피난구유도등 설치		화재발생시 점멸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	피난구유도등에 점멸기능 미설치

5.4 매표소 · 판매대 · 음료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2	대상시설에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5.4.2.1 대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모두 체크	매표소 (1) (→ 5.4.3.1 매표소)	판매기 (2) (→ 5.4.3.4 판매기)	음료대 (3) (→ 5.4.3.7 음료대)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3	해당시설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매표소	▶ 5.4.3.1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70cm 이상 90cm 이하에 설치		상부 높이는 70cm 이상 90cm 이하	상부 높이 70cm 이상 110cm 이하	상부높이 110cm 초과
	▶ 5.4.3.2 하부는 바닥면에서 65cm 이상 설치		하부 높이 65cm 이상	하부 높이 65cm 미만	하부 공간 전혀 없음
	▶ 5.4.3.3 깊이 45cm 이상 공간 확보		깊이 45cm 이상	깊이 25cm 이상 45cm 미만	깊이 25cm 미만 또는 하부공간 없음

※ 다만, 2005년 12월 29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110cm 이하에 설치하며, 하부는 바닥면에서 높이 0.65m이상, 깊이 4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판매대	▶ 5.4.3.4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등은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이 40cm 이상 120cm 이하의 범위에 설치		동전투입구·조작·상품출구 모든 높이는 4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	동전투입구·조작·상품출구 일부 높이는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동전투입구·조작·상품출구 모든 높이는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 5.4.3.4.1 동전투입구 높이		4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	-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 5.4.3.4.2 조작버튼 높이		4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	-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판매대	▷ 5.4.3.4.3 상품출구 높이		4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	-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 5.4.3.5 조작버튼은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도록 점자로 표시		점자표시	-	점자표시 미설치
	▶ 5.4.3.6 누름버튼식 등으로 설치		누름버튼식 등 설치	-	누름버튼식 등 미설치

음료대	▶ 5.4.3.7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80cm로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70~80cm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70cm미만, 또는 80cm초과 설치	휠체어 사용자 접근불가
	▶ 5.4.3.8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조작기 설치	-	다이얼식 조작기 설치



으로 설치			
▷ 5.4.3.8.1 조작기 형태	광감지식(1)	-	다이얼식 조작기 설치
	누름버튼식(2)		
	레버식(3)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4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5.4.4.1 점형블록 설치여부	유 (1) (→ 5.4.5 항목부터 시작)	무 (2) (→ 5.6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5	점형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4.5.1 점형블록 형태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5.4.5.2 설치위치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 30c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30cm 미만 또는 초과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5.4.5.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한 높이로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5.5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5.1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었는가?

▶ 5.5.1.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설치	미설치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5.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 수유공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 5.5.2.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선택(복수선택 가능)	기저귀교환대 (1) (→ 5.5.3 항목부터 시작)	세면대 (2) (→ 5.5.4 항목부터 시작)	수유공간(실) (3)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5.3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내 기저귀교환대의 설치 높이 등은 적정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5.3.1 기저귀교환대 전면 140cm×14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전면 140cm×14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0cm×120cm 이상 140cm×140cm 미만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0cm×120cm 미만의 활동공간
▶ 5.5.3.2 기저귀교환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 이하, 기저귀교환대의 하단은 높이가 65cm 이상		기저귀교환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이며 하단 높이는 65cm이상	기저귀교환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 초과 또는 하단높이가 65cm미만	기저귀교환대의 상단높이 85cm 초과이며 하단높이 65cm미만 또는 하부 공간 없음
▶ 5.5.3.3 기저귀교환대의 하부 깊이는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45cm 이상의 공간 확보		깊이 45cm이상 공간 확보	깊이 25cm 이상 45cm 미만	깊이 25cm 미만 또는 하부 공간 전혀 없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5.4	세면대의 설치 높이 등은 적정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5.4.1 세면대 전면에는 140cm×14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전면 140cm×140c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0cm×120cm 이상 140cm×140cm 미만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0cm×120cm 미만의 활동공간
▶ 5.5.4.2 세면대는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 이하, 기저귀교환대의 하단은 높이가 65cm 이상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이며 하단 높이는 65cm이상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 초과 또는 하단높이 65cm미만	상단높이 85cm 초과이며 하단높이 65cm 미만 또는 하부 공간 없음
▶ 5.5.4.3 세면대 하부깊이는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는 45cm 이상의 공간 확보		깊이 45cm이상 공간 확보	깊이 25cm 이상 45cm 미만	깊이 25cm 미만 또는 하부 공간 전혀 없음



6. 비치용품

6.1 비치용품 설치여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6.1.1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비치용품은 잘 설치되어있는가?

대상시설	비치용품	비치(1)	미비치(2)
6.1.1.2 문화 및 집회시설	6.1.1.2.3 전시장	▷ 6.1.1.2.3.1 휠체어	
		▷ 6.1.1.2.3.2 점자전시안내책자	
		▷ 6.1.1.2.3.3 인적서비스	
		▷ 6.1.1.2.3.4 전자기기를 활용한 전시 안내서비스(QR코드, 안내기기 등)	
		▷ 6.1.1.2.3.5 수어영상정보 서비스	

부록 2. 박물관 및 미술관 심층조사표

항목		현황	개선방향
점자블록	접근로에 연속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보행통로		
	안내표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계단	점형블록	
		손잡이	
	경사로	기울기	
		바닥마감	
손잡이			
주출입문	점형블록		
계단	점형블록		
	손잡이		
	점자표지		
승강기			
화장실	일반 사항	접근통로	
		출입구	
		점형블록	



항목		현황	개선방향	
	점자표지판			
	대변기	출입문 형태/ 사용여부 설비/ 잠금장치		
		유호 바닥면적		
		대변기 구조		
		손잡이		
		세정장치		
		상·하부 비상용벨		
	소변기 (권장)	손잡이		
	세면대 (권장)	구조		
		점자표시		
화장실	일반사항			
	점자안내판			
	점형블록			
	장애인화장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촉지도식안내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음성점멸 피난구 유도등			

항목		현황	개선방향
설비	화재경보기 (시각경보기)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안내데스크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수유장소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참고문헌

- 고영준(2013). 「문화시설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권빛나(2017). 문화예술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 연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경(2017).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연구-포용적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경(2020).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가이드라인 방향 수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2019).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증장기 계획(2019~2023)>
- 미호시 아키히로·다카하시 기헤이·이소베 도모히코(2017). 이석현·장진우 역, 공생의 유니버설디자인, 미세움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장애인개발원(2009). 「20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0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1).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문화공연장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연구」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0). 「2020 장애통계연보」
- 안성락·고영준(2013).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문화시설접근성과 위생시설에 관한 연구”,
Journal Packaging Culture Design Research Korea Institute of Packaging Culture Design Vol. 35 2013
- 이민경(2018).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이달의 초점」 no.26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2019 장애통계연보」
-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6). 편의시설 설치실태 표준조사표 개발 및 평가조사 연구
-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공연장 및 전시장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웹사이트]

e-나라지표, 문화체육관광부「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 방향

발 행 일 : 2022년 12월

발 행 인 : 최용선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누보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